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09.7.1] [지식경제부령 제80호, 2009.6.30, 일부개정]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82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2005.7.1>

제1조의2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한 조직을 말한다.
2. "전자문서"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온라인 제출"이라 한다)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 기록매체"라 한다)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서류
   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 심판청구인,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 그 밖에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송달하는 서류

[본조신설 2009.6.30]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09.6.30>]

제1조의3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①「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8제4항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2005.7.1, 2009.6.30>

1. 전자적기록매체제출서
2. 전자문서첨부서류제출서
3.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제출서
4. 디자인등록증정정교부신청서
5. 전자화내용정정신청서
6. 삭제 <2003.5.12>

② 삭제 <2002.2.28>
③ 삭제 <2009.6.30>
[본조신설 1998.12.31]
[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09.6.30>]

제1조의4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심판관·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법 제4조의29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30]
[제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8로 이동 <2009.6.30>]

제1조의5 (서류에 의한 절차)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

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1건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고유번호(이하 "출원인코드"라 한다)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1조의6 (서류의 제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1조의7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등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30]

제1조의8 (서류의 사용어 등) ①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 중 위임장·국적증명서·우선권증명서류 등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를 제외한 서류는 국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류 중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우선권증명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는 때에는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29]
[제1조의4에서 이동 <2009.6.30>]

제2조 (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개정 2001.6.30>)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9조, 제72조의2 또는 제72조의3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견본, 그 밖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적법한 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2.10.30, 1993.12.31, 1998.2.23, 1998.12.31, 2001.6.30, 2002.2.28, 2003.5.12, 2005.2.11, 2005.7.1, 2007.6.29, 2009.6.30>

1.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2.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3.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도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도면이 디자인의 수에 부족한 경우를 포함한다]
5.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디자인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 등인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9. 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기간, 법 제67조의2 또는 법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10. 포괄위임등록신청서, 포괄위임등록철회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철회)서를 준용한다), 포괄위임 원용제한의 신고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준용한다),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를 준용한다) 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1. 정보통신망이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11의2. 제1조의5를 위반하여 1건마다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1의3. 제1조의7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4조의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당한 소명없이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3.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디자인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4. 당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 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게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2호의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3.5.12, 2009.6.30>

③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소명없이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류반려요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려요청(반환신청)서를 준용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2005.2.11, 2007.6.29>

④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제3조 (서류등의 보정) 법 제17조·제18조·제27조의2 또는 이 규칙 제11조에 따라 보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30, 2005.7.1, 2007.6.29, 2009.6.30>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8.12.31]

제4조 (대리인의 선임등)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등록출원인변경신고·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청구·재심청구를 하거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청구·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변경신고서·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되,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해임여부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

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의 소속 변리사가 되어 해당 대리인이 대리하는 둘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해당 대리인이 구성원으로 있거나 소속 변리사로 있는 특허법인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해임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사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사임하려는 경우에 둘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같고,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같은 때에는 하나의 신고서에 적어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30]

제4조의2 (포괄위임)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위임장"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포괄위임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포괄위임을 받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번호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4조의3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4조의2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원용제한의 신고구분으로 한정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제4조제4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09.6.30]

제4조의4 (포괄위임의 철회) 제4조의2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4조의5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① 법 제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의 선정신고는 선정된 대표자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되, 먼저 선임된 대표자가 있는 때에는 그 해임여부를 적어야 한다.

1.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9.6.30]

제4조의6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그 절차를 밟을 때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4조의7 (증명서류의 제출) ①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등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되,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적증명서(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나 그 밖에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인감증명서(작성 후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서명에 대한 공증서(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을 포함한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외국인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 그 자가 속하는 국가가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이하 "파리조약"이라 한다)의 당사국 또는 디자인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상호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가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파리조약 동맹국 중 1국의 영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③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때에는 서류제출명령서에 의하여 제출서류명 및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4조의8 (출원인코드의 부여 등) ① 법 제4조의27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출원인
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3.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
4. 우선심사신청인
5.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
6. 재심사청구인
7. 심판청구인·심판피청구인 및 심판참가인
8. 디자인권자
9.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10. 질권자

② 법 제4조의27제1항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서명 또는 인감,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거나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인코드 정정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인코드 정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⑤ 특허청장은 출원인코드가 이중으로 부여되었거나 잘못 부여된 경우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한 사실을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4조의9 (전자문서 이용신고) 법 제4조의29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6.30]

제4조의10 (전자문서의 제출 등) ① 전자문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자문서를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가 그 전자문서를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장치의 장애(정보통신망,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장치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장애로 보지 아니한다)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6.30]

제4조의11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온라인 제출을 하는 경우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온라인 제출 시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는 온라인 제출 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4조의12 (온라인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을 하려는 자는 출원인코드와 비밀번호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4조의13 (동시제출의 특례) ① 법령에 따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② 법령에 따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 중에 하나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고 나머지 절차를 전자적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둘 이상의 절차를 같은 날에 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4조의14 (서류의 원용)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둘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 법 제4조의4부터 제4조의8까지, 제8조제2항 또는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 대해서만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 등의 절차에서는 그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때에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4조의4부터 제4조의8까지, 제8조제2항 또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아 이를 원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적음으로써 그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5에 따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 그 위임사항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2.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이 그 포괄위임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본조신설 2009.6.30]

제4조의15 (디자인등록번호 등의 표시) ① 디자인권을 등록받거나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서류·견본, 그 밖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한 후 그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서류나 견본, 그 밖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연장등록출원의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나 견본, 그 밖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그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5조 (출원서 등) ①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또는 유사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하고자 하거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또는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이나 사진 또는 견본 1통(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도면은 입체디자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체디자인 도면에 의하고, 평면디자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평면디자인 도면에 의하며, 글자체디자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글자체디자인 도면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도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도면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1. 정투상도법(正投象圖法)에 의한 6면도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면
   가. 정면도와 배면도가 같거나 대칭인 경우에는 배면도
   나. 좌측면도와 우측면도가 같거나 대칭인 경우에는 일방의 측면도
   다. 평면도와 저면도가 같거나 대칭인 경우에는 평면도 또는 저면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에 같은 도면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 같은 도면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도면
   마. 항상 설치 또는 고정되어 있어 저면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면도

2.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도형 등이 표시되는 화상디자인의 경우에는 정면도를 제외한 도면
3. 표면도와 이면도가 같거나 대칭인 경우 또는 이면도에 모양이 없는 평면디자인의 경우에는 이면도

④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견본으로 도면에 갈음하는 때에는 견본 1개와 그 견본을 촬영한 사진 1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견본의 규격은 두께 1센티미터,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22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엷은 천 또는 종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의 합을 20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09.6.30>

[전문개정 2007.6.29]

제6조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및 디자인등록공고일 <개정 2005.7.1>) ①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또는 디자인등록공고일은 당해디자인등록출원이 공개되거나 디자인등록이 공고된 취지를 게재한 공개디자인공보 또는 디자인등록공보(디자인심사등록공보 및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를 말한다)가 발행된 날로 한다. <개정 2005.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된 비밀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창작내용의 요점 및 디자인의 설명이 게재된 디자인등록공보가 발행된 날을 그 디자인등록공고일로 본다. <개정 2009.6.30>

[전문개정 1998.2.23]

제6조의2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등 <개정 2003.5.12, 2005.7.1>) ①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신청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7.1, 2007.6.29>

②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하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포기)서를 준용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2, 2005.2.11, 2005.7.1, 2007.6.29>

③대리인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2, 2007.6.29>

[전문개정 1998.12.31]

제6조의3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개정 2001.6.30, 2005.7.1>) 법 제23조의5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7.6.29>

1. 간행물등 증거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8.12.31]

제7조 (디자인도면에 기재할 사항 등 <개정 2005.7.1>)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는 별표 2의 기재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1.6.30, 2005.7.1>

② 삭제 <2001.6.30>

③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진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명료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개정 1993.12.31, 2005.7.1>

④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에 갈음하여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견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파손·변형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
2. 취급 또는 보존이 용이한 것
3. 용지에 붙이는 경우에는 쉽게 떨어져 나갈 염려가 없는 것

제8조 (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방법 <개정 1993.12.3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창작내용의 요점란에는 별표 3의 기재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개정 1993.12.31, 2001.6.30>

제9조 (물품의 구분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별표 4의 각 물품의 구분에 속하는 구체적인 물품의 명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6.30>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벌의 물품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③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07.6.29>

1. 별표 4의 물품의 구분 중 A1류·B1류·C1류·F3류·F4류 및 M1류에 속하는 물품
2.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도형 등이 표시되는 화상디자인에 관한 물품

④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별표 4의 물품의 구분상 대분류가 동일한 물품으로 한다. <신설 1998.2.23, 2001.6.30, 2005.7.1>

제10조 (우선권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우선권증명서류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준용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심사·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한 국어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권증명서류의 내용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은 국어번역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29]

제10조의2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법 제17조 또는 법 제72조의4에 따른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9.6.30]

제10조의3 (서류 등의 제출) ①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견본, 그 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서류·견본,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의한다.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10조의4 (물건의 반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견본 또는 증거물건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제출할 때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10조의5 (기간의 지정) ① 법 제17조 또는 제72조의4에 따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 등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② 법 제4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연장(단축)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

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10조의6 (기간경과 구제신청) 법 제4조의15제2항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신청 및 법 제4조의16에 따른 보완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간이 지난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9.6.30]

제10조의7 (절차의 속행통지)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4조의18에 따라 승계인에 대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속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10조의8 (절차의 수계신청) 법 제4조의21제1항에 따라 절차의 수계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수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9.6.30]

제10조의9 (포기 또는 취하)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 또는 취하하려는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포기서 또는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그 우선권주장을 취하하려는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10조의10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받으려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의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출원서에 증명서류제출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30]

제10조의11 (디자인등록출원번호의 통지)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디자인등록출원일자를 적은 디자인등록출원번호통지서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10조의12 (디자인등록출원인변경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출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등록 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같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만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30]

제10조의13 (지분 등의 기재)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거나 법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하여 지분을 정하고 있는 때 또는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이 있는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그 취지를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원인의 지분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분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9.6.30]

제10조의14 (창작자의 추가 등)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착오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창작자 중 일부 창작자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은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창작자를 적지 아니한 것(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창작자의 누락만 해당한다)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여부결정 후에도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제1항에 따라 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정서 또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2.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교부신청서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10조의15 (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교부) ① 외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파리조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10조의16 (심사참고자료)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참고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9.6.30]

제11조 (출원의 분할)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원출원의 내용을 1 또는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함과 동시에 분할되는 디자인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5.7.1, 2007.6.29>

1. 도면(사진·견본) 1통(분할출원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

② 삭제 <2001.6.30>

③ 삭제 <2001.6.30>

[전문개정 1998.12.31]

제12조 삭제 <2005.7.1>

제12조의2 삭제 <2005.7.1>

제13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5.7.1, 2007.6.29>

1. 도면(사진·견본) 1통(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8.12.31]

제14조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이라는 이유로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의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심결 또는 디자인등록무효심결의 확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1.6.30, 2005.7.1>

제15조 (협의결과 신고)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을 정하여 신고하는 자 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하나의 출원인을 정하여 변경신고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합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합된 출원 또는 출원인변경신고에 대하여 협의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15조의2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의3 (우선심사의 신청) 법 제25조의4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9.6.30]

제16조 (심사의 순위)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5.7.1>

제16조의2 (동일출원의 심사) 같은 디자인에 대하여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선출원이 처리되거나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될 때까지 후출원의 심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원을 거절할 이유와 같은 이유로 후출원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6.30]

제17조 (비밀디자인의 청구 등 <개정 2007.6.29>) ①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디자인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9>
②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보장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디자인등록결정서에 그 비밀보장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07.6.29>
③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비밀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비밀기간연장(단축)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신청서를 준용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07.6.29>
[전문개정 2001.6.30]

제17조의2 (보정의 각하결정)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번호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3.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4.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5. 각하결정의 주문 및 이유
6. 각하결정연월일

[본조신설 2009.6.30]

제18조 (거절이유통지서 등 <개정 1998.2.23>) ①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1.6.30, 2005.2.11, 2005.7.1, 2007.6.29>

1.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
3.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른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②법 제27조·법 제29조의5 및 법 제71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6.30, 2005.2.11, 2007.6.29>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9조 (출원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개정 2001.6.30, 2005.7.1>)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서 또는 디자인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2001.6.30, 2005.7.1>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디자인등록출원번호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5.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6. 거절이유통지연월일(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경우에 한한다)
7. 결정연월일

제20조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등 <개정 2005.7.1>) ①법 제29조의2에 따라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1.6.30, 2002.2.28, 2003.5.12, 2005.2.11, 2005.7.1, 2007.6.29>

1. 삭제 <2002.2.28>
2. 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이 무권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1통(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한한다)

②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2.28, 2005.2.11, 2007.6.29>

1. 삭제 <2002.2.28>
2.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 및 그 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2.28, 2005.2.11, 2007.6.29>

1. 의견내용(재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법 제29조의3에 따른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9>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1998.2.23]

제20조의2 (일부디자인의 포기 <개정 2005.7.1>)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디자인별로 이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서(「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서를 준용한다)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는 때에 동납부서와 함께 일부디자인포기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포기)서를 준용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05.7.1, 2007.6.29>

[본조신설 2001.6.30]

제20조의3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등의 회복 <개정 2003.5.12, 2005.7.1>) ①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서(「특허등

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서를 준용한다)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2, 2005.2.11, 2005.7.1, 2005.9.1, 2007.6.29>

1.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여야 하는 기간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하고자 하는 디자인권자는 납부서(「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서를 준용한다)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9.1, 2007.6.29>

1.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에 그 등록디자인이 실시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1.6.30]

제20조의4 (비밀디자인등록 증명 신청)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증명 서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비밀디자인등록 증명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준용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본조신설 2005.7.1]

제21조 (디자인등록증의 교부 <개정 2005.7.1, 2006.4.28>) ①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그 디자인권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디자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7.6.29>

②특허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른 양도 등의 사유로 디자인권을 승계한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6.4.28>

③특허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증을 정정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날인하고, 당해디자인등록증에 편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06.4.28, 2007.6.29>

제21조의2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의 교부) ①특허청장은 디자인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의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이 디자인등록원부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디자인권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을 정정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본조신설 2006.4.28]

제21조의3 (디자인등록증 등의 재교부)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자가 디자인등록증 또는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

제22조 (디자인등록증의 교부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의 교부신청
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의 교부신청
3. 제21조의3에 따른 디자인등록증 또는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의 재교부신청

② 디자인등록증 또는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의 정정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디자인등록증 또는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23조 (디자인권의 소멸공고 <개정 2005.7.1>) 특허청장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 취지를 디자인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제24조 (심판청구서) ①법 제68조 또는 법 제69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마다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5.2.11, 2005.7.1, 2007.6.29>

1. 삭제 <2002.2.28>
2. 도면(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67조의2, 법 제67조의3 및 법 제70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준용한다)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2007.6.29>
③ 삭제 <2007.6.29>

제24조의2 (심판번호의 통지 등)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를 수리한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한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관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관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모사전송기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24조의3 (답변서 등) ① 법 제72조의10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2조의10제3항, 제72조의20제2항, 제72조의23제1항 또는 제71조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24조의4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법 제72조의12 또는 제72조의13제1항에 따라 심판관의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24조의5 (심판참가신청) 법 제72조의20에 따라 심판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24조의6 (증거의 첨부) ① 제24조 및 제24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서·답변서·의견서, 그 밖에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류에는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자료가 서류인 때에는 그 등본을, 도면·견본 또는 물건인 때에는 실물을 갈음할 수 있는 복사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견본 또는 물건을 추가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심판관련 서류에 견본 또는 물건을 별도로 제출한다는 취지를 적고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견본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도면을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
④ 법 제72조의21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24조의7 (심사관의 의견서)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에게 해당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고, 관계심사관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특허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30]

제24조의8 (구술심리) ① 법 제72조의18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를 하려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에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24조의9 (증인의 신청 등) ① 증인신문을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 및 신문요구사항을 적은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현장검증을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24조의10 (심판청구 등의 취하) ① 법 제72조의25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심판장은 심판청구가 취하되면 당사자, 참가인 또는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판참가인이 그 참가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24조의11 (심리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① 법 제72조의26제3항에 따라 심리 종결을 통지한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 참작하지 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그 반환 전에 법 제72조의26제4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신청을 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환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24조의12 (심리재개) 법 제72조의26제4항에 따라 심리재개를 신청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24조의13 (심판의 결정서) 심판의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결정을 한 심판관이 기명날인하여

야 한다.

1. 심판번호
2. 당사자·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당사자·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4. 심판사건의 표시
5.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결정연월일

[본조신설 2009.6.30]

제24조의14 (심판비용) 법 제72조의29제5항에 따른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의 금액결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계산서 및 그 증거서류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9.6.30]

제25조 (준용규정) 법 제67조의2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및 법 제67조의3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17조의2 및 제18조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26조 (재심청구서)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심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5.2.11, 2007.6.29>

1. 삭제 <2002.2.28>
2. 도면(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27조 (디자인등록 표시 <개정 2005.7.1>) 법 제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표시는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등에 등록디자인이라는 문자와 그 등록번호를 표시한다. <개정 2005.7.1, 2007.6.29>

제28조 (서류의 열람 등) ① 법 제76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교부신청·자료열람(복사)신청·서류등본(초본)교부신청 및 디자인원부기록사항교부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심판청구사실증명·심결확정사실증명 및 심결문송달증명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전보 또는 구두(전화를 포함한다)로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복사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교부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제29조 (디자인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할 것
2. 데이터 입력장치, 데이터 저장장치 등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적합한 장비와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전산정보처리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3.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가 없을 것

②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작업절차도를 포함한다)
2. 사업실적서(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서
4.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③ 특허청장은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기관에 대하여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 중의 디자인에 관한 비밀유지 및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디자인문서전자화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30]

제30조 (디자인문서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① 디자인문서전자화기관은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실시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에 관한 대장·서류 및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9.6.30]

제31조 (전자화대상 서류)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화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1.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전자적기록매체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3. 교부신청서(서류 등·초본 교부만 해당한다)
4. 증명신청서(심판청구사실, 심결확정사실 및 심결문등본송달의 증명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32조 (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보정서(도면 등의 내용보정만 해당한다), 그 밖에 전자화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전자화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한 내용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출원인등은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33조 (디자인공보의 발행매체)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매체는 읽기전용광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6.30]

부칙 <제752호,1990.9.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785호,1992.10.30>
이 규칙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호,19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2호,1996.6.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81호,1998.2.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9호,19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2001.6.30>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호,2002.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중 의장등록에 관한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제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중 의장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에 관한 사항은 각각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문서에 의한 의장등록이의신청 및 심판관련 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거나 청구되는 의장등록이의신청 및 심판부터 적용한다.
③(부본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는 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호,2003.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호,2005.2.11>
이 규칙은 200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호,2005.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정서 제출 생략에 대한 적용례) 제3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 이후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보정을 명하는 출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및 동조중 "의장"을 각각 "디자인"으로 한다.

②기술표준원등의시험·연구및기술지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3조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한다.

③특허기술정보센터등의등록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 및 동조제2호 다목중 "의장"을 각각 "디자인"으로 한다.

부칙 <제300호,2005.9.1>

이 규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호,2006.4.28>

이 규칙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5호,2007.6.29>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1호라목,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등록이의신청·디자인등록·심판 및 재심 등의 절차를 밟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의 [합계]란 다음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신설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의 기재요령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의 [보정(보완)료]란 다음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신설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의) 기재요령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의 [수수료]란 다음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신설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의) 기재요령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앞쪽)의 [출원료]란 다음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신설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의) 기재요령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앞쪽)의 [수수료]란 다음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신설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의 기재요령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9호서식의 (앞쪽)의 [수수료]란 다음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신설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의 기재요령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별표 1] 삭제 <1993.12.31>

[별표 2] <개정 2005.7.1>

디자인의 설명의 기재사항(제7조제1항관련)

1.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판으로는 그 물품의 사용목적?사용방법?재질 또는 크기등을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의 관한 설명
2. 물품이 가지는 기능에 의하여 변화하는 디자인에 있어서 그 변화의 전후에 걸친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관하여 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의 관한 설명
3.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또는 사진에 색채를 가하는 경우에 백색?회색 또는 흑색중의 어느 하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의 관한 설명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5. 도면에서 길이가 생략된 경우에는 생략한 길이가 도명상의 몇 cm 생략되었음을 표시
6. 물품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을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서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
※ 디자인의 설명란이 부족시에는 별지를 사용한다.

[별표 2의2] 삭제 <2001.6.30>

[별표 3] <개정 2005.7.1>

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방법(제8조관련)
1. 디자인등록출원하는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을 쉽고 간결하며 명확하게 기재한다.
2. 가능한 공지된 디자인과 비교하여 독창적이고 창작된 내용을 중심적으로 기재한다.
3. 국내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및 건조물등을 모티브로 하여 창작한 경우에는 가능한 이들 형태로부터 독창적으로 창작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재한다.
4. 문자수는 가능한 300자이내로 작성한다
[작성예문]
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예문
1) 입체디자인의 경우
[예문1] 본원 장롱디자인은 창작된 송학문양을 손잡이를 포함한 전면부에 양각하여 한국적인 미와 병품의 미적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장롱디자인이 정면과 좌·우측으로 연결되는 상부 모서리를 직각형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본원 디자인은 국화모양을 배치한 라운드형으로 처리하여 전체적으로 한국의 전통미와 곡선미가 창출되도록 한 것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예문2] 본원 주전자디자인은 종래 주전자 몸체의 형상인 직선면의 몸체 또는 곡면의 몸체의 단순한 형상을 탈피하여 상협하광의 안정된 형태를 취하면서 토출구를 제외한 주전자 몸체 외주면에 동심원상으로 삼각 돌조를 형성하여 안정감과 입체감을 부각시킨 것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예문3] 본원 향수병디자인은 액체향수가 담겨진 원뿔대 형상의 용기의 상측에 투명한 유리재질로 만들어진 원구 형상의 커버가 결합되어 있고 그 내부에 여인형상의 소형 인형을 수장하여 여인형상이 투과되어 보이게 한 것으로 용기와 완구의 결합을 통하여 기존의 공지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을 느끼도록 창작한 것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2) 평면디자인인 경우
[예문1] 본원 벽지디자인은 하늘색 바탕에 연녹색의 추상적인 나무 모양을 배치하여 자연미를 느끼도록 창작한 것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예문2] 본원 직물지디자인은 독창적인 모양을 창작내용을 요점으로 함

나.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5조2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예문
1) 입체디자인인 경우
[예문1] 본원 호랑이 완구의 디자인은 호랑이 형상을 모티브로 하여 창작하였으나 호랑이 형상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 아니고 머리와 몸체를 일체형으로 하고 다리를 짧게 표현하는 등 호랑이의 형상을 독특하게 변형하였고, 큐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형상을 둥글넓적하게 창작한 것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예문2] 본원 재떨이디자인은 소화기의 형상을 모티브로 하여 창작하였으나 재떨이 뚜껑은 소화기의 상단부분의 형상을 심플하게 변형하고, 재떨이의 전체적인 비율의 구성에 있어서도 실물 소화기와는 다르게 구성하는 등 소화기 형상의 변형에 창작내용의 요점이 있음
2) 평면디자인인 경우
[예문1] 본원 포장지디자인은 물고기의 모양을 모양으로 표현하였으나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독특하게 물고기의 모양을 변형한 것에 창작내용의 요점이 있음

[예문2] 본원 손수건디자인은 사각형의 형상이나 추상적인 도형과 대나무 잎 모양의 결합을 모양으로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도록 한 것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별표 4] <개정 2007.6.29>

물품의 구분(제9조제1항·3항 및 법 제11조의2제2항관련)

분류		물품구분	비고
대분류	중분류		
A군			
(A1) 제조 식품 및 기호 품	(A1-10) 제조 식품	고형카레 고형수프 초밥 김밥 햄 베이컨 소시지 훈제육 소금저림육 버터 치즈 마가린 생선묵 꼬치생선묵 김 다시마 두부 곤약 묵 우동 소면 국수 스파게티 떡 라면 피자 식빵 과자빵 과자 카스텔라 도넛 파이 만두 양갱 비스킷 쿠키 크래커 전병과자 눈깔사탕 캐러멜 드롭스 초콜릿 아이스크림 아이스캔디 고형사탕 건빵 찐빵 껌 마카로니 엿 스낵과자	
(A1-19) 제조 식품 부품 및부 속품		과자용자루 케익용양초꽂이 케익장식용 쵸코하우스 웨딩케익용 받침대 생선묵판	
(A1-2) 담배, 담배 종이 등		담배 담배종이 담배필터	

B군							
★(B1) 의복	(B1-10) 양복	한 벌의 여성용 한복 세트 한 벌의 남성용 한복 세트 원피스 오버코트 레인코트 신사복 투피스 재킷 신사복상의 와이셔츠 셔츠블라우스 불라우스 스웨터 카디건 티셔츠 양복조끼 잠바 운동복 작업복 등산복 태권도복 유도복 검도복 스키복 승마복 망토 바지 반바지 스커트 치미바지 연결복 작업용연결복			(B1-10-1) 한복	한복저고리 한복바지 한복조끼 한복치마 두루마기 마고자	
				(B1-20) 일본옷, 중국옷	일본옷 중국옷	
				(B1-30) 에이프런 등	턱받이(유아용) 에이프런 요리용덧옷 요리용케이프 메이크업용케이프	
				(B1-40) 잠옷	파자마 네글리제 잠옷 나이트까운	
				(B1-50) 수영복	수영복	
				(B1-60) 속옷	한 벌의 여성용 속옷 세트 브래지어 언더셔츠 슈미즈 러닝셔츠 페티코트 요대	

		속치마				동정장식	

		코르셋 거들 웨이스트니퍼 올인원 블루머 드로어즈 (drawers) 상의내의 바지내의 팬티 위생팬츠 타이츠 팬티스타킹				동정커버 교체동정 칼라 칼라심 칼라걸쇠 왓펜 아플리케	
					(B1-00) 기타 의복	제킨(Zechin) 잠수복 우의 예복 유아복 보온의 목욕용까운 비치까운	
				(B2) 복식품	(B2-10) 띠	띠 요대용밴드 허리끝	
	(B1-80) 기저귀및 기저귀커버	기저귀 기저귀커버			(B2-20) 의복용벨트	의복용벨트	
	(B1-90) 의복 부품 및 부속품	의복용어깨패드 의복커버 의복용어깨심 의복용무릎붙임 의복용팔꿈치 붙임 직(직)네임 직(직)네임지 인사이드벨트 인사이드벨트지 커프스 의복용가슴장식구			(B2-30) 바지멜빵 등	바지멜빵 양말대님	
					(B2-40) 양말 등	양말 버선 덧버선 실내화 양말커버 버선커버 발목커버	

		스패츠 (spats) 운동용무릎싸개				탈장대 위하수대 허리패드	

		운동용정강이 싸개			아기보기멜빵 포대기
		스타킹	(B3) 신변품	(B3-10) 몸치장품	장신용조화
	(B2-50) 장갑 등	장갑			장신용핀
		작업용장갑			장신용메다는 치장걸이
		고무장갑			쌈지걸이
		의료용장갑			교표
		토시			모표(모표)
		손목밴드			상장(상장)
		머프(muff)			의례장
		운동용팔꿈치 싸개			뱃지
					완장
	(B2-60) 모자 등	모자			메달
		두건			팬던트
		고깔			견장
		차양모			휘장
		수영모			쌈지걸이용끈
		나이트캡			목걸이멈춤구
		샤워캡			장신용구슬
		헤어네트			뱃지홀더
		샷갓			장신용사슬걸이
		갓			장신용체인소자
		헬멧			장신용체인
		갱내모			
		소방용모자		(B3-20) 머리 및 귀치 장품	헤어피스
		머리보호구			모조수염
		귀커버			가발
		모자용리본			비녀
	(B2-00) 기타 복식품	궁도용가슴붙임			머리핀
		옷소매 걷어매는 끈			헤어클립
		복대			헤어밴드
		건강대			헤어리본
		임부대			머리띠

		족두리			택트렌즈용 케이스
		귀걸이			
		가발용장착구			안경용렌즈
		모조속눈썹			콘택트렌즈
		귀걸이멈춤구			안경용테

(B3-30) 목 및 가슴 치장품	목걸이 로켓(locket) 넥타이핀 스카프핀 칼라핀 브로치 목치장용물림쇠 넥타이매듭구
(B3-40) 손·발 치장품	팔찌 미아방지용수갑 소매단추 반지 발반지 팔밴드 인조손톱 발치장품
(B3-60) 안경	안경 선글라스 보호안경 방진용안경 보조선글라스 코걸이안경 입체영화용안경 안경집 안경주머니 안경보관받침 케이스 콘택트렌즈용 케이스 클리너부착콘 안경용코받침 안경용다리 안경용경첩
(B2-70) 넥타이 등	넥타이 나비넥타이 고무줄넥타이 머플러 스카프 목도리 숄
(B2-80) 손수건	손수건
(B3-70) 부채	부채 부채용자루 부채살 부채용지
(B3-80) 우산 및 지이	비치파라솔 우산 양산 지팡이 우산용끈 우산주머니 우산용자루 지팡이용자루 우산용살 우산용대
(B3-00) 기타 신변 품	한 벌의 장신구 세트 한 벌의 커프스버튼 및 넥타이 핀 열쇠고리
20) 등가방 또는 배낭	sack) 등가방 배 낭 란도셀
(B4-3)	보자기 비단보

		열쇠고리장식구 열쇠주머니 열쇠케이스 동전고리 동전집 열쇠카드 도장주머니
(B4) 가방 및 휴대용지갑등	(B4-1) 가방 또는 휴대용지갑등	손가방 핸드백 돈지갑 세컨드백 어깨걸이가방 신발주머니 보스톤백 트렁크백 트렁크 슈트케이스 쇼핑백 들주머니 들바구니 가방용어깨걸이밴드 가방용손잡이 가방용자물쇠 가방용꼭지쇠 쇼핑백용자물쇠 지갑용손잡이
	(B4-60) 짚신	냅색(knap-sack)
(B5-70) 나막신	나막신 코 신	
(B5-8) 슬리퍼	슬리퍼	
	보자기	
(B5) 신발	(B5-1) 일반신발	단 화 운동화 작업화 등산화 장 화 우 화 방한화
	(B5-20) 운동용 특수화	스키화 스키화용깔창 아이스스케이트화 롤러스케이트화 체조화 수영화 축구화 농구화 볼링화 골프화 스파이크화
	(B5-3) 유아화	유아화
	(B5-50) 샌들	샌 들
	(B5-00) 기타 신발 등	짚 신 구두커버 남자고무신 여자고무신 구두주걱 부러시부착구두주걱 구두보형구 마개따개부착구두주걱

피					구두주걱용자루
(B5-90) 신발 등의 부품 및부 속품	신발용앞코심				탈화구
	신발용뒤축심				탈화대
	신발용바닥심				착화구
	신발용에어쿠션				착화대
	신발용끈걸이구	(B6) 끽연용구 및 점화기	(B6-10) 끽연용파이프	담뱃대
	아이젠			끽연용파이프꽂이
	덧신			
	구두끈		(B6-20) 담배합	담배합
	구두갑피			탁상용담배합
	구두앞창			라이터부착담배함
	구두뒤축			담배갑
	구두중창			휴대용담뱃갑
	구두깔창			권련용케이스
	구두밑창			쌈지
	구두둘레테이프		(B6-30) 재떨이	재떨이
	구두대다리			담배불소화구
	구두징			성냥불끄개
	구두골		(B6-40) 점화기	라이터
	구두용미끄럼방지구			시계부착라이터
	구두용발톱보호구			탁상라이터
	구두용뒤축보호구			가스점화기
				이프
		라이터용케이스		손톱깎이
		라이터용압전소자(압전소자)		손톱연마용줄
				손톱깎이용커버
				전기손톱연마기
	(B6-50) 성냥 및성 냥갑	성냥	(B7-200) 이용 용구	이용용비누거품기
		성냥갑		콧수염자르개
		성냥개비		면도기

	(B6-6) 한 벌의 끽연용구 세트	한 벌의 끽연 용구세트
	(B6-0) 기타 끽연용구 및 점화기	담배필터구멍 뚫이 엽궐련커터 담배용링 끽연용구함 끽연용쟁반
(B7) 화장용구 및 이용용구	(B7-10) 화장용구	화장용도포구 화장용마스크 화장용안면커버 화장용주걱 분첩 화장용솔 면도용솔 화장용연필 속눈썹자르개 속눈썹컬러 메니큐어용나

	헤어커터겸용 면도기 헤어커터 안전면도기용 교체날 전기눈썹면도기 전기면도기 전기면도기용 겉날 전기면도기용 속날 전기면도기용 충전기 전기면도기용 커버 전기면도기용 케이스
(B7-30) 정발구	모발염색액도포구 퍼머넌트용가온기 빗 빗케이스 머리솔 빗부착머리솔

	헤어컬러 헤어컬롯드 콜드퍼머넌트용롤러 헤어컬러용클립 헤어컬러용커버 헤어컬러용가열기 헤어컬러용케이스 헤어드라이어

화장료	입술연지
(B7-00) 기타 화장용구 및 이용용구	귓볼천공기 화장품함 아이샤도우용기 콤팩트 콤팩트용중좌 향수함 향수용분무기 이미용용구꽂이 입술연지함

		헤어아이론		(B9) 의복 및 신변품 범용 부품 및 부속품	(B9-10) 의복 및 신변품	의복용단추	
		헤어드라이어 용케이스				가방용단추	
		헤어드라이어 결착용후드				구두용단추	
		헤어드라이어 결착용빗				의복용스냅	
		헤어드라이어 경착용솔				가방용스냅	
		헤어드라이어용 스탠드				구두용스냅	
		헤어아이론용 스탠드				의복용훅 (hook)	
		헤어아이론용 충전기				의복용차이나 버튼	
		바리캉				의복용터글 (toggle)	
		바리캉용교체 날				슬라이드파스 너	
	(B7-40) 거울	회중거울 손거울				슬라이드파스 너용테이프	
						슬라이드파스 너용슬라이 드	
	(B7-50) 고형	눈썹그리는먹 고형화장분 볼연지				가방용연결고 리	
						의복용연결쇠	
						바지멜빵용조 절쇠	

		양말물림쇠			용분무기		
		가터물림쇠					
		의복용물림쇠			(C0-30) 재봉구	시침실걸이	
		의복벨트용버 클				단추구멍용커 터	
		자동차용안전 벨트의 버클				수예용판	
		가방용버클				수예용심	
		구두용버클				재봉함	
		시계밴드용버 클				재봉용주걱	
		자전거안전벨 트의 버클				초크	
		의복벨트용고 리쇠				재보용실패	
						재봉바늘	
						긴뜨개바늘	
						고물줄끼우개	
						바늘겨fp	

		의복벨트용장식구 모자용조절쇠 의복용조절쇠 의복용안전핀 가방용조절쇠 자동차용안전벨트의조절쇠 가방용장식구
C군		
(C0) 기타의 생활용품	(C0-10) 탁상신변품정리용품	보석함 반지함 신변정리용쟁반 소품함 장신구꽂이 메달꽂이 부채꽂이
	(C0-20) 가정	가정용분무기 가정용분무기의 노즐
		골무 자수틀
★(C1) 침구, 마루깔개, 커튼 등	(C1-10) 침구	한 벌의 침장세트 이부자리커버 체결구 베개 베개커버 담요 요커버 이불 매트리스 침낭 이불커버 침대커버 요 전기요
	(C1-20) 방석 및 쿠션	방석 의자등받침대쿠션 방석커버 쿠션커버
(C1-30) 양탄자 신발용 매트 등		양탄자 발닦기 전기양탄자 욕실용깔개 신발매트 자동차용매트 실내용매트 전기양탄자용커버 마루깔개매트블록 신발용매트블록 발닦기매트블록
(C1-40)		돗자리 멍석
	6)테이블보 등	런천매트 냅킨 전화기용깔개
	(C1-7) 수건 등	수건 걸레 행주
	(C1-0) 기타의 실내 장식품	이부자리케이스 방석케이스 이부자리케이스용손잡이
(C2) 실내 장식품	(C2-10) 장식	탁상용분수 장식용접시 화병 꽃꽂이기

	돗자리등	
	(C1-50) 커어튼, 발, 모기장등	커튼 문발 점두용(점두용)발 구슬발 베니션블라인드 버티컬블라인드 롤블라인드 모기장 모기장연결구 커튼결속구 문발용부재 베니션블라인드용슬라이트
	(C1-50) 테이블보등	걸이화병 수반(수반) 침봉(침봉) 침봉교정구 꽃연결쇠 기념품용방패 상배(상배) 트로피 기념패 트로피용몸통 트로피용대 사진꽂이 사진틀 저금통 그림접시꽂이 장식물케이스 인형케이스
	(C2-20) 벽걸이	벽걸이 기둥걸이 액자
	(C2-30) 실내용 걸이 장식구	운반(운반) 족자 액자용깔개판
	(C2-30) 실내용 걸이 장식구	크리스마스용 몰 풍령 걸이용 인형
	(C2-4) 조화	조화 수중화
	(C2-0) 기타 실내장식품	탁상용벨
(C3)	(C3-30) 소제용구	배수관청소구 전동솔 청소용폴리셔(polisher) 수세미 자루부착수세미 케이스부착수세미 솔대 수세미케이스
	(C3-30) 소제용구	빗자루 수동소제기 총채 쓰레받기 걸레 몹(mop) 양동이 몹세탁기 창닦이구

청소용구 세탁용구 등	10) 청소용구	시궁창갈퀴				서리닦이구	
		구두닦이구				쓰레기통	
						오물통	
	(C3-20) 청소용솔 또는 수세미	청소용솔				자동차용쓰레기통	
		마무리용솔				재떨이부착쓰레기통	
		양복솔				광고판부착쓰레기통	
		구두솔				설거지대용쓰레기통	
		전기면도기청소용솔				쓰레기통용홀더	
		레인지용솔				재활용품수거대	
		화장실용솔				우유팩수집함	
		청소용자루부착솔				쓰레기포대받이	
		세차용자루부착솔				세정기	
		컵세정용솔				전기세탁기용배수호스	
		세정용솔				전기세탁기용뚜껑	
		몹용자루				전기세탁기용받침대	
		빗자루용자루				전기세탁기용보푸라기수집구	
		총채용자루				전기세탁기용엉킴방지기	
	(C3-40) 전기소제기 및 전기마루닦이기	전기소제기				세탁기용세제공급기	
		전기소제기본체				세탁주머니	
		탁상클리너		(C3-60) 의류탈수기, 의류건조기		의류짜개	
		휴대용전기소제기				의류탈수기	
		전기소제기용흡입구				의류건조기	
		전기소제기용호스연결구				이불건조기	
		전기소제기용에어필터				구두건조기	
		전기소제기용케이스				의류건조기용노즐	
		전기소제기용솔					
		전기마루닦이기					
		전기마루닦이					

	기용솔
(C3-50) 세탁용구 및 전기세탁기	빨래판 빨래집게 빨래방망이 대야 세면기 목욕용손대야 세탁바구니 세탁물통 전기세탁기 건조기부착전기세탁기 드라이클리닝기 세탁용초음파
	구두건조기용대 구두건조기용노즐
(C3-70) 빨래건조용구	빨래줄 빨래집게 빨래건조대 빨래집게걸이 고무장건조걸이대
(C3-80) 세탁물마무리기	세탁물프레스기 전기다리미

	기 등	바지프레스 재봉용인두 다리미용받침대 다리미용케이스
(C4) 가정용 보건위생용품	(C4-100) 신체청정용품	핑거브러시 고체비누 때밀이 목욕용솔 유아용세발모 세발용비듬제거솔 세발용솔 세발용베개 세발기 환자용세발기 세안기(세안기) 세안용솔 안명증기욕기 초음파세안기 점안기 세안용(세안
		휴대용국부세척기 용조용발포기 욕조용발포기 본체
	(C4-20) 신체청정용품 관련물품	세면용기설치대 비눗갑 물비누통 물수건통 물수건접시 물수건가열기 티슈페이퍼용기 티슈페이퍼용기커버 커트면통 안경렌즈클리너페이퍼케이스 쓰레기용부착티슈 페이퍼용기 화장지홀더

		용)접시				화장지케이스
		치간청소구				화장지페이퍼
		혀긁기				추출절단기
		구강세정기				화장지홀더커
		양치기				버
		치솔				화장지홀더용
		잇몸맛사지구				심봉
		치솔용치모보				치솔통
		호대				치솔세우개
		귀이개				치솔꽂이
		치아 운동구				전기치솔용충
		세수기(세수				전기
		기)				손건조기

	손 닦이기			50)	콘돔
	이동용변기			피임	페서리
	환자용변기			용품	피임링
	환자용뇨기				자궁내피임구
	유아용변기			(C4-	일광욕기
(C4-	타구(타구)			00)	바스트업기
30)	탈취기			기타	여드름살균기
실내	방향기			가정	족집게
위생	방충제용용기			용 보	가시뽑게
용품	자동차용방향			건위	귀마개
	기			생용	위생마스크
	탈취제분무기			품	눈보호안대
	건조제통	(C5)	(C5-		한 벌의 커피
	탈취제	음식	10)		세트
	방충제	용 용	음식		한 벌의 화채
	방취제	기 및	용 용		용 세트
	냄새주머니	조리	기 의		한 벌의 반상
	포충기	용 용	한벌		기
	살충기	기	물품		한 벌의 다기
	파리잡이통				세트
	파리잡이종이				한 벌의 양념
	방전살충기				용기 세트
	모기잡이기				한 벌의 밥그
	모기잡이향훈				릇과 국그릇
	증기			(C5-	접시
	전기모기잡이			20)	공기

		기				음식	종지
		모기잡이향				용 용	식탁용주발
		전기모기잡이				기	오르되브르그
		기용 매트					릇
		바퀴잡이기					구프
		파리채					김통
	(C4-	생리대					과일용기
	40)	생리용냅킨					사발
	생리	생리용소독솜					대접
	용품						공기용뚜껑
	(C4-						모듬바구니

		과실바구니				워터피처	
		과자바구니				술병	
		국수찜틀				소다사이펀	
		국수찜틀걸이				조리용기름통	
		국수용기				수통	
		국수찜틀걸이				휴대용보온통	
		용대나무발				냉수통	
		이유용컵				커피사이펀	
		컵				커피사이펀용	
		생맥주잔				스탠드	
		커피잔				퍼컬레이터용	
		커피잔 및 받				여과기	
		침접시				주전자뚜껑용	
		홍차잔				꼭지	
		아이스크림컵				식품용보온병	
		일회용컵				버터통	
		찻잔				이긴고추통	
		술잔				설탕통	
		포유병				소금통	
		찻잔용뚜껑				과자그릇	
		물컵덮개				도시락통	
		포유병용꼭지				찻통	
		포유병용뚜껑				식품용항아리	
		계란세우개				빵통	
		식품세우개				김치통	
		빵세우개				조미료통	
		레이스페이퍼				식품용단지	
	(C5-	주전자				얼음통	

		30) 식탁 또는 보존 용 용기	다관 커피포트 티포트 밀크포트 드레싱따르개 간장따르개 소스따르개 소스통 식용유따르개 밀크피처(pitcher)				밥통 쌀뒤주 식탁용소금뿌리개 후추뿌리개 후추뿌리개 식품수납케이스 요리배달통 아이스박스 낚시용쿨러		
			음료수병냉각용기				전기보온쟁반 케이크래크		
		(C5-40) 조리 용 용기	남비 튀김남비 구이판 구이망 생선구이용망 크레이프구이판 솥 프라이팬 계란구이기 찜통 찜틀 찜통깔판 압력솥 전기남비 취반기 전기튀김남비 남비뚜껑 남비용속뚜껑 남비용자루 남비뚜껑용꼭지 전기포트 퍼컬레이터 커피메이커 밀부착커피메				도마 치즈보드 조리용접시 조리용주발 물기빼는쟁반 조림용저림기 저림용누름돌 저림용누름뚜껑 조리용배트 조리용볼(bowl) 사라다볼 절구 양념가는그릇 조리용소쿠리 물빼는소쿠리 물빼는바구니 물빼는소쿠리부착볼 조리용배트의 물빼는 쟁반		
					(C5-50) 식기 지지		식기덮개 토스터용커버 수통커버 포트커버		

		이커		구 식	포유병용커버		
		식품보온기		기 수	컵보온커버		
		식기보온기		납구	주기(주기)케		
		전자자		등	이스		
		요구르크제조			컵받침케이스		
		기			수정통		
		이스트균발효			이쑤시개통		
		기			음식용구수납		
		조리용발효기			함		

		컵걸이			기		
		마개따기걸이		(C6)	(C6-	음식용포크부	
		컵세우개		음식	10)	착스푼	
		포유병받이		용구	음식	한벌의 나이	
		접시세우개		및 조	용구	프, 포크 및	
		캐스터스탠드		리용		스푼	
		접시깔개		기구		한벌의 숟가	
		식칼걸이				락 및 젓가	
		컵받침				락	
		찻잔받침쟁반				음식용스푼	
		남비받침				음식용포크	
		접시받침				음식용나이프	
		젓가락세우개				숟가락	
		이쑤시개세우				젓가락	
		개				음식용구용	
		냅킨세우개				자루	
		상				조리용젓가락	
		쟁반				나무젓가락	
		휴대용쟁반				음료용 빨대	
		쟁반손잡이				이쑤시개	
		쟁반용매다는				칵테일픽	
		끈				매들러	
		쟁반용물빼기				(muddler)	
		반				칵테일스푼	
		식기끼우개			(C6-	조리용스푼	
	(C5-	음식용용기또			20)	조리용국자	
	9)	는 조리용용			조리	구멍뚫린국자	
		기부부품 및			용구	국자	
		부속품			등	주걱	
	(C5-	한 벌의 주기				조리용포크	

	0) 기타의 음식용 또는 조리용 용	세트 핑거볼				사라다포크 바베큐포크 구이꼬챙이 조리용주걱 프라이뒤집개 케이크뒤집개 조리용솔	

		얼음집게 과자집게 사라다서어버 조리용깔때기 깡통따개 뚜껑따개 전기깡통따개 코르크따개 종이뚜껑따개 종이팩개봉구 남비집게 과자성형기 쿠기형발기 (형발기) 튀김성형기 버터뭉치개 초밥용누름틀 아이스캔디성형기 아이스크림디셔 제빙접시 주먹밥성형기 초밥성형기				비늘긁기 마늘탈피기 감자탈피기 계란자르개 계란껍질까개 슬라이서 삭절기 강판 빙삭기 아이스픽 커피밀 양념분쇄기 푸드믹서 푸드프로세서 마요네즈제조기 가루반죽기 가정용제면기 핸드믹서 과즙기 녹즙기 착즙기 레몬즙기 마늘즙기	
	(C6-30) 조리용 가공구	솜사탕제조기 후드프로세서 식칼 고기써는식칼 버터나이프 피자자르개 치이즈자르개 전기식칼				주스믹서 쥬서(Juicer) 나무공이 밀방망이 호두까개 조리용거르개기 튀김찌꺼기용	

		조리용가위 껍질까개 과일꼭지제거구 과일심빼개					망국자 조리체 난황(난황)분리기 차거르개기		

		드리퍼 차거르개받이					풍로 화덕 연탄곤로 바베큐곤로 곤로용손잡이 삼발이 곤로용버너 곤로용물받이 접시 가스곤로용연소보조구 곤로용기름제거구 곤로부착서비스왜건 러스터부착곤로 그릴부착곤로 받침부착곤로 레인지용연결틀		
	(C6-40) 조리용 가열기	식품용축열구(축열구) 냉동식품환원기 조리용구이기 조리조소기(조소기) 오븐 전기오븐 가스오븐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용 회전대 토스터 로스터 불고기구이기 불고기판 신선로 석쇠 새구이기(기) 바베큐 그릴 생선구이기(기) 투입식주전자곤로 전기곤로 가스곤로 석유곤로 알콜곤로				(C6-50) 냉장고 제빙기 등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동고 온장고 차량용냉온장고 제빙기 냉장고용상판 냉장고용손잡이 냉장고용경첩 냉장고용패킹		

			풍뒤(fondue) 용곤로 전자조리기 부뚜막						재 냉장고용바스켓 냉장고용어름		
			접시 냉장고용식품케이스						관 관덮개 납골단지		
		(C6-60) 식품 공급기	음료수냉각기 음료냉온수기 커피디스펜서 사모바르(Samovar) 음료용디스펜서 분말식품공급기 계량용쌀통 고형식품공급기 음료수냉각기용꼭지						사리함 유골함 납골자루 비석 묘표 사리탑 위패 사리탑세우개 불공장식대 장제용 촛대 양초함 장제용선향꽂이 장제용공물접시 장제용꽃세우개 장제용화병 장제용향로 향로 향합 불상 불단 불단용난간 불단용기둥		
		(C6-70) 식품 식기용 세정기 및 식품 식기용 건조기	식품세정기 식기소독기 자외선살균기 식기세척기 불판세척기 식품건조기 식기건조기 식기세정기용 물빼는 소쿠리								
		(C6-9)	음식용구 및 조리용기구 부품 및 부속품								
(C7) 경조용품	(C7-10) 장제구	한 벌의 제기세트 불전함 불사용방울 제단						(C7-2) 상여	상여		
								(C7-30) 크리스마	크리스마스트리 크리스마스트리용 포트		

		염주 염주걸이				스용 구		

	(C7-00) 기타 경조 용품	부적주머니 목탁 부적
D군		
(D0) 기타 주택누설비용품	(D0-10) 주택용 수취함	우유수취함 신문협지용클립 검침표수납케이스 우편함 우편함용자물쇠 신문수취함 물품수취함 순찰함 봄베용격납통
	(D0-20) 사다리 접사다리 등	사다리 접사다리 고소작업용승강기 이동작업대 발판 사다리용디딤목 접사다리용디딤목 사다리용지주
	(D0-0) 주택 설비 용품 등	한 벌의 세면화장대 세트
(D1) 실내 소형 정리 용구	(D1-10) 매달림형	의류용걸이 넥타이걸이 매다는바구니 바지걸이용집게
	(D1-200) 벽부착 소형정리 용구	모자걸이 안경걸이 의복걸이 수건걸이 행주걸이 벽걸이선반 매다는선반 주방용품대 벽걸이소품함 벽부착수세미통 욕실용품수납장
	(D1-30) 재치 소형 정리 용구	잡지꽂이 신문통 슬리퍼꽂이 슬리퍼세우개 서류철걸이대 병꽂이 양주꽂이 신문정리상자 신문걸이 우산세우개 차량용우산세우개 화분선반 화분대
(D2) 가구	(D2-10) 걸상 의자 등	걸상 기수련용좌판 이동좌대 절첩용매트리스 의자 좌의자 겨드랑걸치개

		벤치				의자용등판	
		휴대용걸상				의자용좌판	
		회전걸상				의자용팔꿈치	
		장걸상				걸치개	
		평상				걸상커버	
		절첩걸상				의자커버	
		연결걸상				의자받침구	
		회전의자				의자용등받이	
		스프링의자				체육공원용벤	
		장의자				치	
		소파			(D2-	항공용침대	
		절첩의자			20)	침대	
		연결의자			침대	돌침대	
		극장용의자			등	2단침대	
		취침용의자				돌침대용골조	
		흔들의자				요람	
		유아용보행기				유아용침대	
		이용용의자				유아보육용상	
		미용용의자				자	
		치료용의자				유아요람모기	
		치과치료용의				장	
		자				의료용침대	
		차량용의자				침대용측책	
		자동차용시트				침대용헤드보	
		항공기용의자				드	
		자동차운전석				침대용발열파	
		용의자				이프	
		자동차용방석				침대용스프링	
		자동차시트용				그물침대	
		머리받침대			(D2-	한 벌의 책상	
		버스객석용의			30)	과 책꽂이	
		자			테이	회의용테이블	
		열차객석용의			블 책	주부용작업대	
		자			상 카	회의용책상	
		걸상용테			운터등	테이블	
		의자용테				시스템키친테	

		이블				가구	칸막이정리선
		책상					반

		사회대 카운터 가스쿠킹테이블 곤로부착테이블 학습책상 사무용책상 학생용책상 좌책상 책선반부착책상 독서실용책상 탁상다리지지편 키보드받침대 테이블다리 책상용다리 테이블용상판 카운터용상판				식기선반 이불선반 책선반 정리선반 장롱 로커장롱 일용품캐비닛 음향기기수납캐비닛 음향기기수납선반 텔레비전수납캐비닛 전자레인지수납캐비닛 레코드캐비닛 파일링캐비닛 사무용품캐비닛 사이드보드	
	(D2-40) 재치대 및 왜건 테이블	텔레비젼대 레인지대 전화대 스피커대 소포함재치대 주방용정리선반 컴퓨터영상표시기받침대 미용용구세트대 왜건테이블				장식선반 주방가구케이스 매달림찬장 양주선반 조미료선반 소품장 완구장 파리장 신발장 구두수납선반 로커	
	(D2-50) 수납	한 벌의 거실용 가구 세트				코인로커 금고 손금고	
		금고용다이얼자물쇠 금고용다이얼손잡이				조립앵글커버 상품진열용판 조립가구용패널	

		의류정리상자			가구다리받침
		막상자			구
		탈의바구니		(D2-00) 기타 가구	한 벌의 테이블 세트
		정리바구니			한 벌의 사무용가구 세트
		회전용옷걸이			한 벌의 응접세트
		현관칸막이			한 벌의 탁자와 의자
		바스켓왜건			식탁
	(D2-60) 의복걸이대 경대등	의복걸이대			티테이블
		모자걸이대			교탁
		걸이구용지지대			연대
		가리개			책꽂이
		병풍			걸상부착테이블
		경대			걸상부착책상
		체경			의자부착테이블
		벽걸이거울			의자부착책상
		보조거울			독서실용책상
		탁상거울			독서대
		베이비써클	(D3) 전구 및 조명 기구	(D3-10) 전구 및 방전램프	전구
	(D2-900) 가구부품 및 부속품	가구용서랍레일			할로겐전구
		가구용선반받이			백열전구
		조립가구용관연결구			소형전구
		가구용손잡이			볼전구
		가구용환풍기			장식용백열전구
		가구용유리문틀			크리스마스용장식전구
		가구용자물쇠			적외선전구
		가구용장식금속구			도로조명용전구
		가구용경첩			나트륨전구
		선반용괘지구			사진용섬광전구
					크세논램프
					갓
					가스등
					아세틸렌등
					양초
					오일양초
					크리스마스용

	(Xenonlamp)
	집어등용전구
	실드비임전구
	표시등용전구
	전구용등피
	필라멘트
	장식전구용꼭지쇠
	장식전구용지지구
	전구보호캡전구지지구
	방전램프보전구
	전구커버
	장식전구용소켓
	방전램프
	형광램프
	수은램프
	점등관
(D3-20) 연소형 조명기구	횃불
	횃불용유등기
	화톳불등
	등명(등명)
	등심(등심)
	등심용부구(부구)
	오일램프
	파라핀램프
	오일램프용등탠드
	연필깎이부착형광등스탠드
	전기스탠드
	형광등스탠드
	플로어스탠드
	거실용스탠드
	양초
	전기양초
	양초소화기
	촛대
	양초세우개
	초롱
	행등(행등)
	등갓
	방류등갓
	주마등
	석등갓
(D3-30) 옥내용 조명기구	천장등
	천장등용갓
	샹들리에
	천장매다는등
	천장매다는등갓
	천장매입등
	천정등용고리
	천정등매다는암
	천정등매다는장식구
	샹들리에용암벽 등
	벽등용 갓
	시계부착전기스탠드
	시계부착형광등스탠드
	라디오수신기부착전기스문등
(D3-50) 휴대용 조명기구	회중전등
	상비등
	포켓라이트
	펜슬라이트
	신호경보기부착회중전등
	손전등

	전기스탠드용대
	전기스탠드용갓
	전기스탠드용지주
	천정등용루버
	조명기구용루버
	천정등용루버리프
	조명등용루버리프
	천정등용투광성커버
	조명기구용확산투광관
(D3-40) 옥외용 조명기구	가로등
	도로등
	도로표지등
	방범등
	조명탑
	가로등용폴
	가로등용암
	가로등두부
	가로등용글러브
	정원등
	연못용정원등
	휴대전등용홀더
	휴대전등용케이스
	휴대용현광등헤드램프
(D3-60) 특수용도 조명기구	투광용스포트라이트
	점포용투광기
	사진촬영용투광기
	영화촬영용투광기
	무대용투광기
	탐조등
	수중등
	분수용조명등
	발밑등
	수술용무영등(무영등)
	내진용무영등
	치과용무영등
	치과용조명등
	터널용조명등
	검진등
	방충등
	살균등
	작업용조명기구

	장식용조명기구
	수리(수리)점검등
	비디오카메라용후레쉬집어등
(D3-70) 수송	철도차량실내등
	자동차용전조
	자전거용미등
	자전거전조등용소켓커버
	자동차전조등용스톤가드
	자전거용전조등커버
	자전거용전조등렌즈
	선박용등

	기관용 조명 기구	등 자동차용미등 자동차용도어 등 자동차용방향 지시등 자동차용맵램프 자동차용안개 등 자동차용전조 등커버 자동차용전조 등렌즈 자동차용번호 판램프 자동차용스포 트램프 자동차용제동 등 자동차용리어 콘비네이션 램프 자전거용전조 등 자전거용방향 지시등			선미등 선수등 마스트등		
				(D3-80) 조명설비 구	조명용루버 루버롤용루버 조명용루버리 프 조명용루버재 조명용루버걸 이구 천정용확산투 광판		
				(D3-90) 전구 및 조명기 구 부품 및 부속품	조명기구용소 켓커버 조명기구용회 전자재기 조명기구용반 사갓 조명기구용반 사판 백열등용보호 갓 벽면부착등용 가드 투광기 투광기용커버 투광기용렌즈		

		탐조등용전면 유리 갓내부테 갓걸이 조명기구용갓 커버 조명기구용지 지암 작업조명기구 용걸이 투광기구용지 지각			부삽 난로용구걸이 기화기(기화 기) 화격자 스토브용불경 그레		
				(D4-20) 스토브	석탄스토브 연탄스토브 전기스토브 가스스토브 석유스토브		

		투광기용폴
	(D3-0) 기타 전구 및 조명기구	방습등 탈취등 네온등
(D4) 냉난방기기 또는 공조환기기	(D4-10) 난방구	난로 벽난로 화로 전기화로 각로(각로) 전기각로 틀부착각로 전기각로용히터 휴대용화로 탕파(탕파) 회로(회로) 족온기 전기슬리퍼 연탄바께스 탄바구니 부젓갈
		석유화로 스토브전도방지가드 스토브용연소통 석유스토브연소통 스토브용가드 석유스토브용연소심 석유스토브용오일탱크
	(D4-30) 에어컨디셔너 등	에어컨디셔너 온풍난방기 룸쿨러 패널히터 에어컨디셔너용실외기(실외기) 냉각탑 습도조절기 가습기 제습기 공기청정기 자동차용공기청정기 자동차용쿨러 자동차용히터 에어컨디셔너용커버 에어컨디셔너용텐트
	(D4-40) 선풍기등	선풍기 탁상선풍기 선풍기용모터캡 실내공기순환기 에어커튼용송
(D5) 주방설비용품 및 위생설비용품	(D5-10) 주방설비품	한 벌의 부엌가구 세트 정리선반부착설거지대 곤로부착설거지대 곤로부착조리대 식기세척기부착설거지대

		풍기				쌀통부착조리대	
		선풍기용부착구				곤로대	
		선풍기용보관대				가스곤로대	
		선풍기좌대				조리대	
		선풍기커버				설거지대	
	(D4-50) 환풍기등	환풍기				설거지대용 물빼는 판	
		창용환풍기				디스포져	
		주방용환풍기				주방찌거기처리기	
		옥상환풍기				설거지통용경그레	
		옥상배연열기				설거지용쓰레기통	
		환풍기커버				설거지대용매트	
		환풍기용필터			(D5-20) 세면용 설비구	세면대	
		환풍기용후드				변기부착세면대	
		렌지후드				세면화장대	
		태양열이용온수기				세수대	
	(D4-0) 기타 냉난방기	연탄집게				음료수대	
		연탄불뚜껑					
		난로용연통					
		스팀히터					

		양치대				목욕통용솥	
		초음파세수기				욕조용온수순환기	
		부착용세면기				목용통솥용아궁이	
		부착용세수기				목욕통솥용배기통	
		부착용음수기				목욕통솥용로스테르	
		수채통				목욕통솥열교환기	
		세탁수채통				목욕통솥용원격조작기	
		약품수채통				욕실용경그레	
		실험용수채통				욕실용매트	
		세족장				욕실용마루판	
		세면대용천판(천판)					
		세면기용각(각)					
		세발기용커버					
	(D5-	욕실용세장					

	30) 욕실용 설비구	(세장) 유아용욕조 신체장애자용 욕조 목욕솥부착욕조 욕조 온수순환기부착욕조 세장부착욕조 증기탕용증기발생기 증기탕 욕조용에이프런 욕조용때밀이구 목욕통뚜껑이동방지구 욕조용밑판 욕조용교반기 욕조용손잡이 욕조용뚜껑			샤워헤드	
				(D5-40) 화장실용 설비구	부착용변기 부착용소변기 변기용의자 변좌 변기덮개 변좌커버 변좌용깔개지 화장실용매트 변조 정화조 오수조 수세화장실용 수조 비이데 변좌용온열기 변기용비말(비말)방지구 화장실용마루판	

		로탱크용절수기 변기용국부세정기 변기용국부건조기 변기용칸막이			위생설비용벽	
	(D5-50) 부착탕비기	욕조탕이용온수기 부착탕비기(탕비기) 순간온수기 부착탕비기용 차열판 부착탕비기용 부착테 부착탕비기용 수조		(D5-0) 기타의 주방설비품 및 위생설비용품		
			E군			
			(E0) 소동물사육관상용품	(E0-10) 소동물 사육 관상용	곤충집 개줄 동물용옷 개용변기 개목걸이 애완동물용식	

		부착탕비기용 급수관		품	기	
		부착탕비기용 급탕관			소동물사육관 상용기	
		부착탕비기용 열교환기			소동물용세정 기	
	(D5-60) 주택 위생 설비 실	욕실			관상어용수조 어항	
		위생설비실			관상어수조용 히터	
		변소			관상어수조용 여과기	
		샤워실			벌레바구니	
		세면기부착욕 실			새장	
		탈의실			새장용모이통	
		사우나실			개집	
		한증욕조			포충망	
		위생설비용천 정			곤충채집통	
		위생설비용마 루			곤충용가위	
					곤충용핀셋	

		곤충표본용핀	용구 완구	컵완구	
	(E0-0) E1~E4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용품	애완동물용 먹이공급기		신발완구	
				가방완구	
			(E1-500) 취미 완구 또는 운동구 완구	모자완구	
				가면완구	
				수염완구	
				꽃완구	
				점치는완구	
				피리완구	
				피아노완구	
				오르간완구	
				방울완구	
				북완구	
				목금완구	
				실로폰완구	
				딱총완구	
(E1) 완구	(E1-10) 유희 용지	유희용지 색종이 오려내는종이 그림칠하는 완구 오려내는그림 완구	(E1-60) 가구 완구	가위완구	
				나이프완구	
				집게완구	
				자동차완구	
	(E1-20)	수중완구 샤워완구			

	수중 완구 또는 수차 완구	물총 수차완구		또는 기기 완구	탱크완구 오토바이완구 자전거완구 레이싱카완구 기차완구	
	(E1-30) 인형 및 동물완구	인형 인형용의복 산타클로완구 로봇완구 귀신완구 인형용구두 인형용머리 인형용목 동물완구			비행기완구 로켓완구 선박완구 썰매완구 유모차완구 전화완구 텔레비젼완구 라디오완구 안경완구	
	(E1-40) 생활	스푼완구 식기완구 접시완구			카메라완구 영사기완구 만화경	

		계산완구 계량완구 시계완구 활완구			공놀이기 야구게임구 게임용말 장기용말 트럼프 카루타 (carta) 화투 당구대 게임용카드 당구큐 당구게임채점기	
	(E1-70) 건물 완구	가옥완구 빌딩완구 주차장완구 정원완구				
	(E1-00) 기타 완구	학습완구 바람개비완구 의인동물완구 적목완구 조목완구 풍차완구 자석완구 딸랑이완구 탄성완구 퍼즐완구 오뚜기완구		(E2-30) 오락 기계	후리파게임기 댄스용오락기 스마트볼기 전자오락기 전자오락기용 카드 슬롯머신게임기 슬롯머신게임 기용동전 빠찡꼬게임기	
(E2) 유희 오락	(E2-10) 지능	실뜨기끈 퍼즐유희구 조립유희구				

용품	개발유희구	적목유희구 조목유희구 조립유희구용 블록 적목유희구용 블록 끼어넣는유희구 유희용고리					빠찡꼬게임기 용구슬
	(E2-20) 게임용품	마작탁자 마작패 주사위 바둑판 장기판 체스판			(E2-400) 유기구	팽이 디아볼로 딱지 구슬놀이구 죽방울 고무끈부착볼 공 비치볼 당구공 굴렁쇠던지기 용굴렁쇠 굴렁쇠던지기 용받음대	

		굴렁쇠걸이구 다트(Dart)창 다트게임용표적 비상유희구 완구도르래 부메랑 연				유원지용 유희기계	
	(E2-50) 운동유희구	줄넘기구 호핑 (Hopping) 도약유희구 보행유희구 죽마 목마 유동유희구 요동유희구 아동용자전거 아동용3륜차 3륜스케이트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4륜스케이트 2륜스케이트			(E2-0) 기타의 유희오락 용품		
				(E3) 운동경기용품	(E3-1) 육상경기용품		육상경기용원반 주행보조구
					(E3-20) 기계체조기구 등		체조용철봉 뜀틀 평균대 도약운동구
					(E3-300)		농구공 야구공

		유동원목		구기	배구공
		옥외유희구		용구	골프공
		그네			럭비공
		시소			축구공
		미끄럼대			볼링공
		정글짐			탁구공
	(E2-60) 물놀이 유희구	유희용부대(부대)			테니스용네트
		유희용풀			테니스라켓
					테니스라켓프레임
					테니스라켓용커버
	(E2-7)				셔틀콕

		배드민턴라켓			스키스톡용링
		배드민턴라켓프레임			스키스톡용그립
		탁구대			아이스스케이트
		탁구배트			아이스스케이트날
		야구용배트			아이스스케이트커버
		야구용글러브			운동경기용썰매
		야구용미트		(E3-50) 수영용구 또는 수중운동구	풀용코스로프의 플로트
		야구용마스크			수영훈련구
		야구용베이스			써핑보드
		야구용타격연습구			수상보행기
		골프티			수상스키
		골프잔디보수핀			수중안경
		골프연습기			슈노르켈(snorchel)
		골프클럽			잠수용오리발
		골프클럽용백			잠수용레귤레이터
		골프클럽용헤드커버			잠수용추
		골프클럽용그립			수중총
		골프클럽용샤프트			
		골프클럽용헤드			
	(E3-	롤러스키		(E3-	피켈(Pickel)

	40) 스키 용구 및 스케이트 용구	롤러스케이트			00) 기타 운동 경기 용품	하켄	
		롤러블레이드				행글라이더	
		스키				다리단련기	
		스키판				아령	
		스키케이스				바벨	
		스키미끄럼방지구				엑스밴드	
						역기	
		스키체결구				죽도	
		스키스톡				목검	
		스키스톡결속구				검도용몸통보호대	

		검도용토시				트라이앵글	
		검도용장갑				카우벨	
		권투 펀치백				마림바	
		권투글러브				비브라폰	
		씨름판 매트				타악기용뮤트	
		활				타악기용채	
		양궁				캐스터네츠	
		화살			(E4-30) 현악기	바이올린	
		활용표적				비올라	
		사격용표적				첼 로	
		표적방출기				더블베이스	
		엽총용탄환				기 타	
		수렵용장탄벨트				우쿨렐레	
		엽총				벤 죠	
		공기총				비 파	
		가스총				호 궁	
		엽총용케이스				스틸기타	
		화살통				크로마하프	
		엽총멜빵				전기기타	
(E4) 악기	(E4-10) 악기 연습구	연습용건반				금주(금주)	
		음정표시기				만도린	
		악음조율기				가야금	
		조자피리				거문고	
		표준음발생기				전기기타용픽업	
		메트로놈				가포다스트	
		박절기				기타용피크	
	(E4-	큰 북				기타향혈용(향	

	20) 타악기	팀파니			혈용)장식판
		목금			기타용테르피스
		철금			기타용브리지
		징			기타용지판
		심벌즈			전기기타용케이스
		탬버린			기타케이스
		박자목		(E4-40)	트럼펫
		북			코넷(cornet)
		마라카스			
	관악기등	트럼본			피아노용페달
		호른			피아노건반균형유지추
		플루트		(E4-60) 전자악기	전자오르간
		클라리넷			전자피아노
		오보에			뮤직신디사이저
		바순(Bassoon)			전자키보드
		섹스폰		(E4-90) 악기부품 및 부속품	악기스탠드
		세로피리			악기용매다는밴드
		옆피리			
		퉁소			
		피리			
		향피리			
		하모니카			
		하모니카케이스			
	(E4-50) 건반악기	건반부착취주악기		(E4-00) 기타악기	지휘봉
		아코디언			악보대
		오르간			리듬발생기
		파이프오르간			오르골
		전동오르간			(orgel)
		파아노	F군		
		전기피아노	(F0) 판매용거스름돈용구 등	(F0-10) 거스름돈용구	거스름돈매트
		하프시코드			거스름돈그릇
		피아노내부건습기			거스름돈접시
		피아노용프레임		(F0-0) 사무용품 및 판	한 벌의 서도용구 세트
		피아노용악보			

		세우개			매용	
		오르간용악보			품 등	
		세우개		(F1)	(F1-	음계교습기
		전자피아노용		교습	10)	
		악보세우개		구, 서	교습	
		전자오프간용		화용	구	
		악보세우개		품 등	(F1-	산수학습기

	20)	산수학습용카드				회화용물통
	학습	문자카드				회화용팔레트
	용구	인체해부도				나이프
		교육용모형				페인팅나이프
		도형설명구				회화용이젤
		확률설명기				서화용패널
		어학학습기				회화용캔버스
		카드학습기				화화용캔버스
		테이프학습기				클립
		계산 연습기				고형안료
		곱셈연습기		(F2)	(F2-	한 벌의 필기
		걸이지도		필기	10)	구 세트
		월력부착지도		구, 사	필기	죽 펜
		지 도		무용	용구	철 필
		노선안내지도		구 등		골 필
		월구의부착지				유리펜
		구의				제도용펜
		지구의부착천				펜 대
		구의				펜 촉
		저금통부착지				연 필
		구의				샤프펜슬
		지구의				볼펜부착샤프
		월구의				펜슬
		천구의				볼펜
		지구의용대				샤프펜슬부착
		성좌도				볼펜
		성좌관찰기				볼펜용심
	(F1-	배색반				만년필
	300)	배색표				데스크펜
	서화	색입체용구				만년필촉
	용품	먹물통				마킹펜
		벼 루				필 펜

	연 적
	회화용기름통
	회화용팔레트
	회화용팔레트컵
	세필구
	모 필
	화 필
	크레용
	백 묵
	회화용목탄

	먹
	만년필잉크흡입기
	필기구용캡
	연필색(sack)
	필기용구클립
	연필홀더
	백묵홀더
	크레용홀더
	책받침
	서도용받침
	삭자(삭자)나이프
	지우개판
	지우개
	전동지우개
	타자지우개
	잉크지우개
	지우개홀더
	심갈기기
	연필깎기
	전동연필깎이기
	잉크흡취기
	잉크단지
	잉크스탠드
	잉크병
(F2-20) 사무용인쇄 및 사무용인자	등사판
	사무용인쇄기
	수취인명인쇄기
	등사용줄판
	등사판용잉크롤러
	등사판용잉크
	인재(인재)
	스탬프
	사무용날인기
	회전인판
	일부인
	번호기
	체크라이터
	테이프인자기
	사무용각인기
	크레디트카드용각인기
	핸드라벨러
	핸드라벨러용잉크
	함침(함침)롤러
	핸드라벨러용라벨부착관
	인감소제구
	스탬프대
	인주통
(F2-30) 제도용구	제도용자
	사무용자
	삼각자
	티자
	운형자
	곡척
	분도기
	콤파스
	디바이더
	가막부리
	콤파스용샤프펜슬
	가막부리용잉

	구	반죽주걱 카운터부착스탬프				크주입구 제도기 제도기용조작기	
		제도대 제도판 투사대		(F2-60) 사무용 철구 등		행잉홀더용손잡이 사무용매다는 기구 카드링 사무용봉함구 자루밀봉구 자루입구용훅 사무용철끈 사무용결속구 사무용스테이플러 사무용스테이플러침 사무용철침 표찰기부착침 월력철구 신문철구 종이집게 온도계부착종이집게 펜홀더부착종이집게 사무용클립 사무용물림쇠 광고용물림쇠 포스터용물림쇠 사무용핀 마그넷홀더	
	(F2-40) 사무용 표시구	메모표시기 행선표시기 시간구분표시기 부착월력 탁상월력 매다는 월력 게시판부착흑판 흑 판 전언판 게시판 필기판 흑판용분필가루받이판 흑판용테 흑판용분필박스 분필통 흑판지우개 흑판지우개소제기 통계표시기					
	(F2-50) 사무용 계산구	수동계산기 계산척부착주판 메모용지통부착주판 주 판 주판알 계산척 단위환산기 시차조견표 시차조견반		(F2-70) 사무용 정리 보관구		책꽂이부착사무용품 캐비닛 검색기부착파일링 캐비닛 도서카드함	

| | | 임신일조견반 | | | | 도면보관캐비 | |

		닛				모용지세우	
		맵로커(map locker)				개	
		서류결재함				펜홀도부착용 지꽂이	
		서류정리바구니				메모용지세우개	
		서류정리상자				용지세우개	
		카드정리함				메모대	
		명함정리함				탁상일기대	
		문서궤				데스크매트	
		벼루함				인장매트	
		스폰지통				문진	
		우표적시개				카드꽂이	
		월력부착펜세우개				카드끼우개	
		저금통부착펜꽂이				카드세우개	
		잉크단지부착펜홀더				메뉴세우개	
		펜접시				가격표세우개	
		펜세우개				네임플레이트 부착판	
		펜꽂이				자리표세우개	
		펜홀더				책꽂이	
		부착용펜홀더				북엔드(book-end)	
		부착용펜꽂이				책꽂이칸막이	
		펜홀더용소켓				대본판	
		인주부착인장함				회전장부세우개	
		인주부착인장세우개				독서대	
		인장통				카피스탠드	
		인장세우개				카피홀더	
		인장함				로타리파일	
		사무용클립통				전화번호조견표	
		사무용품함				카드검색기	
		사무용품정리접시				편지꽂이	
		펜꽂이부착메				행깅홀더용프레임	

		사무용품휴대구 주판케이스 스케치백 화 판 그림물감함 휴대용벼루상자 연필깎이부착필통 연필심케이스 필 통 필 함 필통용깔개 필통용자물쇠 필통용연필꽂이 제도용구케이스 제도용자케이스 3각자케이스 명함지갑 정기권지갑 크레디드카드지갑 면허증지갑 휴대용서류대 서류휴대구 사무용통 종이보관구 북밴드 북밴드용버클			리 가 공기 기	롤시트홀더 끄집어내는기구 식품포장용필름절단기 사무용라미네이터 페이퍼슈렛더 카턴오프너 봉투개봉기 페이퍼나이프 접착테이프홀더 접착테이프커터 접착테이프홀더용릴 압핀(화?)빼개 압핀타발구(화?타발구) 개찰집게 코너커터 페이퍼커터 전동페이퍼커터 페이퍼커터용날 사무용펀치 사무용전동펀치 사무용천공기 펀치구멍위치결정구 스템부착기 사무용봉함기		
	(F2-80) 사무용 정	접착테이프제거나이프 유가증권말소기					
		우편용봉함기 포장용자루봉				노트용지 그래프용지	

		함기				방안지
		스테이플러				통계용지
		전동스테이플러				원고용지
		스테이플리무버				컴퓨터용지
		고리결착구				볼링용스코어시트
		사무용정합기(정합기)				골프용스코어시트
		서류제본기				회화용지
	(F2-00) 기타 필기 기구 사무 용구 등	도표독해구(독해구)				붓글씨연습지
		우표꽂이				공작용지
		사무용손가락색				우 표
						봉투봉함장식우표
						편지지
						편지지부착봉투
★(F3) 사무 용지 제품, 인쇄 물 등	(F3-10) 사무 용지 등	흡취지(흡취지)				봉투
		카본지				축의봉투
		등사판원지				포장용염색끈
		전 표				선물포장용표식
		영수증				절첩(절첩)봉투
		수 표				축하카드
		주 권				크리스마스카드
		어 음				생일카드
		상품권				엽 서
		배면견출지				왕복엽서
		목록카드				그림엽서
		파일용가이드				꼬리표
		펀치카드				사진정리카드
		타임카드				슬라이드필름용대지(태지)
		자기카드				대지
		광학독해판				코인정리장용대지
		장부용지				철표지
		사진대지				
		앨범용대지				
		명명용지				

		색종이			노트용표지
		상장용지			앨법용표지
		초크페이퍼			서적용표지
		재봉용형지			북커버
		(형지)			수첩커버
	(F3-20) 기입장 파일 등	메모장			서류용커버
		전표철			노트커버
		편지지철			북케이스
		수표장			수첩케이스
		노 트		(F3-30) 인쇄물	서적
		일기장			신문
		장 부			잡지
		스케치북			안내서
		사인장			책갈피
		수 첩			작업순서표
		주소록			사이즈일람표
		전화번호장			광고전단
		코인정리장			포스터
		수표정리장			팜플렛
		명함홀더			카탈로그
		스크랩북			설명서
		앨범			미용용카드
		견본정리장			헤어스타일카드
		색견본장			가격표
		파 일			품질표시표
		홀 더			번호표
		행잉홀더			신발표
		바인더			우산표
		앨범용경첩			예치표
		일기장용자물쇠			식권표
		견본장용대지			명 찰
		우표수집장용			명찰 케이스

		표 찰		(F4-40) 포장용 포대	포장용포대
		좌석표			포장용망포대
		정기권			
		투표용지			
		승차권			
		쿠 폰		(F4-	포장용접시

		추첨권 제비뽑기권 메뉴 스티커		50) 포장용 용기	포장용깡통 포장용상자 포장용병 포장용통
	(F3-40) 가공지	도자기용전사지 전사지 필름 장식용실 장식지 안경렌즈클리너페이퍼 파마용지 휴지 티슈페이퍼 기름흡수지 백분지			포장용나무통 포장용바구니 포장용파우치 포장용드럼 포장용술통 포장용간장통 포장용약품통 포장용가스용기 포장용병운반상자 포장용깡통의꼭지쇠 포장용깡통의뚜껑 식품포장용용기 화장품포장용용기 포장용튜브 포장용튜브압출구 포장용앰플 포장용가스용기의 덮개 병캐리어 포장용가스용
★(F4) 포장지, 포장용기 등	(F4-10) 포장지등	포장지 포장용플라스틱필름 포장용판지 포장용골판지 포장용발			
	(F4-20) 표딱지	표딱지 포장용봉함지 포장용팻말			
	(F4-30) 포장용 대지	포장용대지(태지) 포장용포대의 입구봉함지			

		기의 보호대		구	광고판
	(F4-90) 포장지 포장용기 등의부	포장용테 포장용테이프 포장용중간칸막이 포장용병의연결구 포장용와이셔			광고등 간 판 광고탑 버스정류장표시탑 문 패 명 패

	품 및 부속품	츠 칼라테 포장용두루마리심 포장용용기의 뚜껑 병마개 포장용용기의 마개 포장용용기의 주출마개 포장용깡통의 꼭지쇠 포장용깡통의 뚜껑 포장용완충재 포장용결속재 포장용들손잡이 포장용장식구 포장용리본			게시판 정찰표시판 자동차용식별표시등 애드벌룬 광고용에어완충기 기(기) 수 기 줄 기 삼각기 광고기용대 표시기용지주 간판용프레임 깃 대 명찰케이스 간판용프레임 진열대용프레임	
(F5) 광고용구 표시용구 및 상품 진열 용	(F5-10) 광고용구 및 표시용구	도로표지 광고기 전광표시판 득점게시판 엘리베이터층수표시기 주차표시관 비상구표시기		(F5-20) 상품진열용구 등	매장대 식품진열접시 자동차진열대 이동판매대 신문배포대 탁상상품진열대 상품진열대 진열대연결구 상품진열선반	
		상품진열바구니 진열용넥타이걸이 진열용걸이 상품진열기 마네킹인형 가발진열대 식품진열용칸막이판		(G1-30) 잭 등 (G1-4)	자동차정비용리프트 마그네틱리프트 주차기 동력잭 수동잭 잭핸들 로프웨이용곤돌라	

		상품진열케이스	색도용 반기	스키리프트용 반기	
		냉장용쇼케이스			
		상품진열케이스용지주	(G1-50) 운반용 용기	생선상자	
		상품진열케이스용테		수송용팔레트	
G군				수송용팔레트 횡목	
(G1) 운반 승강 또는 화물 취급 용 기계 기구	(G1-10) 엘리베이터 및 컨베이어	벨트컨베이어		수송용팔레트 테	
		스크루컨베이어		컨테이너	
		엘리베이터		병컨테이너	
		에스컬레이터		수송용탱크	
		에스컬레이터 용데크판		수송용봄베	
		컨베이어용캐리어롤러		수송용봄베의 모개(帽蓋)	
		컨베이어용트롤러		운반용망	
		버킷엘리베이터		운반용 좌대	
				컨테이너용패널테	
	(G1-20) 권양기등	윈치(winch)	(G1-60) 운반용 레일	운반기계용레일	
		호이스트		철도차량용레일	
		지브크레인		승강기용레일	
		천정크레인		컨베이어레일	
		체인블록		침목정(침목정)	

		승강기용레일고리	골프용승용자동차		
	(G1-00) 기타 운반 승강 또는 화물 취급 용기 계기	어깨걸이밴드	경주용자동차		
		차량용건널판	트럭		
		자동삽	덤프트럭		
		활 차	견인자동차		
		짐조이개구	소방자동차		
		와이어용권선기	기중기차		
		크레인달아올리는 훅	청소차		
		판상체달아올	분뇨차		
			공작자동차		
			트랙터		

	구	리는 클램프		농업용트랙터
(G2) 차 량	(G2-10) 궤도 주행 차량	궤도주행용골프용구운반차		포크리프트카
		전동차		설상자동차
		기관차		제설차
		전기기관차		응급차
		디젤기관차		자동차용차체커버
		여객차		자동차용차륜멈추개
		화물차		자동차용험로탈출기
		제설차량		자동차용햇빛가리개
		팬터그래프(Pantograph)		자동차용자물쇠
		철도차량용브레이크슈		자동차용앞범퍼
		철도차량용대차(대차)		자동차용뒷범퍼
		철도레일용체결구		자동차용범퍼보호기
		모노레일차량		자동차용창유리
	(G2-20) 자동차	승용자동차		자동차용라디에타그릴
		승합자동차		자동차용짐받이
		버스		자동차용스티어링휠
		고카트(go-cart)		자동차용시프트레버
				자동차용시프트레버손잡이
				자동차용인스투르먼트패널
				자동차용에어컨디셔너표
				블박스
				자동차용몰딩재
				자동차용스티어링휠 커버
				자동차용 컵받침대
				자동차용 스티어링휠 보조 손잡이
			(G2-30) 오토바이	오토바이
				3륜자동차
				모터스쿠터
				오토바이용완

		시판			등	충기	
		자동차용윈도우와이퍼				오토바이용차체커버	
		자동차용세척수분사노즐				오토바이용방풍구	
		자동차용문손잡이				오토바이용핸들	
		자동차용흙받이				오토바이용브레이크레버	
		자동차용번호판부착테				오토바이용핸들그립	
		자동차용에어스포일러				오토바이용핸들커버	
		자동차용콘솔				오토바이용범퍼	
		자동차용안전벨트				오토바이용림	
		자동차용아암레스트				오토바이용안장	
		자동차용콘솔박스뚜껑				오토바이용시트	
		자동차용도어트림				오토바이용화물상자	
		자동차용글로바구니				자전거용핸들커버	
		오토바이용짐받이				자전거용안장	
		오토바이용연료탱크				자전거용안장커버	
		오토바이용공구상자				자전거용짐바구니	
		오토바이용흙받이				자전거용화물상자	
		오토바이용자물쇠				자전거용어린이보조석	
		오토바이용등받이				자전거용변속기	
(G2-40) 자전	자전거 3륜자전거 4륜자전거					자전거용기어크랭크 자전거용페달 자전거용브레	

	거	자전거용우산 세우개 자전거용발전 기 자전거프레임 자전거용앞면 호크 자전거용고스 타허브(바퀴 통) 자전거용드레 스가드 자전거용흙받이 자전거용체인 케이스 자전거용스탠드 자전거용핸들 자전거용핸들 기둥 자전거용핸들 그립			이크슈 자전거용변속 레버 자전거용변속 레버박스 자전거용브레 이크레버 자전거용캐리 퍼브레이크 케이블 자전거림 자전거튜브 자전거 타이 어 자전거용자물 쇠 자전거용자물 쇠연결구 자전거용바람 막이	
				(G2-	운반차	

	50) 운반차	화물운반차 유모차 쇼핑용밀차 골프용구운반 차 손수레 지게차				자동차용휠링 오토바이용백 미러 오토바이용소 음기 오토바이용타 이어 타이어수리패 치 자전거경음기 타이어밸브 유모차용차륜
	(G2-60) 트레일러	트레일러 캠핑트레일러 차량용탑재가 옥				
	(G2-900) 차량 부품 및 부속품	타이어체인 자전거용방향 지시기 자동차용메모판 자동차용백미러 자동차용휀더 미러		(G3) 선박	(G3-1) 어선	어선
					(G3-20) 특수	모터보트 경주용(경주 용)보트

		자동차용사이드미러 자동차용반사기 자동차용경음기 자동차용브레이크슈 자동차용소음기 자동차용방향지시기 자동차용브레이크 디스크 자동차용타이어 자동차용림 자동차용휠캡 자동차용허브캡			용도선(선)	요 트 요트용선체 쌍동범선(쌍동범선) 카누 노젓는보트 고무보트
					(G3-3) 유희용 보트	발젓기보트 수상스쿠터
					(G3-90) 선박부품 및 부속품	노 노걸이쇠 요트용돛대 선박용조종훈련기 선외기(선외기)

		선박용추진기 조타기 선박자동조타기 선박용닻 선박용방현재(방현재)		지기 등	등	
	(G3-0) 기타 선박	객선 화물선 원유탱커 구명정 소방선 순시선			(H0-20) 탐지기등	어군탐지기 수중음파탐지기 레일용탐상기(탐상기) 초음파탐상기 금속탐지기 전자현미경
					(H0-30) 광파이버용소형접속기 등	광파이버용어댑터 광파이버용커넥터플러그 광파이버용광전교환커넥터
(G4) 항공기	(G4-1) 항공기 및 기체 구성품	비행기 헬리콥터 글라이더 비행선 기구(기구)			(H0-0) 전기	한 벌의 오디오 세트 한 벌의 개인

	(G4-2) 항공기용장비품 및 항공용 지상설비용품	낙하산 항공기용조종훈련기		전자기계기구 및 통신기계기구 등	용컴퓨터 세트
	(G4-0) 기타 항공기	인공위성 로켓 우주선	(H1) 기본적 전기 소자	(H1-10) 전선 전기케이블 등	도전(도전)필름 도파관(도파관) 도파관접속구 광파이버케이블 나전선 피복전선 절연전선
H군					
(H0) 방사선 발생기 및 탐	(H0-10) 방사선 발생기	엑스선관 초음파발생기 레이저발생기			

	전기케이블		전기접촉자
	전선용표지		전화회선용단자블록
	브스바		터미널
	바스닥트		단자판
	배선궤도		조인트박스
	트롤리바스닥트		커넥터
	트롤리선		커넥터하우징
	배전궤도접속기		차입플러그
	배전궤도급전단자		플러그받이
	배전궤도단말캡		차입탭
			콘센트
			마루용콘센트
			플러그
(H1-20) 전기절열기구	애 자		잭
	현수애자		고주파동축커넥터
	옥내지지애자		인쇄배선판용커넥터
	애자금속구		전구용소켓
	전주완금용방호구		점등관용소켓
	전선방호커버		파일럿램프용
	커넥터커버		

	절연캡	소켓
	절연부싱(bushing)	형광램프용소켓
	커넥터커버용 클립	전자관용소켓
		브라운관소켓
		진공관소켓
(H1-30) 전기접속기	전기접속슬립	릴레이소켓
	압축슬립	트랜지스터소켓
	전기접속용단말캡	전기접속기
	전선접속기	트롤리집전자
	접지봉	배전궤도용플러그
	접지판	배전궤도용콘센트
	압착단자	커넥터보지케이스
	전기접속단자	
	전기접속클립	

(H1-40) 콘덴서 저항기 전자회로 코일 등	전력용콘덴서	옥내전화용개폐기
	고정콘덴서	전동기용개폐기
	전해콘덴서	상자개폐기
	가변콘덴서	나이프스위치
	트리마콘덴서	족답(족답)스위치
	콘덴서용전극	재봉기용콘트롤러
	전력용권선저항기	악기용콘트롤러
	고정저항기	타임스위치
	가변저항기	타임스위치부착콘센트
	스위치부착가변저항기	누름버튼개폐기
	고주파코일	신호용누름버튼
	수정발진기	비상용누름버튼
	수정진동자	전자개폐기
	노파기	시소스위치
	감쇄기	텀블러스위치
(H1-50) 개폐기 및 차단기	기중(기중)개폐기	풀스위치
	전력개폐기	중간스위치
	기름개폐기	팬던트스위치
	가스개폐기	
	자기개폐기	
	진공개폐기	

		기중차단기			기도(기도)개폐기
		기름차단기			플렉스스위치
		가스차단기			다방향스위치
		자기차단기			누름버튼스위치
		전력용차단기			키보드스위치
		진공차단기			푸시스위치
		주상개폐기(주상개폐기)			레버스위치
		단로기(단로기)			토글스위치
		퓨즈			셀렉터스위치
		컷아웃스위치			감스위치
		배선용차단기			드럼스위치
		누전차단기			로터리스위치

		슬라이드스위치		계전기 등	온도계전기
		트리거스위치			프리셋카운터
		디지탈스위치			압력계전기
		리드스위치			무접점릴레이
		수온스위치			리드릴레이
		스위치용자석			전자접촉기
		마이크로스위치		(H1-70) 전자 회로 용구 성체	회로용소자
		근접스위치			반도체소자
		리미트스위치			다이오드
		광전스위치			사이리스터
		광전검출기			지연선소자
		광전스위치용수광기			광전변환소자
		초음파스위치			압력소자
		초음파스위치용수파기			전자기기표시판
		전파스위치			음량계용표시판
		레벨스위치			시각표시판
		플로트스위치			표시관
		레벨검출기			발광다이오드
		압력스위치			인쇄회로기판
		압력검출기			저항기용기판
		온도스위치			진공관
		온도검출기			촬상관
					광전배증관(광전배증관

		화재용감지기 가스누출감지기 연기감지기 자동점멸기 휴즈링크 온도퓨즈 퓨즈홀더 휴즈베이스				)	
						마크네트론	
						방전관	
						편향요크	
						아노드캡	
						소자용외위기(외위기)	
						리드프레임	
	(H1-60)	보호계전기 한시계전기			(H1-80)	습전지 연료전지	

	전지	공기전지 건전지 수은전지 축전지 태양전지 건전지용케이스 축전지용케이스			(H2-20) 전력용변환기 및 전원용변환기	전동기용인버터(inverter) 전원용주파수변환기 전원용정류기 교직류변환기 충전기 건전지용충전기 전력용변압기 유도전압조정기 자동전압조정기 발전기용전압조정기 계기용변압기 변류기 변압변류기 방전전등용안정기 직류안정화전원기 교류직류정전압기 고주파정전압기	
	(H1-00) 기타 기본적 전기소자	전자석 솔레노이드(solenoid) 전기기기용방열기 전자기기용방열판 반도체소자용방열판 반도체용 냉각기 전자기기용 쿨링팬					
(H2) 회전기계, 배전 또는	(H2-10) 회전기계	직류발전기 교류발전기 증기터빈발전기 엔진발전기 직류전동기			(H2-	피뢰기	

제어기계기구 등		교류전동기 동기전동기(동기전동기) 스텝모터 유도전동기 브레이크모터 조상기(조상기) 전동발전기		30) 피뢰기 및 정전제거기	전화용보안기 리액터 이상전압흡수기 전자파발생방지구 정전제거기(정전제거기) 대전제거기(대전제거기)
(H2-40) 전선설치구 또는 전기케이블설치구		전선관용케이블색인구 보선(보선)롤러 케이블드럼 케이블랙 케이블라더트레이 배선용보호닥트 접속구 전선관접속구 스위치박스 아웃렛박스 배선용박스고정금속구 배선용박스커버 스위치박스커버 플래시플레이트 배선기구용방적(방적)플레이트 전선관터미널캡 전선관용엔트란스캡			전선인입용애자 케이블걸이 송전선용스페이서 송전선용단파 전주용묶음쇠 전선결속구 코드자재기(자재기) 전선결속밴드
			(H2-50) 배전반 제어반 등		주택용배전지주 배전반 수전반 변전반 배전반 분전함 적산전력계용수납함 전화단자함 텔레비전공청기계수납함 집합계기반박스 배전함부착판 배전반용자물쇠 전화보안기함 배전반용경첩

		시링로즈(ceil-ing rose)		(H2-60) 제어 조작 또는 감시 용 기	공작기계용수치제어기	
		전선착지클립			교통신호기용 제어기	
		자동차용클립			프로세스용제어탁	
		전선착지못			의료용엑스선	
		트롤리닥트용 걸이			전력계기집합판	
					냉장고용이상감지경보기	
기	촬영기용조작기					
	프로그램설정제어기					
	시퀀스콘트롤러(sequence controller)		(H3) 통신 기계 기구	(H3-10) 통신 전송 로용 기구	노파기	
					감쇠기	
					아이솔레이터	
					방향성결합기	
	엘리베이터용조작기				안테나	
					혼합기	
	자동차용원격조정기				분파기	
					텔레비전신호용분배기	
	원격자동제어기				안테나용분기기	
	호출용원격조정기				안테나용정합기	
	배전반용계측제어기				텔레비젼공청기	
	가정용자동화기기용원격조정기				안테나소자	
					안테나소자부착구	
	텔레비전수상기용원격조정기			(H3-20) 통신 장치 용기 본적 기기	발진기(발진기)	
					국부발진기	
	교환신호기용누름버튼스위치				발진기(발진기)	
					통신용증폭기	
	에어콘디셔너용원격조정기				변조기	
					복조기	
					변복조기	
	전기모포용원격조정기				검파기	
					주파수변환기	

		조광기(조광기)				데이터통신용 음향결합기
		환풍기용원격 조정기			(H3-30) 전화	휴대전화기
		모형용조종기				전화기
						전화기본체
	기 등	공중전화기			교환기	전화교환기용 감독대
		차량용전화기				전화교환기용 접수대
		차량용전화기 본체				전화교환기용 표시반
		전화기용번호 표시기				전화교환기용 매전(埋栓)
		전화기용송수화기			(H3-50) 전신용 기기	전신기
		전화기용통신 도수계				텔레프린터
		전화기대				텔렉스
		전화기용커버				통신중계교환기
		전화기용송수화기커버				통신기용전건(전건)
		전화기용방향기				팩시밀리
		전화기용소독기				사진전송기
		전화기용중계기				팩시밀리송신기
		전화기용사용 상태표시기				팩시밀리수신기
		전화기용증폭기				팩시밀리조작기
		전화기용스피커				팩시밀리용상(상)
		전화호출기				팩시밀리용급지기
		전화자동다이얼발신기			(H3-60) 무선통신기기	마이크로파응답기
		전화기용응답기록기				마이크로파송수파기
		인터폰				휴대전령용송신기
		인터폰용조작기				휴대전령용수

	(H3-40) 전화	전화교환기 전화교환기용 중계대					신기 무선통신기 무선통신기용	
		송신기 무선통신기용 수신기 차량용무선통신기 휴대용무선통신기 무선통신기용 중계기 무선통신기용 조작기 로란(loran) 수신기 오메가수신기 방향탐지기 방향탐지기용 지시기					신기용 복조기	
	(H3-70) 방송용 수신기기	라디오수신기 휴대용라디오 수신기 시계부착라디오수신기 라디오용튜너 증폭기부착라디오용튜너 차량용라디오 튜너 테이프플레이어용라디오 튜너 라디오수신기용케이스 텔레비젼튜너 텔레비젼음성 튜너 텔레비젼음성		(H4) 음성 주파 및 영상주파기계기구	(H4-10) 음향기기	마이크로폰 원격조정기부착마이크로폰 집음기 마이크로폰스탠드 마이크로폰용 방풍구(방풍구) 전령(전령) 버 저 차 임 사이렌 전령용케이스 스피커박스부착텔레비젼 수상기용대 스피커박스 차량용스피커 박스 스피커 확성기 스피커용진동판 스피커용폰 스피커용패널 헤드폰 마이크로폰부착헤드폰 이어폰 앰프 확성증폭기 음향증폭기케	

		다중방송수				이스	
		그래픽이퀄라이저 에코부가기(부가기) 음성조정용필터 음상형성기 마이크로폰믹서 음질조정기 음성조정탁				텔레비젼카메라용선회대 텔레비젼카메라용뷰파인더 영상조정기 영상조정탁 영상특수효과발생기 비디오테이프레코더용편집기	
	(H4-20) 전축 및 스테레오 재생장치	전 축 라디오수신기 부착전축 라디오수신기 및 녹음기부착전축 전자오르간부착전축 라디오수신기 및 녹음기부착스테레오 전축 데 크 녹음기 및 증폭기부착레코드플레이어 뮤직박스 주크박스				영상신호보정기 색신호조정기 모니터텔레비젼수상기 컴퓨터용데이터표시기 컴퓨터용영상표시기 텔레비젼수상기 투사형텔레비젼수상기 텔레비젼투사기 레코드플레이어부착텔레비젼수상기 스테레오부착텔레비젼수상기 프린터부착텔레비젼수상기	
	(H4-30) 영상기기	한 벌의 텔레비젼수상기와 받침대 텔레비젼카메라 비디오카메라 텔레시네카메라				텔레비젼전화기 라디오수신기 부착텔레비젼수상기 비디오테이프	

		레코드부착 텔레비젼수상기 라이오수신기 및 테이프레코더부착텔레비젼수상기 텔레비젼수상기용확대렌즈 텔레비젼수상기용커버				어용톤암(tone arm) 헤드셀 전축바늘 레코드플레이어용카트리지 자기테이프복제기 카세트테이프레코더 시계 및 라디오수신기부착테이프레코더	
	(H4-40) 음성, 영상 기록 재생 기기	자기테이프 자기시트 자기디스크 레코드 레코드수납구 테이프레코드용테이프매거진 테이프플레이어용카트리지 테이프매거진수납케이스 테이프리일수납케이스 레코드플레이어 레코드플레이어용캐비닛 전축용캐비닛 턴테이블 레코드플레이어용픽업 레코드플레이				라디오수신기부착테이프레코더 튜너부착테이프레코더 테이프플레이어 카오디오 라디오수신기부착테이프플레이어 튜너부착테이프플레이어 차량용튜너부착테이프플레이어 테이프레코더용부착구 테이프플레이어용부착구 시트레코더 시트플레이어	
		디지탈오디오디스크플레				영상주파	

		이어			기계 기구	
		콤펙트디스크 플레이어	(H5) 전자 계산 기 등	(H5-1) 전자 계산 기	전자계산기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콤펙트카세트 데크				
		디지탈카세트 데크				
		비디오디스크 레코드		(H5-2) 컴퓨터용 중앙 처리 기	컴퓨터용연산 제어기	
		정지화면디스 크기록재생 기				
		비디오디스크 플레이어				
		광디스크부착 카세트테이 프플레이어		(H5-30) 커퓨터 보조 기억기	자기드럼기억 기	
		비디오테이프 레코더			자기디스크기 억기	
		텔레비젼튜너 부착비디오 테이프레코 더			자기테이프기 억기	
		레코드클리너		(H5-40) 주변 기기 및 범용 단 말기	데이터입력기 데이터입력기 용키보드	
		자기테이프소 자기(소자 기)			컴퓨터용입출 력타이프라 이터	
		자기헤드소자 기			컴퓨터용문자 표시기	
		테이프레코더 용자기헤드			자기카드해독 기	
	(H4-0) 기타 음성 ·	음성번역기			컴퓨터용지카 드천공기	
					컴퓨터용지카 드해독기	
					컴퓨터용음성	
		응답기			기타 전자 계산 기 등	정기권발행기
		종이테이프해 독기				집단교육용분 석기
		종이테이프천				

		공기	J군			
		컴퓨터용프린터	(J0) 공업 세정기 등	(J0-1) 공업용 세정기	안경세정기	
		컴퓨터용마이크로필름출력기			세차기	
		컴퓨터용라인프린터			장동차매트세정기	
		데이터통신용복조기			세척용 브러쉬	
		엑스와이플롯터	(J1) 계량기, 측정기 계기구 및 측량기계 기구	(J1-10) 길이계 등	줄 자	
		자동제도기			줄자테이프	
	(H5-5) 오프라인 기기	자기테이프변환기			회전길이계	
		데이터작성기			지도용회전거리계	
	(H5-6) 카드검색기	카드검색기			버어니어캘리퍼스	
		카드분류기			마이크로미터	
	(H5-90) 전자계산기부품 및 부속품	컴퓨터본체케이스			내측마이크로미터	
		라이트펜			외측마이크로미터	
		잉크제트프린터용카트리지			전자마이크로미터	
		컴퓨터용마우스			전기마이크로미터	
					지시마이크로미터	
					미크론마이크로미터	
					다이얼게이지	
					하이트게이지	
					입체물길이측정기	
	(H5-0)	은행용창구기장단말기			각도측정기	
					각도게이지	

		분도기			계량컵	
		높이기준기			계량스푼	
		블록게이지	(J1-30) 회전계 유		회전계	
		링게이지			속도계	
		한계나사게이지			자동차용속도계	
					택시미터	

	전기수준기		량계	자전거용속도계	
	측정용투영기		등	자전거용주행	
(J1-	중량계			거리계	
20)	저울			자동차용주행	
중량	전자저울			거리계	
계 온	대저울			자동차용회전	
도계	차량중량측정			속도계	
체적	기			자동차운행	
계 등	헬스미터			기록계	
	체중계			유량계	
	중량계용중량			유속계	
	검출대			유량검시기	
	분동(분동)			액면계	
	중량계용접시			액위지시계	
	온도계			레벨계	
	습도계			수도미터	
	온습도계			수량미터	
	온도표시실			연료가스미터	
	공업용온도측			가솔린양기	
	정계			(양기)	
	온도지시시트			진공계	
	체온계			압력계	
	전자체온계			타이어압력게	
	체온예비검지			이지	
	실			광도계	
	열량계			광속계	
	되			조도계	
	면적계			밀도계	
	말			비중계	
	홉			농도계	
	작			점도계	

	점도측정구			자기기록계(
	수분계			자기기록계)
	탁도계			측정용기록계
(J1-	전류계			오실로그래프
40)	전압계			오실로스코프
전기	전기저항계			프로세스용기
측정	전력계			록계
기	전기회로계			프로세스용지

		음량계			시기록계
		전위차계		(J1-50) 측정용 시험기기, 측정용 분석기기, 방사선계기 등	반도체소자용 결함검사기
		프로세스용지시계			반도체용실리콘결정검사기
		위상측정기			논리회로검사기
		계측기용증폭기			전화교환기용 시험기
		계측기용신호발생기			탄성시험기
		계측기용변환기			인장(인장)강도시험기
		계측기용발진기			왜도(왜도)시험기
		계측기용표준기			왜곡시험기
		계측기용연산기			만능시험기
		프로세스제어용연산기			압축강도시험기
		프로세스제어용적산기			레미콘시료채취용몰드
		프로세스제어용경보기			수질검사기
		프로세스제어용설정기			분광광도계
		프로세스용차압전송기			적외선가스분석계
		디지털 인디케이터			원자흡광분석기
					광전비색계
					광전비탁계

		광전광도계			측거경위의(측거경위의)
		광전분광광도계			6분의(분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프			8분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수준의
		피에이치계			방위(방위)자석
		전기적정(적정)분석계			자기콤파스
					나침판
					패철

		알칼리도계
		잔류염소계
		이온농도계
		유화수소계
		소음계
		진동계
		배기가스농도계
		아황산가스농도계
		일산화탄소농도계
		가스농도계
		방사선량계
		방사선측정기
		가이거계수기
	(J1-60) 측량기기 및 기상관측 용계기	측량용함척
		측량용수준계
		수평기
		수준기(수준기)
		경사계
		측량용타깃
		측량용폴기
		측량용삼각대
		전경의
		경위의
		기압계
		풍속계
		풍향계
		우량계
	(J1-90) 계량기 측정기계 기구 및 측량기계 기구 부품 및 부속품	계기용지시침
		계기용기록펜
		중량계용눈금판
		회로계용프로브
		계기용부착대
		계기용지지대
		테스트용검침봉
		측정용지그
		테스트용지그
		실험용지그
		측정용게이지
		보어측정구
	(J1-00) 기타 계량기 측정기계 기구 및 측량기계 기구	주차기록기
		두께계
		공업용폭계
		불쾌지수계
		적산도수계
		보수계(보수계)
		벨 타이머 등
(J2) 시계	(J2-10) 모래시계 등	모래시계
		해시계
	(J2-20) 휴대시계	회중시계
		목걸이시계
		반지시계
		여행용시계
	(J2-90) 시계 부품 및 부속품	용두(용두)
		시계용월력
		시계용문자반
		시계용전면판
		시계용유리
		시계침
		시계기계체
		전자시계용무브먼트

		장식용시계
	(J2-30) 손목시계	손목시계 손목시계본체 손목시계용케이스 시계줄 시계줄용 소자
	(J2-40) 탁상시계	탁상시계 오디오타이머 탁상시계용케이스
	(J2-50) 벽시계	벽시계 괘종시계 벽시계용케이스 벽시계용추 벽시계용진자대
	(J2-6) 스톱워치	스톱워치 경기용시계
	(J2-7)	타이머
	(J2-0) 기타 시계	천문시계 영상시계 순찰시계 자동차용시계
(J3) 광학기계기구	(J3-10) 망원경 등	망원경 천체망원경 쌍안경 오페라글라스 현미경 확대경 쌍안경렌즈 망원경렌즈
	(J3-20) 카메라	카메라 현미경카메라 안저(안저)카메라 2안(이안)리플렉스카메라 카메라본체 엑스선카메라 항공카메라 스튜디오카메라 마이크로카메

		라 1안(일안)리플렉스카메라 카메라용파인더
	(J3-30) 카메라 용품	카메라렌즈 시네마카메라용렌즈 확대경용렌즈 카메라용필터 카메라용후드 카메라용렌즈캡
		필름카트릿지 필름매거진 카메라용케이스 카메라용 3각케이스 카메라용노출계케이스 카메라용필터케이스 일렉트로닉플래시용케이스 사진기용가방

		카메라용3각대				사진건판케이스	
		카메라용운대(운태)			(J3-40) 사진용 처리기계기구	사진용건조기	
		일렉트로닉플래시용3각대				현상탱크	
		카메라용발광기				현상용배트	
		일렉트로닉플래시				사진인화지자동공급기	
		카메라용그립				사진인화지용절단기	
		카메라용모터드라이브				현상액자동보충기	
		카메라용노출계				사진용프린터	
		카메라용거리계				사진용현상기	
		카메라용셀프타이머				사진용확대기	
		카메라용필름			(J3-50) 투영기	사진용뷰어	
		파트로네(patrone)				환등기	
						실물 투영기	
						슬라이드영사기	
						오버헤드프로젝트	
					(J3-6)	마이크로필름용리더	

	마이크로필름용 기계기구	마이크로필름용리더프린터				복사기용급지기	
						복사기용켈렉터	
						토너카트리지	
						전자복사기	
						기억소자복사기	
	(J3-70) 영화용 기계기구	영화필름편집기			(J4-30) 시간기록기	타임스탬프	
		영화영사스크린				타임레코더	
		영화영사릴					
		35미리영화촬영기					
		16미리영화촬영기			(J4-40) 화폐	동전선별기	
		35미리영화영				거스름돈인출기	

		사기 16미리영화영사기			증권처리기계	지폐감별기 주화선별기 수표인식기 동전계수기 지폐계수기 동전포장기 지폐포장기
(J4) 사무용 기계 기구	(J4-10) 타이프 라이터	점자타이프라이터 한글타이프라이터 영문타이프라이터 타이프라이터 용활자수납 케이스 타이프라이터 용리본 타이프라이터 용활자			(J4-50) 탁상계산기	전동계산기 탁상전자계산기 라디오수신기 부착탁상전자계산기 프린터부착탁상계산기
	(J4-20) 복사기	디아조복사기 복사기 스크립터 레이저빔프린터			(J4-60) 금전등록기	금전등록기 회계기 금전등록기용 프린터
				(J5)	(J5-100) 자동판매기	잡지자동판매기
자동판매기 및 자료서비스기	100) 자동판매기	냉동식품자동판매기 껌자동판매기 가스정량자동판매기 핫도그자동판매기 세정수자동판매기 우표자동판매기 식권자동판매기 승차권자동판매기 입장권자동판매기			(J5-30) 화폐서비스 기기	회전기 자동정산기 현금자동예입기 현금자동지불기 부스 프레임
					(J5-40) 자동개찰기	자동개찰기 자동개찰기용 커버
					(J5-90) 자동판매기 등	자동판매기용 화폐판별기 자동판매기용 화폐계수기
					(J5-	자동발매기

		추첨권자동판매기 복권자동판매기 음료자동판매기 커피자동판매기 담배자동판매기 콘돔자동판매기 전자오락기용 동전투입구
	(J5-20) 자동대출기	구두자동대출기 우산자동대출기
		00) 기타의 자동판매기 및 서비스기	버스단말기 수표압인기
	(J6) 보안기계기구 등	(J6-10) 작업용 보안기구	방호면 방진마스크 작업용호흡보호구 작업용냉각의 엑스선방호의 용접용안경 추락방지기 작업용안전혹 방연마스크 작업용보안경
		작업용안면보호구
	(J6-20) 구명기구	구명동의 구명부대 완강기(완강기) 구명용뗏목
	(J6-30) 방재기구	방범경보기 가스누출경보기 소화기 소화전 소방호스 소방호스용노즐 방재용수신반 화재표시기 화재경보설비 용수신반 소방전표시판
		기 가드레일용안전표시판 자동발광경보기 경광등케이스 도료용반사경 회전경보등 부표등
	(J6-5) 공해방지기기	오일펜스 기름회수기
	(J6-6) 무기	신 관 뇌 관 지 뢰 탄 창 노리쇠 권 총

		소화전표시판			기관포
		소화호스용상자			대 포
		소화기수납상자			소 총
		소화기받침대			소총망원경
	(J6-40) 교통안전용기	정지표시기		(J6-00) 기타의 보안기계기구 등	수 갑
		공사표시기			호신봉
		발연통(발연통)			가스분사기
		교통신호기			다연발발사대
		교통유도봉	(J7) 의료용 기계기구	(J7-10) 의료용품 등	약제도포기
		해상구조신호등			무좀예방구
		자동차용고장표시구			인공항문용벨트
		자동차용차단			온습포
		흡음구(흡음구)			기
		경구흡입기			지압용구슬
		지압반지			환자운반차
		관장용용기			주사기케이스
		자석반지			수지침케이스
		고형약품			의료용운반차
		가 제			의약품정리선반
		포 대		(J7-30) 진단용 기계기구	내시경
		삼각건			혈액검사기
		안 대			분뇨검사기
		반창고			골반계측기
		탈지면			난시측정기
		붕 대			내시경마우스피스
		밴 드			인체진맥기
		파 스			청진기
		눈보호안대			타진기
		물베개			소식자(소식자)
		얼음주머니			설압자(설압자)
		얼음주머니걸이			
		찜질용백			
		보온(보냉)대			

	안마기
	지압기
	지압운동구
	등긁이
	안면마사지기
	면 봉
	안마의자
	벨트마사지기
(J7-20) 진료 시설 용 기계기구	들 것
	보육기
	양치질액추출기
	진찰용 침대
	수술대
	의료용소독용
	시력표시용걸이대
	색맹검사기
	검안용안경
	마이크로시력교정기
	신장계
	좌고계
	골반계
	요도구계측기
	의료용엑스선촬영대
	의료용엑스선카메라
	의료용초음파촬영기
(J7-40) 수술 및 처치용 기계기구	세척기용걸이대
	점적제어기(점적제어기)
	수술용칼
	수술용핀셋
	수술용가위
	위장봉합기
	질경
	방광경
	심전도측정용유도전극
	혈압계
	혈압계수납용용기
	혈압계용송배기구
	편평족검진기
	악력계
	배근력계
	폐활량계
	시력계
	시야계
	의료용흡입기
	마취기
	인공심폐기
	인공투석기(투석기)
	인공투석용투석케이스
	방광세정기
	항문세정기
	수술용세척구
(J7-50) 이학적 요법 기계기구	찜질기
	뜸질기
	쑥뜸기
	초음파치료기
	고주파치료기
	온구기(온구기)
	열압치료기
	전열치료기
	자기치료기
	자기부착파스
	침구침
	자기부착반창고

		수술용바늘				전자자장발생기	
		석고절단기				저주파치료기	
		투관계(투관계)				저주파치료기용도자(도자)	
		골수천자침				수은등치료기	
		주사침				적외선치료기	
		주사기				자외선치료기	
		채혈기				레이저치료기	
		수혈기				증기치료욕기	
		주사통				물치료욕기	
		침관				전열치료욕기	
		산소흡입기					
		의료용분무기					

		물치료용욕조		산업제지기용기계기구	제지기	초지기호일플레이트	
		의료용이온발생기			(K0-20) 인쇄기 및 제판기	오프셋인쇄기	
		의료용오존발생기				철판인쇄기	
	(J7-60) 치과용 기계기구	치과용주조기				요판인쇄기	
		치과용치료대				공판인쇄기	
		치과용주사통				실크스크린인쇄기	
		치과용핸드피스				단보르지용인쇄기	
		치아청소구				인쇄용원판정리선반	
		치아표본				판동(판동)	
		치아성형틀				사진식자기	
		치석제거구				사진식자기용문자반	
		치과용유니트				사진식자기용인화지	
	(J7-70) 기능회복용 기계기구 및 갱생용 기계기구	보행보조기				수납매거진	
		목 발				제본기	
		상하지훈련구의 수				제본철기	
		의 족				제본용제단기	
		척추교정기				제본용머신	
		척추보호용조끼				제본용천공기	
		허리보호용밴드			(K0-30)	도장용솔	
		휠체어				도장용롤러	

		전동휠체어
	(J7-00) 기타의 의료용 기계기구	약제조기 성력증진기 호흡보조기 전자식학습용 긴장완화기 투약기
K군		
(K0) 기타	(K0-1)	초지기(초지기)
	도장용기계기구	스프레이부스 도장용정반(정반) 벽도배기 도장용스프레이건
	(K0-40) 공업용로 및 공업용요	제철용용해로 금속판코일소둔로(소둔로) 도예용전기요 칠보소용요(칠보소용요) 인쇄용지건조기 적외선건조기 자외선건조기 소둔로용내벽 소둔로용내벽부착앵커 기와소성로(와소성로)용 간격유지구
	(K-50) 폐기물처리 기계 등	스크랩프레스 차량스크랩프레스 설철부수는기계 깡통부수는기계 왕겨부뚜막 폐기물소각로 진개소각기(진개소각기) 쓰레기소각기 폐기물소각로용로스톨 쓰레기소각로용로스톨
	포기	기 필름포장기 통조림충전기(충전기) 뚜껑부착기 병충전기 깡통뚜껑부착기 약제분포기 곤포용(곤포용)결속기 지엽류 결속기(지엽류 결속기)
	(K0-00) 기타 산업용 기계기구	구두제조기 자동차타이어제조기 담배제조기 자동나사체결기용비스착크 기계용부품공급기 기계조립용나사송급기 산업용로봇 도장용로봇 기계조립로봇

		쓰레기소각로					용암	
		용배연정화					제품자동인출	
		자(배연정화					기	
		자)					전선용합성수	
	(K0-	상포기(상포					지복착기	
	60)	기)					전선용단자자	
	포장	상품자동포장					동압착기	
	기 또	기					입담배절삭기	
	는 곤	포장끈 결속					입담배현수기	

		입담배신장기			통가위	
(K1)	(K1-	돗자리칼			이발가위	
이기	10)	손도끼			양(양)가위	
및 공	수동	도끼			이발용빗가위	
구	날 붙	정			양철용가위	
	이	유리칼			식목가위	
		나이프			전기가위	
		전공나이프			가위용자루	
		조각도			가위용교체날	
		연필깎이용칼			가위집	
		등산용칼			도끼용자루	
		다용도나이프		(K1-	괘선구(괘선	
		공작용나이프		200)	구)	
		칼자루		수동	자동차용디스	
		조각도용날		작업	크브레이크	
		나이프날덮개		공구	피스톤압개	
		나이프날수납			구(압개구)	
		상자			타이어교환기	
		융단절단기			타이어착탈구	
		구두칼			파이프끝확장기	
		타일절단기			손목시계용방	
		앰플절단기			수구삽입기	
		타일클립퍼			끌	
		개대(개대)용			대 패	
		커터			톱	
		끈절단용나이			하구소프레임	
		프			송 곳	
		공작용가위			수동볼	
		커터나이프			톱날	
		커터나이프교			대패대	

		체날					줄용날	
		융단커터용날					대패날	
		손톱깎이용가					톱자루	
		위					송곳자루	
		낚시질용가위					끌자루	
		화장용가위					철판절단기	
		콧수염용가위					커튼레일절단	

		기					철근절곡기
		와이어로프절					수동파이프절
		단기					곡기
		파일절단기					함석판절곡기
		절삭기					금속판절곡기
		관절단가위					수동타정기
		케이블절단가					해머터커
		위					수동리벳타입
		펜 치					기
		니 퍼					스테이플타입
		플라이어					기
		롱노즈플라이					쇠망치
		어					해 머
		워터펌프플라					나무망치
		이어					쇠망치머리
		바이스플라이					못박이
		어					센터펀치
		볼트클립퍼					못빼기
		철근절단기					퓨즈발취구
		철판용천공기					배관용스리브
		수동나사절삭					발취구
		반					가스콕용가스
		수동나사절삭					유량조절어
		기					태치먼트착
		케이블피복부					탈구
		박리커터					석재가공용
		드라이버					석재조이는
		드라이버비트					기구
		드라이버용자					판넬용혈압고
		루					정접합구
		드라이버용나					벨트접합구
		사보지구					전선단자압착

		렌 치 스패너 멍키렌치 파이프렌치 렌치용소켓				기 바이스 샤코바이스 체인의 핀빼는 바이스			

		창틀부착위치 조절고정구 수동그라인더 숫 돌 숫돌대 줄 조절날붙이용 줄 톱용날세우는 줄 날붙이연마기 식칼연마기 이발기날연마기 면도칼연마기				휴대용수도관 천공기 휴대용천정천 공기 휴대용볼반 (drilling machine) 휴대용탁상드릴반 휴대용전기톱 휴대용전기원형톱 탁상용전기원형톱 탁상용전기실톱			
	(K1-30) 휴대용 동력공구	휴대용전기선 재결속기 휴대용전기나무조각기계 휴대용공기동 면취기(면취기) 휴대용전기니블러(nibbler) 휴대용유압봉강절단기 휴대용공기동 절단기 휴대용전기대패 휴대용전기루터 휴대용전기드				휴대용전기띠톱 휴대용전기실톱 휴대용체인톱 휴대용전기그라인더 휴대용에어그라인더 휴대용전기샌더 휴대용에어샌더 휴대용전기벨트연마기 휴대용전기포리쉬어 전기날붙이연마기 전기식칼연마			

		릴				기	
		휴대용공기드릴				전기나이프연마기	
		휴대용전기드라이버				ill)	
		휴대용에어드라이버				센터리머	
		휴대용전기렌치				테이퍼핀리머	
		휴대용에어렌치				핸드탭	
		휴대용전기임팩트랜치				기계탭	
		휴대용전기타정기				너트탭	
		휴대용공기타정기				관용나사탭	
		휴대용공기스테이플러타입기(타입기)				나사절삭다이스	
		휴대용전기해머				나사전조다이스	
		휴대용전기해머드릴				다이헤드체어서	
		휴대용전기정				관용나사용다이스	
		휴대용유압프레스				너트성형용다이스	
		휴대용철근절곡기				브로치반용브로치	
		휴대용파이프절곡기				키홈파는 브로치바이트	
(K1-400) 기계공구	개선(개선)가공기용커터					쓰로어웨어바이트	
	철도레일이음매용용접개소절삭구					엔드밀용절삭기	
	밀링커터					원형톱날용팁드릴	
	기어커터					강관천공용드릴	
	리머(reamer)					유리천공용드릴	
						도관용드릴	
						콘크리트천공용드릴	
						목재용드릴	
						석재용드릴	

	앤드밀(endm				목공용나선송	

	곳				목재박피기용날	
	초경코어비트				동전포장기용날	
	코어드릴				원형톱날	
	콘크리트벽용홀커터				원통톱날	
	초경록비트				실톱날	
	휴대용전기충격기의 정				띠톱날	
	유압브레이크용끌				홈절삭날	
	포장체절삭기용커터비트				휴대용전기실톱날	
	그라인딩휘일				전기대패용날	
	다이아몬드드레서				전기대패용몸통	
	로터리드레서				각끌반용각끌	
	석재절단용다이어몬드숫돌			(K1-50) 공구함 공작대 등	목공용면절삭커터	
	절단용회전원반숫돌				드릴수납용스탠드	
	연삭반용회전원반숫돌				공구정리선반	
	그라인더용회전원반				허리에 매는 공구수납포대	
	그라인더용연삭연마숫돌				허리에 매는 공구꽂이	
	휴대용전기연마기의 연마지				플라이어케이스	
	그라인더용연마포				등산용칼집	
	휴대동력공구용회전와이어브러시				톱날보호커버	
	철선절단기용날				공구상자	
					동력공구용공구상자	
					목공용도구상자	
					공구용캐비닛	
					공구차	
					공작대	

		목공용작업대
	(K1-60) 금 형	콘돔제조용형틀 암레스트성형용금형 콘크리트블록용금형
	(K1-00) 기타 이기 및 공구	쇠갈고리 조릿대 돗자리바늘 구두바늘 토스칸 납땜흡입기 토치램프 블로우램프 납땜인두 미장이용흙손 맞춤새흙손 미장용흙손자루 미장용스크레이퍼 미자용칠주걱 미장용자 목수용자 먹 통
(K2) 어업용 기계 기구	(K2-10) 어망 및 김망	정치망 인 망 김양식망 투 망 사내끼 사내끼용틀 족 대 김망연결구 김망고정구 어망용추 어망용부표
	(K2-2) 양식어업용 설비기기	양식떼 뱀장어양식용못물교반기(교반기) 양식용급이기 양어조 활어조(활어조)
	(K2-30) 낚시용구	낚시바늘 은어낚시바늘 붕장어낚시바늘 뱀장어낚시바늘 모의낚시밥 모의낚시바늘털 침 오징어낚시용 모의 낚시바늘 낚시용추 낚시용찌 낚시용전기찌
	(K2-40) 낚싯대	낚싯대 낚싯대용손잡이 낚싯대연결구 낚싯대용릴부착구 낚싯대용안내구 낚싯대용선단보호구 낚싯대받침
	(K2-50) 낚시용릴	낚시용릴 낚시용전동릴 낚시용릴의 드랙손잡이 낚시용릴의 동력경운기용 경운날

		스풀				사이갈이제초
		낚시용릴의				기용날
		손잡이				묘상용복개구
	(K2-6) 낚시용 상자 및 바구니	낚시용상자				비료살포기
		낚시용고기바				퇴비살포기
		구니				시비기
						비료국자
						비료통
						비료혼합기
						육묘기
	(K2-7) 낚시용구함	낚시용소품함				육묘상자
		낚싯대케이스				콩나물재배기
		낚시용미끼통				송이재배용종
		낚시바늘케이				상자(종상자
		스				)
	(K2-00) 기타 어업용 기계기구	낚시바늘풀개				버섯재배기
		낚시줄절단구				송이재배용원
		낚시잡이용항				목구멍뚫이
		아리				기
		통 발				파종기
		조망기				고구마식묘기
		낚시기				시비파종기
		장어통발				전식기(전식
		작 살				기)
		미역채모틀				전식기용전식
		낚시용발판				톱니
(K3) 농축산용 기계기구,광산 기계기구,건설 기계기구 등	(K3-100) 농업용 기계기구	볏짚솜틀기				전식기용묘재
		제승기				대(묘재태)
		가 래				묘식기(묘식
		두렁성형기				기)
		동력경운기				묘발기(묘발
		동력경운기용				기)
		정지판				이식용수목굴
		동력경운기용				취기
		두렁형성기				이식기

		무논사이갈이				가지베는기
		제초기				예취기용분초
		밭제초기				구(분초구)
		조수(조수)위				예취기용날

		협기				예불기용날	
		허수아비				탈곡기	
		너구리포획기				매갈이기	
		족제비포획용덫				풍 구	
		방조망				쌀선별기	
		뱀포취기				과실선별기	
		고양이포획기				달걀선별기	
		농약살포기				곡류선별기	
		재배용분무기				목초운송기	
		농약살포용노즐				곡물저장기	
		토마토수확기				곡류용건조기	
		여물뒤섞는기				목초용건조기	
		밤송이까는기				다엽건조기	
		벼걸이기				엽연초건조기	
		벼걸이기용다리				표고버섯건조기	
		농작물용건조대				화분교배기	
		고구마굴취기				화분채취기	
		감자굴취기				수간(수간)보호판	
		양파수확기				수간용약액주입기	
		잔디깎이기				접목클립	
		전정기(전정기)				오이교정구	
		뽕잎베는기				수목용지주	
		예취(예취)결속기				수목가지지지구	
		예취탈곡기				지간교정구	
		콤바인				과실용방충대(방충대)	
		예불기(예불기)				구근수재배기(구근수재배기)	

		수경재배기				농업기계용조작손잡이	
		살수호수권취기(권취기)				농업기계용좌석	
		물뿌리개				농업기계용햇빛가리개	
		조로(jarro)용살수구				경운기용무논	

		살수호스				차륜	
		화 분				전식기용차륜	
		분재용화분				예취기용무논	
		분재용화분밑				차륜	
		판			(K3-	양잠용선반	
		분재용화분커			20)	양잠용섶	
		버			양잠	누에알용대지	
		분재용화분접			기계	(태지)	
		시			기구	상족기(상족	
		괭이			양봉	기)	
		삭초기(삭초			및 축	급상기(급상	
		기)			산용	기)	
		절근기(절근			기계	육추기(육추	
		기)			기구	기)	
		쟁기				부란기(부란	
		제설구(제설				기)	
		구)				검란기	
		곡괭이				착유기	
		짚용압절기				병아리감별기	
		갈 퀴				가축거세기	
		낫				가축용귀표	
		삽				쇠코뚜레	
		스콥				안장	
		이식흙손				사료재단기	
		낫자루				사료분쇄기	
		괭이자루				사료용교반기	
		낫자루용케이스				축산용자동먹	
		삽자루				이공급기	
		스콥자루				사료저장통	
		곡괭이자루				모이상자	
		농업기계용핸들				가축용자동급	

		수기				타이어롤러	
		가축용약투입				지반전압용래	
		기				머	
	(K3-	생(생)콘크리				지면진동체고	
	300)	트공급용이				기	
	광산	동흡퍼				콘크리트취부	
	기계	시멘트용사일				기(취부기)	
	및 건	로(silo)				모르타르용펌프	

	설기계	콘크리트믹서용흡퍼 석재채굴기 광산용천공기 불도저 로 더 건설용구굴기(구굴기) 굴삭기 포클레인 굴삭기용금속커터 굴삭기용콘크리트파쇄기 말뚝타입기 말뚝인발기 시트파일인발기 건설용혈굴기 모터스크레이퍼 피견인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 지면체결고정봉 로드롤러 노면전압용진동롤러				콘크리트믹서 모르타르믹서 콘크리트믹서용뒤섞는날개바퀴 콘크리트커터 아스팔트절단기 아스팔트살포기 준설기 수저토사굴삭기 쇄암봉(쇄암봉) 제설기 토목용천공기의 드릴		
					(K3-40) 파쇄기 마쇄기 및 선별기	조크러셔 콘크러셔 롤크러셔 볼 밀 로드밀 회전사분기 스파이럴분급기(분급기) 공기분급기 벨트필터 진동절분기 부유(부유)선		

		별기 자기선별기 도태반(도태반) 도태기(도태기) 콘크러셔용맨틀 파쇄기용날 파쇄기용타격			정기	정기 고추세척기 쌀세척기 인삼세척기		
					(K4-30) 영업용 식품 절단기	영업용야채절단기 영업용식육절단기 영업용파박피기		

		날
	(K3-0) 기타 농축 산용 기계 기구	담배잎수확기 표고버섯건조기 수박재배용깔판 양잠용섶 동물용빗 가축약투여기 동물용피복 농업용혈굴기 고형비료 고형농약
(K4) 영업용식료가공기계 등	(K4-10) 정곡기	정미맥기 정미기 제분기 소맥분제조기 곡류혼합기 쌀혼합기 정미맥기용흡퍼 정곡기용롤러
	(K4-20) 영업용 식품 세	영업용야채세정기 영업용당근세정기 가공용감자세

		육절기 골절기 영업용식육절단기의교체용날 영업용야채절단기의 교체용날 식육연화기용교체날
	(K4-40) 영업용 식품 혼합기 또는 식품 교반기	영업용식품혼합기 제과원료혼합기 제면용혼합기 제과원료혼합기용교반날개바퀴 영업용식품교반기의 회전날개바퀴
	(K4-50) 영업용제과기제빵	포함기(포?기) 즉석면제조기 빵발효기 아이스크림제조기

기 및 제면기	제면기 계피떡제조기	
(K4-6) 김가공 기계기구	김세정기 생김탈수기 김건조용테 김채취기	
(K4-70) 영업	영업용취반기 영업용프라이어	

		어육연제품가공구성형기 어묵성형기용금형 초콜릿과자제조기용성형금형
	(K4-0) 영업용 기타 식품 가	만두제조기 햄제조기 양조용여과기 녹차증기(녹차증기) 제다기(제다

	용 식 품 가 열기 기	영업용새구이 기 영업용튀김기 영업용냉동식 품해동기 제과용오븐 비스킷소성요 제빵용회전요 학교급식용취 반솥 압력솥 영업용회전솥 영업용면데치 는기		공 기 계 등	기) 어묵성형기 캔시밍(can seaming)기 두부제조기 솜사탕제조기 다시마제조기 요구르트제조기 한약추출기 탈유기 곡물분쇄기 정미기용급망 착유기 깨볶음기 냉면반죽기 포도박피기 제빵가열판
	(K4-90) 영업 용 식 품 가 공기 계부 품 및 부속 품	제과원료추출 노즐 식품데치는 바구니 야채세정기용 세정솔 양조용여과기 의 여판 식품냉동용틀 식육가공용성 형기	(K5) 섬유 기계 및 재 봉기	(K5-10) 섬유 기계	개섬기(개섬 기) 타면기(타면 기) 유면기(유면 기) 연조기(연? 기)

	조방기(조방 기) 정방기(정방 기) 합연사기(합 연사기) 연사기 세모기(세모 기) 건모기(건모 기) 연반기(연반 기) 정경기(정경			환편기(환편 기) 고무편기 양말편기 어망편기 트리콧(tricot)기 바라모염기 치즈염기 반염기(반염 기) 날염기(날염 기) 폭출기(폭출

		기)				기)	
		풀칠기				기모기(기모기)	
		권반기(권반기)				엉겅퀴기모기	
		면직기				철사기모기	
		견직기				수편기(수편기)	
		인견직기				수편기용추	
		모직기				수편기용손잡이	
		마직기				수편기용캬릿지	
		타펫직기				수편기용베라침	
		도비직기				수편기용복합침	
		자카드(jac-quard)직기				수편기용목이침(목이침)	
		타월직기				실차(사차)	
		범포직기(범포직기)				방적기계용스핀들	
		양탄자직기				방적기계용링	
		수직기(수직기)				방적기계용트	
		횡편기(횡편기)					
		종편기(종편기)					

		래블러				재봉기침	
		방적기계용보빈(bobbin)				자수용재봉기침	
		직기용셔틀				재봉기용조절눈금판	
		직기용바디				재봉기용테이블	
	(K5-20) 섬유제품 2차 가공용 기계기구	광택기				재봉기용캐비닛	
		표백기				재봉기용케이스	
		정연기				재봉기용보빈	
		세모기(세모기)				재봉기용보빈케이스	
		장갑마무리용형판			(K5-0)	자견기	
		양말마무리용틀				조사기	
		입체프레스용인체형재단					

		대			기타 섬유 기계 및 재봉기	침염기
		날염대				
		재봉기				
		재봉기본체				
		오바록재봉기				
		양탄자용가장자리꿰매는 재봉기		(K6) 화학 기계 기구	(K6-10) 분리 기여 과기 및 집진기	원심분리기
						원심탈수기
		포장용재봉기				화학공업용여과기
		자수용재봉기				오수처리용여과기
		노칭재봉기				상수도용여과기
		칼본봉재봉기				가정용정수기
		단추구멍용재봉기				정수기대
		퀼팅재봉기				여과기용필터
		손재봉기				집진기
		재봉기용실꽂이대				탈류집진기(탈류집진기)
		재봉기용발판				백필터
		재봉기용절사구(절사구)			(K6-	혼합기
	20) 혼합기 또는 교반기	교반기			기	
		유화기(유화기)			(K6-70) 화학 실험 용기 계기 구	화학실험용도가니
		혼합기용날개				데시케이터
		교반기용날개				화학실험용항온기
	(K6-3) 반응기발생로 및 전해조	초화기(초화기)				살균기
		발효기				멸균기
		분해기				비 커
		오트그레이브				플라스크
		가스발생로				샬레
		수성가스발생로				뷰렛
		석탄가스로				피펫트
		코크스로				스포이트
		수전해조				화학실험용분주기(분주기)
		식염전해조				
		세척기				시험관세우개

(K6-40) 흡수기 또는 흡착기 및 이온교환 기기	순수(순수)제조기 경수연화기(경수연화기) 이온교환기 기액접촉용충전물 가스세정용수가체(수가체)				저뇨가대(저뇨가대) 드래프트챔버
(K6-50) 열교환기 등	열교환기 가열기 냉각기 응축기 열교환관 열교환기용핀	(K7) 금속가공기계 목재가공기계 등	(K7-10) 금속가공기계	브로치판 호닝반 방전가공기 초음파가공기 레이저가공기 랩반 머시닝센터 수치제어복합공작기	
(K6-6) 냉동	냉동기				

열쇠가공기 열쇠절삭기 합건복제기(합건복제기) 금속절단원형톱반 금속절단대(대)형톱반 금속절당궁(궁)형톱반 금속용절단기 봉강절단기 판금용파판절단기(판김용파판절단기) 탁상회전금속절단기 탁상금속절단원형톱반 반지조각기 문자조각기		플래노밀러 평삭반(평삭반) 형삭반(형삭반) 입삭반(입삭반) 원통연삭반(연삭반) 내면연삭반 평면연삭반 공구연삭반 탁상전기그라인더 툴그라인더 진동바렐연마기 흡 반 치차치절반(치차치절반)	

		보통선반				레크치절반	
		터릿(turret) 선반				치차연삭반	
						치차마무리반	
		탁상선반				치차형삭반	
		다축볼반				나사절삭반	
		레이디얼볼반				나사전조반(전조반)	
		직립볼반					
		탁상볼반				분괴압연기(분괴압연기)	
		횡중고반(횡중?반)				판재압연기	
		정밀중고반(정밀중?반)				선재압연기(선재압연기)	
		입중고반(입중?반)				인발제관기(인발제관기)	
		베드형프레이스반				조재인발기(조재인발기)	
		무릅형프레이스반					
		탁상프레이스반				금속정제용산	

		세기(산세기)				지구	
						바이트홀더	
		도금기				프라이즈척	
		피도금물걸이구				콜릿	
						공작기계용공작물고정구	
		도금액보온용가열기				절삭기계용절삭물고정구	
		기계프레스					
		액압프레스				연동척	
		단조기				전자척	
		전단기(전단기)				영구자석척	
						회전센터	
		판금용벤딩롤				프라이즈반용심출봉(심출봉)홀더	
		환봉용벤딩머신					
		전기용접기				괘서용정반(괘서용정반)	
		가스용접기					
		가스용단기(용단기)				판금용정반(판김용정반)	
		써밋용접기				다이세트	
		테르밋용접기			(K7-20)	목공프라이즈반	
		초음파용접기					

		자동용접기 용접기용충당재(충당재) 용접봉 용접용소모노즐 용접용토치 가스압접용버너 용접흄흡입구 용접용흡입후드 금속공작기계용핸들 절삭용공구보			목재가공기계	목공선반 합판제조용프레스 목공원형톱반 목공대형톱반 수동대패반 자동대패반 목공용천공반 각형끌반 배꼽따기반 목공볼반	
					(K7-30) 석재가공	석재용절단기 렌즈연마반 초음파석재가공기	

	기계	석재용천공기 석재용연마기				내연기관용피스톤	
	(K7-40) 사출성형기 등	사출성형기 압축성형기 압출성형기 사출성형기용 사출공				내연기관용피스톤링 내연기관용크랭크샤프트 내연기관용연접봉	
	(K7-50) 주조기계	주조기 원심주조기 주조용연소기 주조용도가니취병(취병)				내연기관용점화플러그 내연기관용점화코일	
	(K7-0) 기타의 금속가공기계, 목재가공기계 등					내연기관용점화플러그체임버 내연기관용점화시기조정기 내연기관용스타터 내연기관용시동풀리	
(K8) 동력	(K8-10)	증기터빈 원자로				내연기관용연료탱크	

기계 기구 펌프 압축기 송풍기 등	동력 기계 기구	풍차					내연기관용기화기
		수력터빈					내연기관용벤튜리관
		복수기(부수기)					내연기관용연료콕
		풍차용나래					내연기관용연료분사펌프
	(K8-20) 내연기관	제트엔진					내연기관용배기관
		가스터빈					내연기관용다기관
		건설기계용엔진					내연기관용소음기
		엔진가드					내연기관용과급기(과급기)
		엔진용커버					내연기관용배기가스정화촉매
		내연기관용실린더					내연기관용냉각팬
							내연기관용방열기
							내연기관용윤활유펌프
							내연기관용배수마개
	(K8-30) 보일러	발전용보일러					
		선박용보일러					
		증기기관용보일러					
		저탕식보일러					
		제다(제다)용보일러					
		난방용온수보일러					
		증기보일러					
		연탄보일러					
							등유버너
							열풍발생기용버너
							버너점화구
							버너용가스레귤레이터
							버너용연소통
					(K8-50) 펌프	회전진공펌프	
						분사펌프	
						확산펌프	
						제트펌프	
						전자펌프	
						마찰펌프	
						기포펌프	
						왕복펌프	
						피스톤펌프	
						플랜지펌프	
						다이어프람펌프	
						회전식펌프	
						치차(치차)펌프	
						베인펌프	
						로터리피스톤펌프	
						휴대용등유보	

		가스보일러 전기보일러 석탄보일러 유류보일러 보일러용격납고 보일러용소음기(소음기)				급펌프 휴대용파악(파악)석유펌프 축류펌프 사류(사류)펌프 입축사류펌프 수중모터펌프 수중사류펌프 튜블러펌프	
	(K8-40) 버너	파일럿버너 가스버너 중유버너					

		캔드모터펌프 인라인펌프 와류(와류)펌프 볼류트펌프 터빈펌프 펌프용날개바퀴 사류펌프용안내판 펌프용케이싱 펌프용흡입구 펌프용가스켓 펌프용터미널헤드				축류송풍기 터보형송풍기 프로펠러송풍기 송풍기용케이싱 축류송풍기용보호테 원심송풍기용시로코팬 터보블로우용날개바퀴 축류송풍기용날개바퀴	
	(K8-60) 압축기	왕복압축기 압축공기충전용압축기 카쿨러용왕복압축기 터보형압축기 가스터빈용축류압축기 레이디얼압축기 압축기용케이싱 압축기용방음			(K8-0) 기타 동력 기계 기구, 펌프 압축기, 송풍기 등		
				(K9) 산업용 기	(K9-10) 동력	베어링 볼베어링 롤러베어링	

	함	계기	전도	베어링보지기	
	압축기용날개	구범	용 기	베어링볼	
	바퀴	용 부	계기	베어링용외륜	
	왕복압축기용	품 및	구	오일실	
	플랜지	부속		치차(기어)	
(K8-70) 송풍기	원심송풍기	품		풀리	
	다익식송풍기			동력전도용풀리	
	레이디얼송풍기			동력전도용체	

	인		산업용 기계기구 용방진구 및 방진대	대	
	컨베이어체인			펌프용방진대	
	반송용체인			금속가공기계용방진대	
	동력전도용벨트				
	컨베이어용벨트		(K9-0) 기타의 산업용 기계 기구 범용 부품 및 부속품		
	유니버설조인트				
	동력전도용 커플링				
	동력전도용클러치				
	브레이크				
	유압실린더				
	에어실린더				
	엑셀러레이터				
	변속기	L군			
	감속기	(L0) 기념비 등	(L0-0) 기념비 등	기념비	
	동력전도용벨트타이트너				
(K9-20) 윤활용구 등	기름치개구	(L1) 가설공사용품	(L1-10) 발판용품	가설(가설)용 발판	
	그리스건			발판용깔판	
	그리스압입기			테두리조립용 발판	
	내연기관용기름필터			발판용테	
	내연기관용에어필터			발판용지주	
	압축기용에어필터			발판용난간기 등	
	오일교환기			발판용난간	
	급유기				

		급유호수권취기 오일캡 기름치개구용캡
(K9-3)	엔진용가대	
		발판용수평테 발판용브래킷 발판용벽연결구 발판용베이스금속구
(L1-	가설용지주	

20) 가설용 지주 등	파이프지지구	파이프지지구 용결합판 가설용삼각지주 대들보 기둥받이
(L1-30) 콘크리트거푸집 등	콘크리트거푸집	
	콘크리트거푸집채	
	콘크리트거푸집연결구	
	콘크리트거푸집체결용붙임구	
	콘크리트거푸집자릿쇠	
	콘크리트거푸집쐐기	
	콘크리트거푸집콘	
	콘크리트거푸집체결금속용간격보지구	
	콘크리트거푸집금속연결간(杆)	
	철골보	
	콘크리트거푸집근권(근권	
	부대용품	철근결속구
	(L1-0) 기타의 가설공사 용품	
(L2) 토목구조물 및 토목용품	(L2-10) 토목구조물	조립교량 조립교량용트라스 스테이케이블계유용금속구 터널용세그멘트 터널용동바리 터널용세그멘트의 이음매 로크볼트 수 문 댐용개폐문 고가탱크 가스탱크 철 탑 텔레비젼안테나용철탑 송전탑 전 주 전주용발판금속구

		)금속구				전주용밴드	
	(L1-40) 가설공사	스페이서				전주용지선커버	
		철근보지구				전주용방호판	
		철근고정금속구				공장용굴뚝	

	(L2-20) 기초공사용품 및 토목공사용품	기초말뚝				록	
		기초말뚝용접속구				수로용저판블록	
		흙막이용동바리				수로둑증축용테	
		흙막이널판				측구용쓰레기제거책	
		흙막이말뚝				수로용받침블록	
		흙막이널판이음매				수로용관흙막이	
		캐이슨(cais-son)				수로용지주	
		구조물용기초블록				배선용지중매입박스	
		옹벽용울타리				제수변(제수변)용상자	
		호안용블록				살수전보호상자	
		흙받이용블록				소화전보호상자	
		소파용(소파용)블록				맨홀틀	
		밑다지기블록				맨홀뚜껑	
		경사면용블럭				오수통	
		옹벽용블럭				빗물통	
	(L2-30) 농업토목용품	밭두둑피복판(피복판)				오수받이	
		조립밭두둑				양수기용보호상자	
		밭두둑용블럭				도랑덮개	
		농업용봇둑				빗물통덮개	
		농업용수문				오수통덮개	
		농업용봇둑기둥				맨홀뚜껑용손잡이	
		농업용봇둑판				세면대용배수전	
	(L2-40) 상하수용	배수관					
		하수관					
		수로관					
		배수구					

	설비	측구용블록				바닥배수용트			
	구	수로용블록				랩			
		수로용측판블				설거지대용배			

		수트랩				및 항	부선창(부선		
		낙수구				만관	창)		
		욕구용(욕구				련용	인공어초		
		용)배수마개				품	인공어초블록		
		세면대용배수				(L2-	구축용블럭		
		마개				00)			
	(L2-	조립도로				기타			
	50)	도로용블록				토목			
	도로	연석(연석)블				구조			
	용품	록				물 및			
		도로경계석				토목			
		도로용집수블				용품			
		록			(L3)	(L3-	전망탑		
		복개판			조립	10)	관측탑		
		보행판			가옥	시설	폐기물용치대		
		보도판			옥외	물	대피소		
		도로용신축(			장비		조립차양		
		신축)이음매			품 등		간이휴게소		
		복공판용구멍					조립화장실		
		덮개					지붕부착벤치		
		도로병(?)					연 단		
		도로표시구					피뢰가옥(가		
		도로면표지테					옥)		
		도로용차광판					공중전화박스		
		강설막이					우체통		
		방설책					시계탑		
		설붕(설붕)예					정유소		
		방책					대합소		
		지중매설물표					자전거보관대		
		시구					개찰박스		
		도로용방음벽				(L3-	조립방갈로		
		나무뿌리덮개				200)	이동식당		
		수목보호구				조립	조립이동초소		
	(L2-	바닥판다지기				가옥	조립이동캠프		
	60)	구				등	하우스		
	하천	밑다지기구					조립축사		

	해양	제방용방파제				조립독서실	

		조립방음실				포치용지붕	
		조립암실				툇마루	
		조립가옥				창용철책	
		조립헛간				창난간	
		조립헛간용환기패널				계 단	
		조립차고			(L3-50) 옥외조작물	한 벌의 문짝과 문설주	
		조립매점				대 문	
		버스표판매소				담 장	
		수상가옥				문 짝	
		차양텐트				문짝용접속구	
		천 막				문손잡이	
		텐 트				문짝용경첩	
		텐트용고리				문설주	
		텐트기둥				울타리	
		텐트용말뚝				도로용울타리	
		텐트골조연결구				베란다용울타리	
	(L3-30) 조립온실 및 비닐하우스	조립온실				계단난간	
		비닐하우스				난간용기둥	
		온상골재체결구				울타리용세로대	
		인삼포용지주연결대				난간용세로대	
		비닐하우스용골조이음쇠				바리케이트	
		비닐하우스용골조				문빗장	
		조립온실테연결구				정원담장	
						도로용이동울타리	
						울타리용장식판	
						울타리용장식금속구	
						담장용장식책	
	(L3-40) 건축용 유니트	벽 장				난간용지주	
		쓰레기투입구				베란다난간용지주	
		물품투입구				문짝용지주	
		발코니				난간용두껍대	
		베란다				문짝용테	
		일광욕실				담장용테	
		포 치				담장용지주	
		빨래걸이대					

	가드레일용판			등	
(L3-60) 옥 외 설비 구	분 수 태양열이용온수기 태양열온수기용급수관 태양열이용온수기용집열판 태양열이용온수기용반사경 태양열이용온수기용급수탱크 태양열이용온수기용설치대 고가수조 고가수조용설치대 고가수조용부착지지구 고가수조용뚜껑 고가수조용패널 인공연못 인공폭포		(L4) 건축용 구성	(L4-10) 건축용 구조재	마루기둥 기 둥 동귀틀 멍 에 건축용강재 경량철골 인조목재 철근보호캡 덱크거어더 철 근
				(L4-20) 지붕물받이 등	지 붕 대들보 건축용들보 건축용찬넬 지붕용유리이음매 지붕판용이음매 온실지붕용유리이음매 태양열이용온실지붕용유리이음매 파라펫트 파라펫트부착구 지붕용물빼기판부착구 기와물림구 매달음구 파형(파형)지붕판부착금속구 기와이음매 눈막이 눈막이용부착
(L3-0) 기타의 조립가옥 옥외 장비품					
	구 차 양			벽부착구 벽간격유지구	

		건물용차일				벽판결합용클	
		차양재				립	
		차양부착구				라스연결용클	
		건물용차일부				립	
		착구				인서트(insert	
		처마물받이				)	
		빗물받이깔대				마 루	
		기				마루바닥용방	
		빗물받이용낙				진구	
		수구				마루받침용방	
		빗물받이용집				진구	
		수통				동귀틀받이	
		빗물받이받침				가로대받이	
		빗물통지지간				판체부착구	
		빗물받이용이				클램프	
		음매				방호망용클램	
		빗물받이용우				프	
		수비산(우수				가설클램프	
		비산)방지판			(L4-	건물용 연(연	
	(L4-	천 정			40)	)	
	30)	테부착천정			건물	벽용오리목	
	천정,	천정용장식판			용 맞	웨 지	
	벽, 마	반자틀			춤새	골판지심재	
	루 등	반자틀받이			등	방수시트	
		들연(야연)				벽판용이음매	
		천정판고정쇠				천정둘레연	
		벽체				천정견절연(	
		커튼월				견절연)	
		콘크리트벽구				반자돌림대	
		멍밀폐봉				걸레받이	
		천정판몰딩용				외벽견절연	
		결합구				내벽견절연	
		조립식벽체				양탄자압구	
		건축용수평조				계단용논슬립	
		절지그				계단용논슬립	

		테				문용종틀	
		계단용논슬립				금고실중문짝	
		의 캡				문용단위판	
		콘크리트맞춤				맹장지문	

		새 건물용맞춤새 모르타르자				장지문 건물용절(절) 문짝	
	(L4-00) 기타 건축 용 구 성부 재	온실용동연(동연) 온실용대들보 축사용골조 계단용측판 계단용디딤판 계단용뒤판 계단용디딤판 부착구				맹장지용틀 미닫이용테 망 창 도어용테 미닫이창테 쌍미닫이창테 회전창 회전창테	
(L5) 건구 및 건 축용 개구 부재	(L5 건물 용 문 짝,창, 건물 용 문 짝틀 및 창	문용호당(호 당) 호당완충재 창테용하부제 창테용액자 도어테용액자 건구용호차레 일 망호(망호)용 호차레일 테부착문 방화문 건물용창 금고실문짝 쇠살문 미닫이문 미닫이창 형 강 알루미늄샷시 문 문용상틀			(L5-20) 덧 문 및 두 껍닫 이	덧 문 덧문틀 덧문용테 두껍닫이 두껍닫이용차 양 두껍닫이용판 자 두껍닫이용천 정판 두껍닫이용접 시판 덧문판 두껍닫이용경 판	
					(L5-30) 건물 용 셔 터	건물용셔터 건물용가드레 일 건물용셔터슬 랫 건물용셔터기 둥	

		건물용셔터연 결구 건물용셔터개 폐기 건물용셔터케 이스			물	창용암 건구용호차 매달림호차 미닫이롤러 건구용손잡이 자동개폐기의	

(L5-40) 건물용 통풍구 점검구 등	건물용통풍구	
	건물용환기구 패널	
	건물용점검구	
	욕실용배기그릴	
	건물용점검구의 테	
(L5-50) 커튼레일 및 매달림호차레일	창호용살	
	매달림호차레일	
	아코디언문용 레일	
	아코디언문용 행거레일	
	커튼런너	
	커튼레일용혹	
	커튼레일용조인트	
	커튼용가이드핀	
	커튼걸이구	
	커튼박스	
	커튼레일용브래킷	
	커튼스톱퍼	
(L5-60) 건구 금속 부품 등	도어클러우저	
	도어클러우저 용암피 벗	
	창테고정구	
	창테용브래킷	
	풍지판	
	건구용진동방지구	
	건구용이탈방지구	
	미닫이용스톱퍼	
	브라켓트	
	미닫이손잡이	
	건구용자물쇠	
	가막쇠	
	미닫이용자물쇠	
	덧문용자물쇠	
	현관용자물쇠	
	화장실용표시자물쇠	
	건구용크레센트정	
	건구용 당기는 핸들정	
	도어체인	
	못덮개	
	건구자물쇠용 가드플레이트	
	건구용손잡이 커버	
	건구용경첩	
	플로어힌지	
	노 커	
	도어스코프	
(L5-90) 건축용 개구부 재 및 건구	회전창용지축받이	
	건구용코너이음매	
	창테용코너구	
	건구용상하조절구	
	홀딩문용패널	
(L6) 건축용내외장재	(L6-10) 지붕판 내림새기와 점토기와 금속기와 평기와 시멘트기와 슬레이트기와	지붕판
		내림새기와
		점토기와
		금속기와
		평기와
		시멘트기와
		슬레이트기와

(L5-00) 기타 건구 및 건축용 개구부재	건물용칸막이 아코디언문			판 등	처마기와
	슬라이딩문				소매기와
	건물용칸막이 의 패널스페이서				현우(?우)기와
	건물용칸막이 의 패널들				각(각)기와
	건물용칸막이 기둥				용마루기와
	건물용칸막이 연결테				용마루평기와
	건물용칸막이 패널의 연결테				귀(귀)기와
	건물용칸막이 패널의 플로어레일				장식기와
	건구용칸막이 패널의 폭목				파형(파형)기와
	건물용칸막이 패널의 실링레일				용마루부착기와
	아코디언문용 프레임				기와이음매
	아코디언문용테				천정판
	난간				벽 판
	난간손잡이				흡음천정판
	홀딩문용테				방음천정판
	슬라이딩문용 패널				지붕채광판
	도로용미끄럼 방지판				방풍판
	도로용유도블럭				방음벽판
	보도용콘크리트평판				건축용콘크리트블록
	논슬립판				담장용콘크리트블록
	중공판넬				라아드
	논슬립블록				마루판
(L6-	건축용장식판				마루판연결판
					도로용깔판

M군		
(M0) 주괴 및 고형 연료	(M0-1) 주괴	주괴(주괴)
	(M0-2) 고형 연료	고형연로 조개탄 연 탄
	(M0-0)	

	20) 건축용 장식판 등	건구용장식판			M1-M3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기초제품	
	(L6-30) 모자이크타일 및 타일	모자이크타일 타 일 도판(도판) 모자이크타일 용대지(태지)		★ (M1) 직물지,판,끈 등	(M1-100) 직물지 편물지 등	직물지 편물지 부직포지 망 지 자수레이스지 레이스지
	(L6-40) 맹장지문지, 장지문지 및 벽지	맹장지문지 장지문지			(M1-2) 지지	지지(지지) 볼지 단볼지 모양지지 벽 지 벽지지
	(L6-00) 기타 건축용 내외장재	건축용유리블록			(M1-3) 합성수지 지	합성수지지 인조피혁지
					(M1-	합성수지판
	4) 판재	합성수지판재 금속판 금속판재 유리판 유리판재 고무판 고무판재 목 판 목판재			(M1-0) 기타의 직물지 판, 끈 등	
	(M1-5)금망	금 망		(M2) 배선용관 이음 매밸	(M2-1) 조강 등	봉 강 형 강 강 관
	(M1-	실			(M2-	

	60) 실·끈 로프 등	털 실 합성수지끈 끈 직 끈 편 끈 리본지 조끈(꼰끈) 합성수지끈 종이끈 비닐테이프, 합성수지테이프 직물테이프 세폭직물지 종이테이프 세폭레이스지 로 프 와이어로프		브 등	2) 조강 등 연결구		
					(M2-30) 배관용관 배관 용관 등	배관용관 배관용관재 유통관 유통관재 전선관 전선관재 호 스	
	(M1-70) 강선 및 쇠사슬	강 선 철 사 유자(유자)철선(가시철선) 쇠사슬 쇄소자(쇄소자)			(M2-40) 관이음매 등	관이음매 엘보우관이음매 신축관(신축관)이음매 호스이음매 플랜지(flange) 이음매 빅토리형관이음매 닛플관이음매 리듀서관이음매 분기(분기)새들	

		아우틀렛 관이음매용연결테(체부환) 관이음매용누름테 관이음매용플랜지 호스체부구 (체부구) 배관용보호커버 관이음매용패킹 밸브용패킹				수도꼭지 눌림수도꼭지 탕수혼합수전 살수용노즐 스프링쿨러헤드 증기트랩 트 랩 밸브용캡 밸브용핸들	
	(M2-50) 밸브등	밸 브 옥형밸브 앵글밸브 칸막이밸브				콕용핸들 급수전용핸들 밸브용몸체 지수전커버	

		역지(역지)밸브 나비형밸브 자동제어밸브 안전밸브 전자(전자)밸브 볼밸브 콕 메인콕 그랜드콕 가스콕 수전(수전) 지수전(지수전) 후랫슈벨브 플로트밸브 볼 탑 급수전 평세수전 세안용수전 토수관(토수관)			콕커버 수전주 수도꼭지개폐용페달 수전부착똬리쇠 급수전용정류기 급수전용여과기 수류절환기	
				(M2-6) 관지지구 및 고정구	배관용매달림금속구 배관용지지금속구	
				(M2-7) 관단폐색구 및 관단	관체보호캡	
	보호구				볼트용보호커버 너트용보호커버	
	(M2-0) 기타 배관용관, 관이음매, 밸브 등			(M3-20) 개폐금속물	손잡이 끌손잡이 자물쇠 콜러캡정(정) 경 첩 열 쇠	
(M3) 나사못개폐금속물	(M3-10) 나사, 못	나 사 나사못 드릴나사못 나무나사 스프링나사		(M2-30) 지지각 및 캐스터	각(각) 지지각 각 캡 지지각용캡 캐스터(caster)	

등		볼 트 볼트의 고정 구 유볼트 너 트 앵커너트 못 장식못 꺾쇠 연속못 듀벨(dowel) 리 벳 판연결구 결착구 용접용스타트쐐 기 똬리쇠 분할핀 볼트탈락방지 용스냅핀 워 셔				캐스터용부착좌 캐스터용베어링 캐스터용부착구 캐스터용휠브레이크 캐스터용차륜	
				(M3-00) 기타 나사, 못, 개폐금속물 등	코일형용수철 판용수철 와이어 고정구 가방용연결고리 흡착반 턴버클(turn-buckle)	
			N군			
			(N0) 다른			

군 및 N1에 속하지 않는 기타 물품					파키스탄 문자 글자체 포르투칼 문자 글자체 프랑스 문자 글자체 히브리 문자 글자체	
(N1) 글자체	(N1-10) 한글 글자체	한글글자체		(N1-40) 숫자 글자체	숫자 글자체	
	(N1-20) 영문자 글자체	영문자 글자체		(N1-50) 특수기호 글자체	특수기호 글자체	
	(N1-	그리스 문자		글자		

	30) 기타 외국 문자 글자 체	글자체 네덜란드 문자 글자체 독일 문자 글자체 러시아 문자 글자체 스페인 문자 글자체 아라비아 문자 글자체 이란 문자 글자체 이탈리아 문자 글자체 일본 문자 글자체 중국 문자 글자체		체 (N1-60) 한자 글자체	

비 고

1.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분에서 1개의 물품을 지정하여야 하고, 동 물품의 구분에 물품의 명시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그 디자인을 인식하는데 적합한 명칭을 기재하되 그 물품의 용도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보통 사용하는 명칭이어야 한다.
2. 제9조제3항에 의하여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할 수 있는 물품은 물품의 구분 중 ★표로 표시된 분류에 한한다.
3. 물품의 구분은 출원상 물품명 기재에 공통성을 도모하기 위한 물품의 예시로서 물품상호간에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별표 5] <개정 2001.6.30>

한 벌 물품의 구분(제9조제2항관련)

1. 한 벌의 여성용 한복 세트
2. 한 벌의 남성용 한복 세트
3. 한 벌의 여성용 속옷 세트
4. 한 벌의 장신구 세트
5. 한 벌의 커프스버튼 및 넥타이 핀
6. 한 벌의 끽연용구 세트
7. 한 벌의 침장 세트
8. 한 벌의 커피 세트
9. 한 벌의 화채용 세트
10. 한 벌의 반상기
11. 한 벌의 다기 세트
12. 한 벌의 양념용기 세트
13. 한 벌의 밥그릇과 국그릇
14. 한 벌의 주기 세트
15. 한 벌의 나이프, 포크 및 스푼
16. 한 벌의 숟가락 및 젓가락
17. 한 벌의 제기 세트
18. 한 벌의 세면화장대 세트
19. 한 벌의 책상과 책꽂이
20. 한 벌의 거실용 가구 세트
21. 한 벌의 테이블 세트
22. 한 벌의 사무용 가구 세트
23. 한 벌의 응접 세트

24. 한 벌의 탁자와 의자
25. 한 벌의 부엌가구 세트
26. 한 벌의 서도용구 세트
27. 한 벌의 필기구 세트
28. 한 벌의 오디오 세트
29. 한 벌의 개인용 컴퓨터 세트
30. 한 벌의 텔레비젼수상기와 받침대
31. 한 벌의 문짝과 문설주

[별표 6] <신설 2005.7.1>

글자체디자인 도면(제5조제5항관련)

1. 한글 글자체 도면 : 지정글자 500자, 보기문장, 대표글자

【지정글자 도면1】

가각간갈감갔강갖같
개갯거건걸겁것게겠
겨격겪견결겼경계고
골곳공과관교구국군
굴궁귀그극근글금급
기길김깁깃까깎깔깡
깨꾸꾼꿈꿔뀌끄끗끝
끼낀낌나난날남났낭
낮낯낱내낸낼냄냅냇
냈너넌널넘넷넣네녀
년녕노논놀놓누눈눌
느는늘니닌님닙다닦

【지정글자 도면2】

단달닭담답닷당대댁
터던덩데도독돈돋돌
동돼되된될됩두둑둘
등뒤뒷드득든들듭등
디따땀때떤떨떻또똑
뚝뛰뜨뜻라란랄람랑
래러럭런럼렵렷렀렇
레력련렴렸례로록롱
루류르른를리릴림릿
마막만많말맑맙망맞
매맺머먹먼멍며면명
몇모목몸못묘무묶문

【지정글자 도면3】

묻물뭐미민믿밀바박
밖반받발밝밤밥방배
뱀버번벌법벙베벽변
별병보복본볼봄봅봉
부분불붕붙법빈빠빨
뿐쁘쁜쁨사산살상새
색생서석선설섬섰성
세셔셧소속손솔송수
숙순술숨숲쉬쉴스슨
슬슴습슷승시식신실
싫심십싱싶싹써쎄쓰
씀씨씩씬아안앉않알

【지정글자 도면4】

았앞애야약양엉억언
얻얼엄업없엇었엉에
엣여연열엽였영예옛
오옥온올옴와완왜외
요욕용우욱운울움웃
원월위유으은을음읍
의읜이익인일읽임입
있잊자작잔잘잠잡장
재저적전절점정제조
족좀종좋죄죠주죽준
줄줌중즐지직진짐집
짓짜짝째쪽찡차착찬

【지정글자 도면5】

참창찾채책처천철첫
초촌추춤충치친침칸
커컴켜코콩크큰큼큽
키킬타태터테토통투
특틈파판퍼퍽편표푸
피하학한함합해햇향
혜혀현호혼화확활획
후훈홀흐히

【보기문장도면】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늘 씀에
편케하고자
함이라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
게 익혀 늘 씀에 편케하고자 함이라

【대표글자 도면】

가낡더
떴끼릭
맺표콤
으숲황

2. 영문자 글자체 도면 : 지정글자 52자, 보기문장, 대표글자

【지정글자 도면】

ABCDEFG
HIJKLMN

```
OPQRSTU
   VWXYZ
abcdefghij
klmnopqr
stuvwxyz
```

【보기문장 도면1】

```
    The quick
    brown fox
    jumped
    over the
    lazy dog

    The quick brown fox jumped over
    the lazy dog
```

【대표글자 도면】

```
H a
R e
S g
```

3. 숫자 글자체 도면 : 지정글자 10자, 보기문장, 대표글자

【지정글자 도면】

```
1 2 3
4 5 6
7 8 9
  0
```

【보기문장 도면】

```
1 2 3
4 5 6
7 8 9
  0
```

【대표글자 도면】

```
1  2
5  6
8  0
```

4. 특수기호 글자체 도면 : 지정글자 120자, 보기문장, 대표글자

【지정글자 도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Ω
```

【보기문장 도면】

```
, . ; {
[ ( ? !
/ @ # $
% & * ₩
```

【대표글자 도면】

```
* ₩
? ;
& {
```

5. 한자 글자체 도면 : 지정글자 900자, 보기문장, 대표글자

【지정글자 도면1】

```
가가가가가가가가각
각각간간간갈감감감
감갑강강강강개개개
개객갱거거거거거건
건견견견결결결경경
경경경경경경경경계
계계계계계고고고고
고고고곡곡곡곤곤골
```

【지정글자 도면2】

```
균극근근근금금김급
급급기기기기기기기
기기기길난난남남내
내녀년념노농능다단
단단단단달담답당당
대대대대덕도도도도
도도도도독독동동동
동동동두두두득등등
```

공공공공공과과과과
관관관광광교교교교
구구구구구구구국
군군군궁권권권귀귀

등락락란랑랑래랭량
량량량려력력련련렬
렬령령례례로로로로
록론료류류류륙륙륜

【지정글자 도면3】

률리리리리림립마막
만만만말망망망망매
매매매맥면면면면명
명명명모모모목목묘
묘무무무무무무묵문
문문문물물미미미미
미민밀박반반반발방
방방방방배배백백번
벌범법변별병병병보
보보보부복복본봉봉
부부부부부부부부북
분불불붕비비비비비

【지정글자 도면4】

비빈빙사사사사사사
사사사사사사사사사
사산산산산살삼상상
상상상상상상상상색
생서서서서석석석석
석선선선선선선선설
설설설성성성성성성
성성성성세세세세세
세소소소소소소속속
속손송송수수수수수
수수수수수수수수수
수수숙숙숙순순술숭

【지정글자 도면5】

습습승승승시시시시
시시시시시식식식식
신신신신신신신실실
실심심심십씨아아악
안안안안암암앙애애
야야야약약약약양양
양양양양어어어어억
억언엄업여여여여여
역역역연연연열열염
엽영영영영예오오오
오오오옥옥온와와완
왈왕왕외요욕욕용용

【지정글자 도면6】

용우우우우우우우우
우우운운운웅원원원
원원원원월위위위위
위유유유유유유유유
유유육육은은을음음
음음읍읍응의의의의
의의의이이이이이이
이익인인인인인인인
인일일임입자자자자
자자작작장장장장장
재재재재재재재쟁저
저저적적적적전전전

【지정글자 도면7】

전전전전전전절절점
접정정정정정정정정
정정정정제제제제제
제제제조조조조조조
조조조족족존존졸종
종종종종좌좌죄주주
주주주주주주죽중중
중즉증증증지지지지
지지지지지지지직직
진진진진질집집차차
차차착찰참참창창창채
채책책처처척천천천

【지정글자 도면8】

천천철청청청청청체
초초초촌촌최추추추
축축춘출충충충취취
취치치치칙친칠침쾌
타타탈탐태태택토통
통퇴투특특파파판팔패
패편편편평폐포포포
표품풍풍피피필필필
하하하하하하학한한한
한한한함항해해해해
행행향향향향허허혁현
현혈협형형형혜호호

【지정글자 도면9】

호호호호호혹혼혼홍
화화화화화화화화환
환활황황회회효효후
후훈휴흉흉흑흥희희

【보기문장 도면】

천지지도일음
양오행이이곤
복지간위태극
이동정지후위
음양

천지지도일음양오행이이곤복지간
위태극이동정지후위음양

【대표글자 도면】

왕강시
매도인
영다무
여명가

[별표 7] <신설 2009.6.30>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5조의2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

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				
(1)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전담인력의 수가 부족한 경우 부족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전담인력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3) 영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6.30> (앞 쪽)

의견(답변, 소명)서

【서류구분】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심판사건답변 □심판사건의견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답변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의견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 재답변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등록번호,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번호)】)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의견(답변, 소명)내용】
(【증거방법】)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7호 참조)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1. 서류구분 및 관련규정

서류구분	내용	관련규정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심사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의견제출통지를 받고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
심판사건답변	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달받고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72조의10
심판사건의견	참가신청에 대하여 당사자 및 타참가인이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판절차에서 직권심리한 결과를 통지 받고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72조의20 및 제72조의23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답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서 권리자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2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의견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답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에서 의견제출통지를 받고서 의견을 제출하는경우	「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2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재답변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에서 이의신청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2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부접합한 서류로 본다는 반려이유통지를 받고 소명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2. 처리절차

의견·답변·소명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 서식 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서류구분】란
서류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기재한 국문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제출인】란에 제출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제출인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이 경우【제출인구분】란에는 "국가기관", "국내법인", "국내 자연인", "외국 법인", "외국 자연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구분을 한 가지만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제출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합니다.

다. 공통
(1)【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등록권리자"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이의신청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제출인】란의 다음 행에【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를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예] 【제출인】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4.【사건의 표시】란
제출인이 밟고자 하는 절차에 따라【출원번호(등록번호,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번호)】란 또는【심판번호】란에 다음과 같이 번호란을 선택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30-2007-1234567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이의신청번호】 권리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30-2007-123456
등록에 관한 절차	【디자인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30-2007-1234567-00-00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사건구분-일련번호(6자리)	2007-당-123456

5.【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란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기재합니다.

6.【의견(답변, 소명)내용】란
가. 의견(답변, 소명)의 이유 및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이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별지를 첨부합니다.
나.【증거방법】란에는 증거가 있을 때에만 기재하고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증거내용과 그 부수를 기재합니다.

7.【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심판사건의견, 이의신청의견, 이의신청 재답변의 경우에는 의견 또는 재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심판사건답변, 이의답변의 경우에는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반려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의 경우에는 소명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2호, 제3호 및 제6호 참조)
나. 【첨부서류】 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3]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하는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4조의5·제8조제2항·제23조제4항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의5부터 제4조의8까지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함)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번호】 3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4조의5·제8조제2항·제23조제4항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의5부터 제4조의8까지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함)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합니다)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두 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6.30> (앞 쪽)

보정서

【보정구분】 □출원서등 보정 □도면등 보정 □이의신청서등 보정
□심판청구서등 보정 □심판청구서등 보충
【제출처】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보정(보충)할 서류】
【보정(보충)할 사항】
【보정(보충)대상항목】
【보정(보충)방법】
【보정(보충)내용】
(【기타사항】 □ 재심사청구 □ 지정기간단축신청)
(【단축이유】)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기재요령 제10호 참조)
【보정료】 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1호 참조)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1. 보정구분 및 관련규정

보정구분	내용	관련규정
출원서등 보정	출원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書旨)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도면등 보정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이의신청서등 보정	이의신청서 또는 관련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0조
심판청구서등 보정	심판청구서 또는 관련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심판청구서등 보충	보충요구서를 통지받고 심판청구서 또는 관련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충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2. 처리절차

보정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 서식 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보정구분】란
보정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제출처】란
가. 제출처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나. 심판청구와 관련된 보정(2009. 6. 30. 이전 출원에 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 및 사진이나 견본 보정의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의 □ 안에 표시(예: ?)합니다.
다. 재심사청구와 관련된 명세서 등 보정(2009. 7. 1. 이후 출원에 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 및 사진이나 견본 보정의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 안에 표시(예: ?)합니다.
3.【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기재한 국문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제출인】란에 제출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주민

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제출인구분】,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이 경우 【제출인구분】란에는 "국가기관", "국내 법인", "국내 자연인", "외국 법인", "외국 자연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구분을 한 가지만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 【제출인】 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합니다.

다. 공통

(1) 【사건과의 관계】 란은 "출원인", "등록권리자"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이의신청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 란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 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를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예] 【제출인】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4. 【대리인】 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 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 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 란의 다음 행에 【포괄위임등록번호】 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 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 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 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 【첨부서류】 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5. 【사건의 표시】 란

제출인이 밟고자 하는 절차에 따라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란 또는 【심판번호】 란에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기재합니다. 다만, 심판청구서등 보정에서 보정할 서류가 법정기간연장신청과 관련된 경우에는 【출원번호】 란에 해당 출원번호를 기재하고, 【심판번호】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30-2007-1234567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이의신청번호】 권리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30-2007-123456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사건구분-일련번호(6자리)	2007-당-123456

6.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란

가. 특허청장 등의 통지에 의한 보정인 경우에는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기재합니다.

나. 통지에 의하지 않고 자진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보정하려는 서류의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예]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1-1-00-1234567-12

다. 재심사청구와 동시에 보정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서의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7. 【보정(보충)할 서류】 란

보정의 경우 보정하려는 서류의 명칭을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심판청구서등 보충의 경우에는 【보정할 서류】 란을 【보충할 서류】 란으로 바꾸어 기재합니다.

[예] 【보정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8.【보정(보충)할 사항】란
  가. 하나의 보정서로 도면, 출원서 및 기타 서류의 서지(書旨)사항의 보정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도면의 보정과 서지사항의 보정을 동시에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출원서등 보정, 이의신청서등 보정, 심판청구서등 보정(보충)의 경우
   (1)【보정대상항목】,【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에 각각 해당 내용을 기재하며, 보정내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모두 기재합니다.
      [예]【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첨부서류
            【보정방법】제출
            【보정내용】
               【첨부서류】위임장 1통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수수료
            【보정방법】납부
            【보정내용】미납 수수료
   (2)【보정대상항목】란에는 보정하려는 식별항목명을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다만, 대항목에 속하는 소항목(창작자의 【주소】등)단위의 보정은 불가능하므로 대상항목을 대항목 단위로 기재합니다.
      [예] 【보정대상항목】창작자, 우선권주장, 첨부서류 등
   (3)【보정방법】란에는 "정정", "추가", "제출", "납부" 등으로 기재하며, 하나의 식별항목에 2 이상의 보정방법을 기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쉼표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합니다. 여러 개로 구성되는 식별항목(창작자, 대리인 등)중 일부내용(대리인 3명 중 1명)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보정방법을 "정정"으로 기재합니다.
      [예]【보정방법】 정정, 추가
   (4)【보정내용】란에는 조정대상항목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내용을 기재하며, 보정대상항목이 반복되거나 소항목이 있는 경우(창작자, 우선권주장 등)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의 내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보정방법이 "정정" 또는 "추가"인 경우 보정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 보정내용을 표시하며, 별지로 제출한 내용을 보정할 경우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별지를 전문(全文) 보정하여 첨부합니다.
      [예]【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창작자
            【보정방법】 정정, 추가
            【보정내용】
               【창작자】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주민등록번호】 720921-1234561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
               【창작자】
                  【성명의 국문표기】 장영실
                  【성명의 영문표기】 JANG, Young Sil
                  【주민등록번호】 650123-1234123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5
   (5) 출원인 또는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발명자가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의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을 이용하여 보정합니다.
   (6)복수디자인 출원 중 일부디자인의 서지(書旨)사항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보정대상항목】란에 보정하려는 디자인일련번호를 기재하며,【보정내용】란에는 해당 디자인의 서지사항 전체를 (부분디자인인 경우에는【부분디자인 여부】부터, 부분디자인이 아닌 경우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부터 【우선권주장】까지) 보정하여 새로이 작성한 내용을 기재하며, 보정내용이 해당 디자인의 서지사항에 대한 "정정" 또는 "추가"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밑줄을 그어 보정된 내용임을 표시합니다.
      [예] 부분디자인인 디자인일련번호 M04 디자인의 창작자의 주소를 정정하고 창작자를 1명 추가하며 우선권주장 출원번호를 정정하는 경우(부분디자인이 아닌 경우에는 "【부분디자인 여부】부분디자인"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보정대상항목】디자인일련번호 M04
         【보정방법】추가, 정정
         【보정내용】
            【부분디자인 여부】부분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피아노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단독디자인
               【창작자】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주민등록번호】 720921-1234561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 103블럭
               【창작자】
                  【성명의 국문표기】 장영실
                  【성명의 영문표기】 JANG, Young Sil
                  【주민등록번호】 650123-1234123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5 105블럭
               【우선권주장】
                  【출원국명】US
                  【출원종류】디자인
                  【출원번호】98-123456

【출원일자】 1998. 01. 03.
【증명서류】 첨부

(7)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고,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에 추가로 【복수디자인 여부】란과 【디자인의 수】란을 만들어 복수디자인 여부와 그 수를 기재하며, 복수디자인인 경우 【기본출원료】외에 추가되는 디자인 수에 해당 금액을 곱한 【가산출원료】를 기재합니다.

[예] 【보정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서류명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서류명】 디자인심사(무심사)등록출원서

(8) 유사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변경하거나 단독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 또는 [예 2]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 1] 유사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인 경우
【보정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 단독디자인

[예 2] 단독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인 경우
【보정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 유사디자인
【보정대상항목】 기본디자인의 표시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등록,참조)번호】 30-2005-000000-00
(【디자인일련번호】) 디자인일련번호 M04

(9)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함에 있어「디자인보호법」 제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보정할 사항】란의 다음 행에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공개형태】란을 각각 만들어 신규성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디자인의 공개형태 및 공개일자를 기재합니다.【첨부서류】란에는 주장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해당 서류를 보정서에 첨부합니다.

[예]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
【공개형태】 간행물에의 발표
【공개일자】 2007. 7. 1.

다. 도면등 보정의 경우

(1)【보정할 서류】란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보정하고자 하는 "도면"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보정할 서류】
【서류명】입체디자인 도면, 평면디자인 도면

또한, 복수디자인출원 중 일부디자인의 도면에 대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는【보정할 서류】란에 해당 디자인의 디자인일련번호를 추가로 기재합니다.

[예 1]【보정할 서류】
【서류명】입체디자인 도면 : 디자인일련번호 M03

[예 2]【보정할 서류】
【서류명】입체디자인 도면 : 디자인일련번호 M01
【보정할 서류】
【서류명】입체디자인 도면 : 디자인일련번호 M03

(2)【보정대상항목】,【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에는 모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3)별지에는 【보정대상항목】,【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을 만들어 기재하며, 보정내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복수디자인출원 중 2 이상의 디자인에 대하여 도면을 보정할 경우에는 각 디자인별로 면을 바꾸어 해당하는 디자인일련번호를 기재한 후【보정할 서류】,【보정대상항목】,【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예 1]【보정대상항목】정면도
【보정방법】정정
【보정내용】

정정한 정면도

[예 2]【보정대상항목】참고도 3
【보정방법】 추가
【보정내용】

추가한 참고도3

[예 3]【보정대상항목】참고도 1
【보정방법】 삭제

(4)【보정대상항목】란에는 보정하려는 식별항목명을 기재하고, 【보정방법】란에는 "추가", "삭제", "정정" 중 하나만을 기재하며, 보정방법을 복수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보정방법

이 "추가" 또는 "정정"인 경우에는【보정내용】란에 추가 또는 정정된 내용을 기재하고, 보정방법이 "삭제"인 경우에는【보정내용】란을 삭제합니다.
(5) 도면 중의 모든 식별항목은 보정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나,【참고도】를 제외한 식별항목의 보정방법은 "정정"만이 가능하며, 출원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개별도의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보정방법】란에 "정정"이라고 기재합니다. 【참고도】란의 보정방법은 "추가", "정정" 및 "삭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6)【보정대상항목】이 "디자인의 설명" 또는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인 경우에는【보정내용】란에 해당 식별항목의 내용을 모두 새로 작성하여 기재합니다.
(7) 한 벌의 사시도 및 6면도로 출원하였으나 디자인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벌의 사시도 및 6면도로 보정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이 추가되는 사시도와 6면도에는 기존의 사시도 및 6면도와 구별할 수 있도록 다음 예와 같이 해당 도면의 명칭 옆에 "B"라는 알파벳 문자를 기재하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변화전 상태의 도면은 별도 알파벳 문자 없는 사시도, 변화 후 상태의 도면은 사시도 B 등으로 표시한다."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여러 벌의 도면 간의 구분기준을 명시합니다.

[예 1] 새로운 벌의 사시도와 6면도가 추가되는 경우

【보정대상항목】사시도 B
【보정방법】추가
【보정내용】

추가한 사시도

[예 2] 기존 사시도와 6면도 중 일부가 수정되고 새로운 한 벌이 추가되는 경우

【보정대상항목】사시도
【보정방법】정정
【보정내용】

변경한 사시도

【보정대상항목】사시도 B
【보정방법】추가
【보정내용】

추가한 사시도

라. 삭제 <2009.6.30>

9. 【기타사항】란
가. 도면등 보정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디자인보호법」 제27조의2에 따른 기간에 심사관에 의한 거절결정서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때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재심사청구 선택란에 표시(예: ?재심사청구)합니다.
[예] 【기타사항】 ?재심사청구
나. 출원서등 보정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디자인보호법」 제27조에 따른 기간에 심사관에 의한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지정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지정기간단축신청 선택란에 표시(예: ?지정기간단축신청)한 후, 【기타사항】란의 다음 줄의 【단축이유】란에 그 이유를 적습니다.
[예] 【기타사항】 ?지정기간단축신청
【단축이유】 신속처리

10.【수수료】란
가. 【수수료】란은 서식제출 후에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보정료 납부대상인 경우에는 【보정료】란에, 그 밖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료】란의 다음 다음 행에 【기타수수료】란을 만들어 해당하는 금액을 적고 【합계】란에는 그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심판청구서등 보충의 경우에는 【수수료】란을 삭제합니다.
[예] 【수수료】
【보정료】
【기타수수료】
【합계】
나. 2009. 7. 1. 이후에 출원한 출원건에 대한 거절결정 이후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정료】란을 다음 예와 같이 【재심사청구에 따른 보정료】란으로 수정하여 해당 금액을 적고, 【합계】란에 그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예] 【수수료】
【재심사청구에 따른 보정료】
【합계】

10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1.【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정(보충)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3호, 제4호, 제7호 및 제8호 참고)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3]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하는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4조의5·제8조제2항·제23조제4항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의5부터 제4조의8까지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함)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번호】 3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4조의5·제8조제2항·제23조제4항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의5부터 제4조의8까지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함)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2.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합니다)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두 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삭제 <2007.6.29>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6.30> |(앞 쪽)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구분】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 □디자인무심사등록분할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심사등록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참조번호】)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번호(등록번호, 참조번호)】
(【디자인일련번호】)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
(【디자인의 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부분디자인 여부】

【창작자】
【성명】
【출원인코드】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첨부 □미첨부)
(【기타사항】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디자인비밀보장청구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기재요령 제15호 참조)
【출원료】 개 디자인 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1. 도면(사진·견본) 1통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
2.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16호 참조)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1. 출원구분 및 관련규정

출원구분	내용	관련규정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무심사등록 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을 대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9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무심사등록 대상물품을 대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9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9조
디자인심사등록 분할출원	먼저 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에 대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9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디자인무심사등록 분할출원	먼저 한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에 대한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9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4조 및 제15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무심사 등록출원	무권리자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4조 및 제15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2. 처리절차

출원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 서식 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출원구분】란
출원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참조번호】란
동일한 제출인(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동시(동일자)에 2 이상의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각 출원서를 구분하기 위하여 다음 예와 같이【출원구분】 란의 다음 행에 【참조번호】란을 만들어 제출매체(온라인, 플로피디스크, 서면)에 따라 새로 시작되는 제출인별·권리별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예] 【출원구분】

【참조번호】 01

3. 【출원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출원인】란에 제출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출원인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이 경우【출원인구분】란에는 "국가기관", "국내 법인", "국내 자연인", "외국 법인", "외국 자연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구분을 한 가지만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출원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합니다.

다. 공통

(1)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출원과 동시에 대표자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출원인】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고 "출원인 대표자"와 같이 기재하며,【첨부서류】란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2)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상호간에 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출원인】란의 다음 행에【지분】란을 만들고 "출원인 지분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기재하며,【첨부서류】란에 "지분약정서"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3)「디자인보호법」제46조제3항에 따라 특별히 약정한 경우,「민법」제268조제1항 단서에 의한 계약이 있는 경우 또는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출원인】란의 다음 행에【기타】란을 만들어 그 취지를 기재하고,【첨부서류】란에 그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4)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출원인】란의 다음 행에【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를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예] 【출원인】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4.【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5.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란

가. 분할출원을 하는 경우【원출원의 출원번호】란에는 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번호를 기재합니다.

[예] 【원출원의 출원번호】 30-2007-1234567

나.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경우【무권리자의 출원번호】란에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과 관련되는 무권리자의 출원번호를 기재합니다.

6.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란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란에는 해당 여부를 "단독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과 같이 기재합니다.

7. 【기본디자인의 표시】란

이 란은 유사디자인등록 출원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출원(등록번호, 참조번호)】란에는 기본디자인 출원의 출원번호, 등록번호, 참조번호 중 하나를 기재하고, 기본디자인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추가로 【디자인일련번호】란에 해당 디자인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가. 기본디자인과 유사디자인을 1개의 복수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디자인일련번호】M01
※ 기본디자인의【디자인일련번호】만을 기재합니다.

나. 기본디자인과 유사디자인을 동시에 각각 별개 출원하는 경우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참조번호】 01
【디자인일련번호】M01

다. 기본디자인등록출원 이후 유사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번호】30-1999-1234567
【디자인일련번호】M01

라. 기본디자인 설정등록 이후 유사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등록번호】30-1234567-00-00
【디자인일련번호】M08

마. 위의 기재방법 중 나.부터 라.까지의 【디자인일련번호】란과 그 란에 기재하는 "M△△" 부분은 기본디자인이 1디자인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기본디자인이 복수디자인으로 출원되거나 설정등록된 경우에만 그 기본디자인에 해당하는 디자인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바. 위의 기재방법 중 나.부터 라.까지의 경우에는 1개의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들만을 1개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기재할 수 있고, 여러 기본디자인과 유사디자인을 묶거나 또는 다수의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들을 묶어 1개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다의 경우에는 1개 또는 2개 이상의 기본디자인과 각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1개 또는 2개 이상의 유사디자인을 총 20개 이내의 범위에서 1개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8.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기본디자인의 표시】란 다음 행에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란을 만들어 "1디자인", "복수디자인"과 같이 그 구분을 명시합니다.

9. 【디자인의 수】란

가. 1디자인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개수를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복수디자인인 경우에만 디자인의 개수를 기재합니다.

나. 디자인의 개수가 2 이상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디자인의 수】란의 다음 행에 【디자인일련번호】란을 만들고 디자인의 일련번호순서대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부분디자인 여부】,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 (【기본디자인의 표시】), 【창작자】 및 (【우선권주장】)란을 디자인의 수만큼 만들어 모두 기재합니다.

[예] 디자인일련번호 M01은 부분디자인이고, 디자인일련번호 M02는 부분디자인이 아닌 경우

【디자인일련번호 M0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부분디자인 여부】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등록, 참조)번호】
(【디자인일련번호】)
【창작자】
【성명】
【출원인코드】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디자인일련번호 M0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등록, 참조)번호】
(【디자인일련번호】)
【창작자】
【성명】
【출원인코드】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10.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

가. 이 란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물품의 구분)에 따라 1개의 물품을 기재하되, 별표에 없는 물품은 그 디자인을 인식하는데 적합한 명칭을 기재하며, 그 물품의 용도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일반적인 명칭을 사용합니다.

나.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도【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다

음 의 예와 같이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표 4에 의한 1개의 물품명을 기재하며, 물품의 부분의 명칭(예 : 커피잔의 손잡이)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커피잔

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한 벌 물품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11. 【부분디자인 여부】란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 다음 행에【부분 디자인 여부】란을 만들어 "부분디자인"이라고 기재합니다. 부분디자인의 출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 란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12. 【창작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란에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서에 기재한 국문성명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출원인과 창작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해당 출원인의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창작자】란에 창작자의【성명의 국문표기】,【성명의 영문표기】,(【주민등록번호】),【우편번호】 및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2) 창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소】란의 다음 행에 【국적】란을 만들어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란은 삭제하며, 【주소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합니다.

(3)【창작자】란의 세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13. 【우선권주장】란

【우선권주장】란은 외국에 출원한 것으로서 최초에 출원한【출원국명】,【출원번호】 및 【출원일자】를 기재하며, 우선권주장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증명서류】란에 "첨부"라고 기재하고, 동 서류를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란에 "미첨부"라고 기재합니다. 우선권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모두 기재합니다.

[예]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US
【출원번호】 98-123456
【출원일자】 1999. 07. 01.
【증명서류】 첨부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JP
【출원번호】 62-1234
【출원일자】 1999. 08. 01.
【증명서류】 미첨부

14. 【기타사항】란

가. 다음 표의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하는 사항의 □ 안에 모두 표시(예: ?)합니다.

구분	내용	관련규정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	출원과 동시에 공개신청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23조의2
비밀디자인보장청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3조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	「디자인보호법」제8조에 따라 신규성이 있는 디자인으로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8조

나. 비밀디자인보장을 청구하는 경우

비밀디자인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비밀디자인 청구】,【청구이유】및【청구기간】란을 각각 만들어 해당 내용을 기재하며, 청구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36개월)이내의 기간으로 정하되, 그 기재방식은 "등록일로부터 ○○월"과 같이 기재합니다.

다.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을 하는 경우

출원과 동시에「디자인보호법」제8조에 따라 신규성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공개형태】및【공개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첨부서류】란에는 주장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예]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
【공개형태】 간행물에의 발표
【공개일자】 2007. 07. 01.

15. 【수수료】란

가.「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4조제1항을 참조하여 출원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내역 및 금액을 기재합니다.【출원료】란에는 디자인의 개수 및 출원료 금액을 기재하며, 아울러 출원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디

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료】란을, 비밀디자인을 청구한 경우에는 【디자인 비밀보장 청구료】란을,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주장료】란을 각각 만들어 각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합계】란을 만들어 그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예] 【수수료】

【출원료】	개 디자인	원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료】		원
【디자인비밀보장 청구료】	개 디자인	원
【우선권주장료】	개 디자인	원
【합계】		원

나.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수수료】란의【합계】란의 다음 행에【감면(면제)사유】 및 【감면(면제)후 수수료】란을 각각 만들어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를 기재하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다.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납부합니다.

15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6.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위임장 1통

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3]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하는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4조의5·제8조제2항·제23조제4항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의5부터 제4조의8까지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함)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번호】 3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4조의5·제8조제2항·제23조제4항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의5부터 제4조의8까지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함)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입체디자인 도면), 별지 제5호서식(평면디자인 도면) 또는 별지 제6호서식(글자체디자인 도면)의 작성요령에 따라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7. 작성시 유의사항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삭제 <2007.6.29>
[별지 제3호의3서식] 삭제 <2007.6.29>
[별지 제3호의4서식] 삭제 <2007.6.29>
[별지 제3호의5서식] 삭제 <2007.6.29>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6.30> (앞 쪽)

입체디자인 도면

(【디자인일련번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유사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관련규정 : 「디자인보호법」 제9조제2항).

※ 기재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가.용지는 가로 210㎜, 세로 297㎜ (보존용지(2종) 70g/㎡)의 A4 용지를 세로로 하여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는 상단 40㎜, 좌단 25㎜, 하단 및 우단 20㎜의 여백을 두고 내용을 기재하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 번호를 기재합니다.
다. 도면은 진한 먹물 또는 제도용 흑색 잉크로 선명(300dpi 이상의 해상도)하게 도시하며, 연필, 잉크(제도용 흑색 제외), 크레파스 또는 그림물감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산된 이미지파일인 경우에도 위에 준하여 도시합니다.
라. 도형 내에는 중심선, 기선(基線), 수평선, 음영 등을 표시하기 위한 세선(세선) 또는 농담(濃淡), 내용의 설명을 하기 위한 지시선, 부호 또는 문자를 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시도(斜視圖)에 음영을 가할 경우에는 모양과 혼동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세선, 점 또는 농담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 식별항목의 기재
(1)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기재하며,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2) 식별기호(【 】)는 식별항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도면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 가로(횡)로 배치할 수 있으나, 도면 내용의 상단이 용지의 우측이 되도록 배치하며, 【○○도】 식별항목은 가로(횡)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각 도면의 식별항목은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및 【저면도】란의 순으로 사시도와 6면도를 기재합니다. 그 외에 사용상태도, 전개도, 단면도, 절단부단면도, 확대도 기타 필요한 참고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참고도 1】, 【참고도 2】… 순으로 식

별항목을 만들어 기재하되, "사용상태도", "전개도", "확대도", "단면도" 등과 같은 참고도의 명칭은 다음 예와 같이 【참고도 ○】란의 다음 행에 기재합니다. 또한, 【참고도】란을 제외한 도면의 식별항목은 최초 출원시에 도면의 일부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식별항목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예] 【참고도 3】
절단부 단면도

해당 도면 내용

(5) 디자인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벌의 사시도 및 6면도가 필요한 경우(움직이는 것, 열리는 것 등의 디자인으로서 변화 전·후의 상태를 각각의 도면에 표현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다음 예와 같이 각 도의 식별항목명에 영문자 대문자(A, B…순)를 기재하여 구분하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통상적인 디자인의 설명을 먼저 한 후에, "변화 전 상태의 도면은 A, 변화 후 상태의 도면은 B"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 구분기준을 명시합니다.

[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사시도 A】
【정면도 A】
【배면도 A】
【좌측면도 A】
【우측면도 A】
【평면도 A】
【저면도 A】
【참고도 A-1】
【참고도 A-2】
【사시도 B】
【정면도 B】
【배면도 B】
【좌측면도 B】
【우측면도 B】
【평면도 B】
【저면도 B】
【참고도 B-1】
【참고도 B-2】

(6)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의 위에 【디자인일련번호】란을 만들어 해당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예] 【디자인일련번호】 M0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신사복

바. 도면의 쪽수가 여러 쪽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각 디자인마다 각 페이지 하단의 여백중앙에 도면의 총 쪽수와 해당 쪽과의 일련관계를 표시합니다.

[예] 3-1, 3-2, 3-3

2. 도면의 작성방법

가. 도면의 기초정보

(1)【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와 동일하게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을 기재합니다.

(2)【디자인의 설명】란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디자인의 설명의 기재사항)에 따라 기재합니다.

(3)【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란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방법)에 따라 기재합니다.

나. 일반적 디자인의 도면

(1) 입체를 표현하는 도면은 사시도(斜視圖)와 정투상도법(正投象圖法)에 의하여 동일한 축적으로 작성한 정면도(正面圖)·배면도(背面圖)·좌측면도(좌측면도)·우측면도(右側面圖)·평면도(平面圖) 및 저면도(底面圖)(이하 "6면도"라 함)를 하나의 디자인도로 하고, 사시도의 디자인과 6면도의 디자인을 동일하게 도시합니다. 다만, 아래 표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부도면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그 뜻을 아래 표의 기재방법과 같이 기재합니다.

[일부도면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와 기재방법]

도면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한 도면	기재 방법
가.정면도와 배면도가 동일 또는 대칭인 경우	【배면도】	“정면도와 동일(대칭)"
나. 좌측면도와 우측면도가 동일 또는 대칭인 경우	【일방의 측면도】	“좌측(우측)면도와 동일(대칭)”
다.평면도와 저면도가 동일 또는 대칭인 경우	【평면도】 또는 【저면도】	“저면도와 동일(대칭)” 또는 “평면도와 동일(대칭)”

라. 가, 나, 다 외에 6면도 중 같은 도면이 여러 개인 경우	같은 도면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도면	해당 내용을 설명
마.대형의 기계 등으로 설치 또는 정치되어 있어서 상시 저면을 볼 수 없는 경우	【저면도】	해당 내용을 설명
바. 화상디자인의 경우	【사시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해당 내용을 설명

[예] 정면도와 배면도가 동일하여 배면도를 생략하는 경우
【배면도】
정면도와 동일

※ 출원시에는 도면의 일부생략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시도와 6면도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원시 일부도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도면의 식별항목 다음 행에 "추후제출"이라고 기재하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보정서)에 따라 보정합니다.

(2) 물품이 입방체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물품의 디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향에서 본 사시도를 먼저 도시하여야 하며, 사시도로 파악이 곤란한 경우는 사용상태도를 【참고도】란에 도시하여야 합니다. 사시도에 음영을 가할 경우에는 모양과 혼동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도시합니다.

(3) (1), (2)항의 도면만으로 그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때에는 전개도·단면도·절단부단면도·확대도 및 그 밖에 필요한 도면을 【참고도】란에 추가합니다.

(4) 물품의 일부분의 도시를 생략하여도 디자인을 명백히 알 수 있거나, 도면 작성상 생략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경우에는 1부분의 도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생략한 부분을 두선의 평행한 1점쇄선으로 절단한 것처럼 표시하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그 취지 및 생략한 부분의 도면상 길이를 기재합니다.

(5) 봉재, 선재, 판재, 관재 등과 같이 형상이 연속하는 것 또는 지물과 같이 모양이 연속되거나 반복적으로 연속하는 것을 표시하는 도면은 그 연속 또는 반복적으로 연속하는 상태를 알 수 있게 도시하며, 【디자인의 설명】란에 형상이나 모양이 한 방향 또는 상하좌우로 연속 또는 반복하는 것인지 등을 기재합니다.

(6) 단면도 또는 절단부단면도의 절단면에는 평행사선을 긋고(이질의 결합에 따른 디자인적 표현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각기 다른 방향의 평행사선을 긋습니다), 그 절단된 부분을 그 밖의 도면에서 쇄선(鎖線)으로 표시하되, 쇄선의 양끝에 부호를 붙이고 화살표로 절단면을 보는 방향을 표시합니다.

(7)부분확대도를 그릴 경우에는 그 확대한 부분을 해당 부분확대도의 원래의 도면에 쇄선으로 표시합니다. 이 경우에 쇄선은 도형 안에 들어가도록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쇄선의 양단에는 부호를 표시하고 부분확대도를 그린 방향을 표시할 경우에는 화살표로 그 표시를 합니다.

다. 특수한 디자인의 도면

(1) 조립완구와 같이 그 구성물의 도면만으로는 사용의 상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은 그 만들어지는 상태 또는 완성된 상태를 표시하는 사시도를 첨부하고, 조립한 후 분해하는 것과 같이 조립한 상태의 도면만으로는 분해된 상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은 각 구성물의 사시도를 추가합니다.

(2) 움직이는 것, 열리는 것 등의 디자인으로서 움직임 또는 열림에 따라 디자인이 변화하는 것은 변화 전과 변화 후 상태의 도면을 각각 도시합니다.

(3)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디자인의 도면은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작성합니다.

① 바깥쪽 둘레가 무색하여 모양이 없는 경우에는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은 보이는 대로 표시합니다.

② 바깥쪽 둘레의 외면·내면 또는 그 두께면의 어느 한 부분에 모양 또는 색채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뒷면 또는 밑바닥의 모양 또는 색채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 또는 색채만을 나타냅니다.

③바깥쪽 둘레의 외면·내면 또는 그 두께면이나 바깥쪽에 둘러싸인 내부의 어느 곳에 2 이상의 형상·모양 또는 색채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형상·모양 또는 색채를 각 면에 표시합니다.

라. 부분디자인의 도면

(1) 부분디자인을 도면에 도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실선)으로 표현하고, 그 외의 부분에 관한 형상은 파선(破線)으로 표현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합니다.

(2) 부분디자인을 견본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색 등 무채색으로 칠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합니다.

(3) 부분디자인을 사진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색 등 무채색으로 칠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한 다음 이를 촬영한 사진을 출원합니다. 다만, 전체디자인이 검정색 등 무채색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무채색으로 칠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채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부분디자인을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서 해당 부분을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합니다.
(5) 그 밖의 작성방법은 이 서식의 기재요령 제2호 도면의 작성방법 중 나. 일반적 디자인의 도면 및 다. 특수한 디자인의 도면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참고사항
가. 도면이 2면 이상으로 된 경우 처음 면 이외의 면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및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도면에 갈음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진의 규격은 최대 가로 10㎝ × 세로 15㎝ 이하, 최소 가로 7㎝ × 세로 10㎝ 이상의 크기로 하여 명료하게 표현되도록 하며, 배경·음영 등이 나타나서는 아니 됩니다. 사진은 보조용지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며, 다음 예와 같이 해당 도면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도면대용 ○○면 사진"이라고 기재합니다.
[예]【배면도】
도면대용 ○○면 사진

해당 사진

다.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쉽게 파손되거나 변경·변질되지 아니할 것
(2) 취급 및 보존이 용이할 것
(3) 용지에 첨부할 경우 떨어질 염려가 없을 것
(4)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 견본 1개와 견본의 사진(입체적인 것은 사시도와 6면도 사진, 평면적인 것은 표면도와 이면도 사진) 각 1통을 각각 이 서식에 첨부할 것
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도 이 서식의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하나, 2개 이상의 디자인을 하나의 도면에 도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전자문서 이용시 유의사항
가. 입력가능 문자 및 이미지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표준(KSC5601, KS 2바이트 완성형)문자에 포함된 문자 및 기호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수문자 또는 도형 등은 이미지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나.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입력합니다.
(1)도면 내용의 이미지 포맷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 이어야 합니다.
(2)디자인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의 입력이 허용되며, 이들의 이미지 포맷은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합니다.
(3) 도면 내용의 이미지는 '삽입그림'의 형태로 완전히 삽입·저장되어야 하며, '객체 연결 및 삽입'(OLE) 또는 '동적 자료교환'(DDE)의 형태로 연결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삭제 <2007.6.29>
[서식 4의3] 삭제 <2005.7.1>

[서식 4의4] 삭제 <2005.7.1>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12.31> (앞쪽)

평면디자인 도면

(【디자인일련번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표면도】
【이면도】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유사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관련규정 : 「디자인보호법」 제9조제2항).

※ 기재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가.용지는 가로 210㎜, 세로 297㎜ (보존용지(2종) 70g/㎡)의 A4 용지를 세로로 하여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는 상단 40㎜, 좌단 25㎜, 하단 및 우단 20㎜의 여백을 두고 내용을 기재하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 번호를 기재합니다.
다. 도면은 진한 먹물 또는 제도용 흑색 잉크로 선명(300dpi 이상의 해상도)하게 도시하며, 연필, 잉크(제도용 흑색 제외), 크레파스 또는 그림물감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산된 이미지파일인 경우에도 위에 준하여 도시합니다.
라. 도형 내에는 중심선, 기선(基線), 수평선, 음영 등을 표시하기 위한 세선(細線) 또는 농담(농담), 내용의 설명을 하기 위한 지시선, 부호 또는 문자를 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시도(사시도)에 음영을 가할 경우에는 모양과 혼동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세선, 점 또는 농담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 식별항목의 기재
(1)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기재하며,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식별기호(【 】)는 식별항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도면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 가로(횡)로 배치할 수 있으나, 도면 내용의 상단이 용지의 우측이 되도록 배치하며, 【○○도】식별항목은 가로(횡)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각 도면의 식별항목은【표면도】,【이면도】란의 순으로 작성합니다. 그 외에 사용상태도, 전개도, 단면도, 절단부단면도, 확대도 기타 필요한 참고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참고도 1】,【참고도 2】… 순으로 식별항목을 만들어 기재하되, "사용상태도", "전개도", "확대도", "단면도" 등과 같은 참고도의 명칭은 다음 예와 같이 【참고도 ○】란의 다음 행에 기재합니다. 또한, 【참고도】란을 제외한 도면의 식별항목은 최초 출원시에 도면의 일부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식별항목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예] 【참고도 3】
절단부 단면도

해당 도면 내용

(5) 디자인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벌의 사시도 및 6면도가 필요한 경우(움직이는 것, 열리는 것 등의 디자인으로서 변화 전·후의 상태를 각각의 도면에 표현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다음 예와 같이 각 도의 식별항목명에 영문자 대문자(A, B…순)를 기재하여 구분하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통상적인 디자인의 설명을 먼저 한 후에, "변화 전 상태의 도면은 A, 변화 후 상태의 도면은 B"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 구분기준을 명시합니다.
[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표면도 A】
【이면도 A】
【참고도 A-1】
【참고도 A-2】

【표면도 B】
【이면도 B】
【참고도 B-1】
【참고도 B-2】
(6)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의 위에 【디자인일련번호】란을 만들어 해당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예] 【디자인일련번호】 M0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신사복
바. 도면의 쪽수가 여러 쪽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각 디자인마다 각 페이지 하단의 여백중앙에 도면의 총 쪽수와 해당 쪽과의 일련관계를 표시합니다.
[예] 3-1, 3-2, 3-3
2. 도면의 작성방법
가. 도면의 기초정보
(1)【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와 동일하게 디자인의 대상이 되

는 물품명을 기재합니다.
(2)【디자인의 설명】란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표 2(디자인의 설명의 기재사항)에 따라 기재합니다.
(3)【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란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방법)에 따라 기재합니다.
나. 일반적 디자인의 도면
(1) 평면적인 것을 표현하는 도면은 동일한 축적에 의하여 작성한 【표면도】와 【이면도】를 하나의 디자인도로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면도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뜻을 생략하는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기재합니다.
[일부도면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와 기재방법]

도면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한 도면	기재방법
이면도와 표면도가 동일 또는 대칭이거나 이면도에 모양이 없는 경우	【이면도】	"표면도와 동일(대칭)" 또는 "모양이 없음"

[예] 표면도와 이면도가 동일하여 이면도를 생략하는 경우
【이면도】
표면도와 동일
※ 출원시에는 도면의 일부생략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표면도와 이면도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원시 일부도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도면의 식별항목 다음 행에 "추후제출"이라 기재하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보정서)에 따라 보정합니다.
(2)【표면도】와 【이면도】만으로는 그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때에는 전개도·단면도·절단부단면도·확대도 및 그 밖에 필요한 도면을 【참고도】란에 추가합니다.
(3) 봉재, 선재, 판재, 관재 등과 같이 형상이 연속하는 것 또는 지물과 같이 모양이 연속되거나 반복적으로 연속하는 것을 표시하는 도면은 그 연속 또는 반복적으로 연속하는 상태를 알 수 있게 도시하며, 【디자인의 설명】란에 형상이나 모양이 한 방향 또는 상하좌우로 연속 또는 반복하는 것인지 등을 기재합니다.
(4)부분확대도를 그릴 경우에는 그 확대한 부분을 해당 부분확대도의 원래의 도면에 쇄선(쇄선)으로 표시합니다. 이 경우에 쇄선은 도형 안에 들어가도록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쇄선의 양단에는 부호를 표시하고 부분확대도를 그린 방향을 표시할 경우에는 화살표로 그 표시를 합니다.
다. 부분디자인의 도면
(1) 부분디자인을 도면에 도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實線)으로 표현하고, 그 외의 부분에 관한 형상은 파선(破線)으로 표현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합니다.
(2) 부분디자인을 견본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색 등 무채색으로 칠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합니다.
(3) 부분디자인을 사진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색 등 무채색으로 칠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한 다음 이를 촬영한 사진을 출원합니다. 다만, 전체디자인이 검정색 등 무채색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무채색으로 칠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채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부분디자인을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서 해당 부분을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합니다.
(5) 그 밖의 작성방법은 이 서식의 기재요령 제2호의 나. 일반적 디자인의 도면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참고사항
가. 도면이 2면 이상으로 된 경우 처음 면 이외의 면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및【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도면에 갈음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진의 규격은 최대 가로 10㎝ × 세로 15㎝ 이하, 최소 가로 7㎝ × 세로 10㎝ 이상의 크기로 하여 명료하게 표현되도록 하며, 배경·음영 등이 나타나서는 아니 됩니다. 사진은 보조용지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며, 다음 예와 같이 해당 도면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도면대용 ○○면 사진"이라고 사진의 설명을 기재합니다.
[예]【배면도】
도면대용 ○○면 사진

해당 사진

다.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쉽게 파손되거나 변경·변질되지 아니할 것
(2) 취급 및 보존이 용이할 것
(3) 용지에 첨부할 경우 떨어질 염려가 없을 것
(4)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 견본 1개와 견본의 사진(평면적인 것은 표면도와 이면도 사진) 각 1통을 각각 이 서식에 첨부할 것
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도 이 서식의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하나, 2개 이상의 디자인을 하나의 도면에 도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전자문서 이용시 유의사항
가. 입력가능 문자 및 이미지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표준(KSC5601, KS 2바이트 완성형)문자에 포함된 문자 및 기호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수문자 또는 도형 등은

이미지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나.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입력합니다.
(1)도면 내용의 이미지 포맷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 이어야 합니다.
(2)디자인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의 입력이 허용되며, 이들의 이미지 포맷은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합니다.
(3) 도면 내용의 이미지는 '삽입그림'의 형태로 완전히 삽입·저장되어야 하며, '객체 연결 및 삽입'(OLE) 또는 '동적 자료교환'(DDE)의 형태로 연결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삭제 <2007.6.29>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07.6.29> (앞 쪽)

글자체디자인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 도면】

210㎜×297㎜ (보존용지(2종) 70g/m2)

(뒤쪽)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유사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관련규정 : 「디자인보호법」 제9조제2항).

※ 기재요령
1. 글자체의 등록요건을 판단하는데 충분하도록 도면에 기재하되,「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글자체디자인 도면)에서 정하는 지정글자, 보기문장 및 대표글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글자체가 기재된 것으로 봅니다.
2.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란은 이미 알려진 글자체디자인과 비교하여 독창적으로 창작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재하며, 등록요건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창작한 글자체디자인의 분류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글자체디자인의 경우에는 한글·영문자·기타 외국문자·숫자·특수기호 또는 한자 글자체별로 구분하여 각각 출원하며, 각 출원건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표 6(글자체디자인 도면)에서 정하는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 도면】을 도시합니다.
가. 한글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6의 '1. 한글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및【대표글자 도면】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나. 영문자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6의 '2. 영문자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다. 영문자를 제외한 그 밖의 외국 문자 글자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도면을 작성합니다.
(1)【지정글자 도면】: 해당 외국 문자의 알파벳 자모(字母) 전체를 기재합니다.
(2)【보기문장 도면】: 영문자의 대표문장을 해당 외국 문자로 번역하여 기재합니다.
(3)【대표글자 도면】: 영문자의 대표글자에 준하여 해당 외국문자의 낱글자의 특성을 가

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대표글자를 기재합니다.
라. 숫자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6의 '3. 숫자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마. 특수기호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6의 '4. 특수기호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바. 한자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6의 '5. 한자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4. 각 도면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용지는 가로 210㎜, 세로 297㎜ (보존용지(2종) 70g/㎡)의 A4 용지를 세로로 하여, 상단 40㎜, 좌단 25㎜, 하단 및 우단 20㎜의 여백을 두고 내용을 기재합니다.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은 가로 165㎜, 세로 237㎜ 이내이며, 각 용지는 한 면에 하나의 도면만을 기재합니다.
나. 글자체디자인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도면의 식별항목을 【지정글자 도면1】, 【지정글자 도면2】…【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란의 순으로 작성하여 용지의 상단여백 중앙에 기재합니다. 다만, 글자체디자인 도면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도면의 식별항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 【지정글자 도면】란은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의 네 모서리에 가로 5㎜ × 세로 5㎜의 영역표시 보조선(선의 굵기 0.25pt)을 두고,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로 12줄 × 세로 9줄로 최대한 크게 작성하고, 글자 사이 및 글줄 사이는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라. 【보기문장 도면】란은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의 네 모서리에 가로 5㎜ × 세로 5㎜의 영역표시 보조선(선의 굵기 0.25pt)을 두고 다음과 같이 도면을 작성합니다.
(1) 한글·영문자·한자의 경우에는 큰 보기문장과 작은 보기문장을 1장으로 구성하며, 큰 보기문장과 작은 보기문장 사이는 최소한 10㎜ 이상의 간격을 둡니다. 큰 보기문장은 작은 보기문장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크게 작성하고, 글자 사이는 기본값을 0%로 하며, 글줄 사이는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작은 보기문장의 글자의 크기는 20pt를 기준으로 하되, 글줄이 3줄 이상으로 길어지는 경우에는 글자크기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으며, 글자 사이는 기본값 0%로, 글줄 사이는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2) 숫자·특수기호의 경우에는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크게 작성하고, 글자 사이 및 글줄 사이는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마. 【대표글자 도면】란에는 한글 및 한자의 경우에는 가로 4줄 × 세로 3줄의 영역표시 보조선(선의 굵기 0.25pt)을, 영문·숫자·특수기호의 경우에는 가로 3줄 × 세로 2줄의 영역표시 보조선을 둡니다. 각 대표글자는 영역표시 보조선 내의 각 사각형의 한가운데 위치하도록 하고, 각 사각형으로부터 2㎜의 여백을 둔 상태에서 최대한 크게 표기하되, 모든 글자의 크기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바.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은 특허청이 제공하는 이미지 파일(파일의 확장자가 ai인 파일)을 수정하여 작성한 후 200dpi 이상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합니다.
5. 그 밖의 기재방법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평면디자인 도면)의 기재요령 제1호의 다목부터 마목까지, 제2호의 가목, 제3호의 가목 및 제4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별지 제6호의2서식] 삭제 <2007.6.29>
[별지 제6호의3서식] 삭제 <2007.6.29>
[별지 제6호의4서식] 삭제 <2007.6.29>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9.6.30> (앞 쪽)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원 (기재요령 제4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5호 참조)

210㎜×297㎜ (보존용지(2종) 70g/m2)

(뒤 쪽)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출원인이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관련규정 : 「디자인보호법」 제23조의2).

2.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 서식 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 【출원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출원인】란에 제출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출원인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이 경우【출원인구분】란에는 "국가기관", "국내법인", "국내 자연인", "외국 법인", "외국 자연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구분을 한 가지만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출원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합니다.
다. 공통
(1)【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등록권리자"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이의신청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출원인】란의 다음 행에【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를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예] 【출원인】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2.【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 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 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 【첨부서류】 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사건의 표시】 란

가. 【출원번호】 란에는 해당 건의 출원번호(예: 30-2007-1234567)를 기재합니다.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란에는 출원서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서에 첫 번째로 기재된 【디자인일련번호 M01】 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을 기재합니다.

[예]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30-2007-1234567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신사복 등

4. 【수수료】 란

【수수료】 란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제1항을 참조하여 출원공개건수와 디자인등록 출원공개 신청료 금액을 기재합니다.

4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5. 【첨부서류】 란의 기재방법

가.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3]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하는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4조의5·제8조제2항·제23조제4항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의5부터 제4조의8까지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함)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번호】 3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4조의5·제8조제2항·제23조제4항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의5부터 제4조의8까지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함)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합니다)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의2서식] 삭제 <2007.6.29>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9.6.30> (앞 쪽)

비밀디자인청구서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 비밀보장 청구】
【청구이유】
【청구기간】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개 디자인 원 (기재요령 제5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6호 참조)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뒤 쪽)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출원인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관련규정 : 「디자인 보호법」 제13조제1항).
2. 서식의 제출 및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 서식 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 【출원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출원인】란에 제출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출원인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이 경우【출원인구분】란에는 "국가기관", "국내 법인", "국내 자연인", "외국 법인", "외국 자연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구

분을 한 가지만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출원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합니다.
다. 공통
(1)【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등록권리자"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이의신청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출원인】란의 다음 행에【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를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예] 【출원인】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2.【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사건의 표시】란
가.【출원번호】란에는 해당 건의 출원번호(예: 30-2007-1234567)를 기재합니다.
나.【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출원서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출원서에 첫 번째로 기재된【디자인일련번호 M01】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을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사건의 표시】
【출원번호】30-2007-1234567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신사복 등
4.【디자인 비밀보장 청구】란
디자인 비밀보장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기간을 【청구이유】 및 【청구기간】란에 기재하며, 청구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36개월)이내의 기간으로 정하되 그 연수와 월을 "등록일로부터 ○○월"의 형태로 기재합니다.
5.【수수료】란
【수수료】란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4조제1항을 참조하여 비밀보장을 청구하는 디자인의 개수 및 디자인비밀보장의 청구료 금액을 기재합니다.
5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6. 【첨부서류】란
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위임장 1통
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3]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하는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4조의5·제8조제2항·제23조제4항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의5부터 제4조의8까지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함)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번호】 3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4조의5·제8조제2항·제23조제4항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의5부터 제4조의8까지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함)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합니다)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두 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8호의2서식] 삭제 <2007.6.29>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9.6.30> (앞 쪽)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

【신청구분】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디자인등록번호】
【등록일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사항】
【신청이유】(별지에 기재)
【증거방법】(별지사용 가능)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원 (기재요령 제8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 정한 서류 1통 (기재요령 제9호 참조)

210㎜× 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신청구분	내용	관련규정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	누구든지 디자인무심사 등록출원에 의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2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의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5조 및 제29조의2

2.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 서식 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신청구분】란
신청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 ?)합니다.
2.【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기재한 국문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인】란에 이의신청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이의신청인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이 경우【이의신청인구분】란에는 "국가기관", "국내 법인", "국내 자연인", "외국 법인", "외국 자연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구분을 한 가지만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이의신청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이의신청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이의신청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이의신청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의 수대로 [이의신청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이의신청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합니다.
다. 공통
(1)【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등록권리자"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이의신청인" 등과 같이 이의신청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인】란의 다음 행에【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를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예]【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인】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이의신청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4.【사건의 표시】란

가.【디자인등록번호】,【등록일자】 및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 기재합니다.

나.이의신청의 대상이 복수디자인등록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첫번째로 기재된【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만 기재합니다.

[예]【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신사복 등

5.【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사항】란

이 란에는 다음 예와 같이 디자인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예]【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사항】M01, M05, M07

6.【신청이유】란

이 란에는 "별지와 같음"이라 기재하고,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이 디자인 창작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7.【증거방법】란

이 란은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고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이유 또는 증거는 이의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습니다.

8.【수수료】란

이 란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4조제1항을 참조하여 이의신청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내역 및 금액을 기재합니다.

8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9.【첨부서류】란

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위임장 1통

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3]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하는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4조의5·제8조제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번호】 3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4조의5·제8조제2항·제23조제4항과 「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합니다)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출원번호 제 호
(APPLICATION NUMBER)
출 원 일 년 월 일
(APPLICATION DATE : YY/MM/DD)
등 록 일 년 월 일
(REGISTRATION DATE : YY/MM/DD)
등록의 구분 심사등록
(TYPE OF REGISTRATION) (EXAMINED REGISTRATION)
ARTICLE THAT IS THE OBJECT OF THE DESIGN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07.6.29>

210㎜× 297㎜ (보존용지(1종) 120g/㎡)

출원번호 제 호
(APPLICATION NUMBER)
출 원 일 년 월 일
(APPLICATION DATE : YY/MM/DD)
등 록 일 년 월 일
(REGISTRATION DATE : YY/MM/DD)
등록의 구분 무심사등록
(TYPE OF REGISTRATION) (UNEXAMINED REGISTRATION)
(ARTICLE THAT IS THE OBJECT OF THE DESIGN)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07.6.29>

210㎜× 297㎜ (보존용지(1종) 120g/㎡)

이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신규성등), 제16조(선출원) 등의 실체심사를 하지 아니한 디자인무심사등록권리입니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삭제 <2007.6.29>
(ARTICLE THAT IS THE OBJECT OF THE DESIGN)
출원번호 제 호
(APPLICATION NUMBER)
출 원 일 년 월 일
(APPLICATION DATE : YY/MM/DD)
등 록 일 년 월 일
(REGISTRATION DATE : YY/MM/DD)
등록의 구분 심사등록
(TYPE OF REGISTRATION) (EXAMINED REGISTRATION)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07.6.29>

210㎜× 297㎜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2호의2서식] 삭제 <2007.6.29>
이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 5조(신규성등), 제16조(선출원) 등의 실체심사를 하지 아니한 디자인무심사등록권리입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07.6.29>

출원번호 제 호
(APPLICATION NUMBER)
출 원 일 년 월 일
(APPLICATION DATE : YY/MM/DD)
등 록 일 년 월 일
(REGISTRATION DATE : YY/MM/DD)
등록의 구분 무심사등록
(TYPE OF REGISTRATION) (UNEXAMINED REGISTRATION)
(ARTICLE THAT IS THE OBJECT OF THE DESIGN)

210㎜× 297㎜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07.6.29>

210㎜× 297㎜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07.6.29>

출원번호 제 호
(APPLICATION NUMBER)
출 원 일 년 월 일
(APPLICATION DATE : YY/MM/DD)
등 록 일 년 월 일
(REGISTRATION DATE : YY/MM/DD)
등록의 구분 무심사등록
(TYPE OF REGISTRATION) (UNEXAMINED REGISTRATION)
(PRINCIPAL DESIGN)
이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신규성등), 제16조(선출원) 등의 실체심사를 하지 아니한 디자인무심사등록권리입니다.
(ARTICLE THAT IS THE OBJECT OF THE DESIGN)

210㎜× 297㎜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07.6.29>

□ 출원번호 제 호

(APPLICATION NUMBER)
출 원 일 년 월 일
(APPLICATION DATE : YY/MM/DD)
등 록 일 년 월 일
(REGISTRATION DATE : YY/MM/DD)
등록의 구분 심사등록
(TYPE OF REGISTRATION) (EXAMINED REGISTARATION)
(ARTICLE THAT IS THE OBJECT OF THE DESIGN)

210㎜× 148㎜(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07.6.29>

출원번호 제 호
(APPLICATION NUMBER)
출 원 일 년 월 일
(APPLICATION DATE : YY/MM/DD)
등 록 일 년 월 일
(REGISTRATION DATE : YY/MM/DD)
등록의 구분 무심사등록
(TYPE OF REGISTRATION) (UNEXAMINED REGISTARATION)

이 디자인권은

이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 에 의한 실체심사를 하지 아니한 디자인무심사등록권리입니다.

(ARTICLE THAT IS THE OBJECT OF THE DESIGN)

210㎜ × 148㎜(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07.6.29>

□ 출원번호 제 호

(APPLICATION NUMBER)
출 원 일 년 월 일
(APPLICATION DATE : YY/MM/DD)
등 록 일 년 월 일
(REGISTRATION DATE : YY/MM/DD)
등록의 구분 심사등록
(TYPE OF REGISTRATION) (EXAMINED REGISTARATION)
(ARTICLE THAT IS THE OBJECT OF THE DESIGN)

210㎜ × 148㎜(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07.6.29>

출원번호 제 호
(APPLICATION NUMBER)
출 원 일 년 월 일
(APPLICATION DATE : YY/MM/DD)
등 록 일 년 월 일
(REGISTRATION DATE : YY/MM/DD)
등록의 구분 무심사등록
(TYPE OF REGISTRATION) (UNEXAMINED REGISTARATION)

210㎜× 148㎜(보존용지(1종) 120g/㎡)

이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실체심사를 하지 아니한 디자인무심사등록권리입니다.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07.6.29>

출원번호 제 호
(APPLICATION NUMBER)
출 원 일 년 월 일
(APPLICATION DATE : YY/MM/DD)
등 록 일 년 월 일
(REGISTRATION DATE : YY/MM/DD)
등록의 구분 무심사등록
(TYPE OF REGISTRATION) (UNEXAMINED REGISTARATION)
이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실체심사를 하지 아니한 디자인무심사등록권리입니다.
(PRINCIPAL DESIGN)
(ARTICLE THAT IS THE OBJECT OF THE DESIGN)

210㎜× 148㎜(보존용지(1종) 120g/㎡)